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

(공익감사청구사항)

2020. 2.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3
III. 감사결과	12
1. 감사결과 총괄	12
2. 선수촌 운영 및 국가대표 등 관리 분야	15
3.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리 분야	52
4.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 추진 분야	89
5. 기타 분야	127
[별표]	140
IV. 개별통보사항 명세	195

표 목차

[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익감사청구 요지	1
[표 2] 감사증점	2
[표 3] 체육계 관리 주체	3
[표 4] 문체부 체육분야 예산·기금 현황(2019년 기준)	5
[표 5] 대한체육회 예산 현황(2019년 기준)	7
[표 6] 장애인체육회 예산 현황(2019년 기준)	9
[표 7] 지적사항 총괄	13
[표 8] 주요 지적사항 요약	13
[표 9] 국가대표 선수촌 및 훈련원 운영 현황	15
[표 10] 국가대표 선수촌 내 비위행위 발생 현황(2013~2019년)	16
[표 11] 종목별 훈련 지원 현황(2019년 기준)	19
[표 12] 국가대표 훈련종류별 훈련비 지원 내용(2018년 기준)	20
[표 13] 국가대표 반도핑교육 및 스포츠인권교육 이수 현황(2018년 기준)	20
[표 14]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등록 선수·지도자 현황(2019년 5월 기준)	22
[표 15] 국가대표 입촌일 정문 출입리더기 미접촉자 현황(2019. 1. 1.~1. 31.)	24
[표 16] 2018년 국가대표 의무교육 이수 현황	28
[표 17] 장애인 국가대표의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제재 현황	29
[표 18] 장애인 국가대표의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	30
[표 19] 카바디협회 촌외훈련비 등 교부·집행 내역(2015~2018년)	33
[표 20] 귀화선수 등의 한국계좌 출금 내역	40
[표 21] 국가대표 선수의 튜멘 국외전지훈련 현황(2014~2018년)	42
[표 22] 크리켓협회 촌외훈련비 교부·집행 내역(2015~2017년)	44
[표 23] 기관별 비리신고 전담 조직 설치 현황	52
[표 24] 기관별 비리신고센터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익명 신고 가능 여부	55

[표 25]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접수실적(2014~2018년)	57
[표 26]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처리실적	57
[표 27]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접수실적(2017~2018년)	58
[표 28]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처리실적	58
[표 29]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접수실적(2014~2018년)	59
[표 30]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처리실적	59
[표 31]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접수실적(2014~2018년)	60
[표 32]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처리실적	60
[표 33] 대한체육회 등의 징계종류 및 신분별 적용 여부	61
[표 34] 장애인체육회 등의 징계종류 및 신분별 적용 여부	62
[표 35]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비리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8년)	64
[표 36] 강제추행 조사결과보고서 요약(장애인체육회)	80
[표 37]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선수 등록 현황(2017~2019년)	86
[표 38] 스포츠비리 개선대책 추진 현황(2008~2019년)	89
[표 39]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	90
[표 40]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92
[표 41]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주요 내용	94
[표 42] 체육연금 지급 실적(2016~2019년 4월)	123
[표 43] 간사급여 횡령 명세	134
[표 44] 2019년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 사업 개요	137

그림 목차

[그림 1] 문체부 체육국 조직도	4
[그림 2] 대한체육회 구성도	6
[그림 3] 대한체육회 조직도	7
[그림 4] 장애인체육회 구성도	8
[그림 5] 장애인체육회 조직도	9
[그림 6]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체계	16
[그림 7] 국가대표 훈련계획 수립 및 정산 절차	18
[그림 8]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절차	22
[그림 9] AG 명의의 계좌 잔액 흐름도	38
[그림 10]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절차	48
[그림 11] 비리 신고사항 처리 절차	56
[그림 12]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	96
[그림 13]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통보 절차	103
[그림 14] 운동부 지도자 등의 비위사실 통보 절차 유무 현황	10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의 국가대표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① 조직·인사관리, ② 체육행정, ③ 공사·정보화사업의 계약·관리, ④ 복지업무·복무관리 분야에서 과거 체육계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 특별 구제절차 부당 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2019년 1월 위 폭행 피해 선수에 의해 성폭력 사실이 추가 폭로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2019. 1. 14. 감사원에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표 1]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청구한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2. 18. 감사실시를 결정하게 되었다.

[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익감사청구 요지

-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선수·지도자 관리의 적정성
-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실태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체육계 비리가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감안하여 국가대표를 포함한 전문 선수 및 지도자(이하 “국가대표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국가대표 등 선수 및 지도자 관리의 적정성,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및 훈련관리의

적정성 등 [표 2]와 같은 5개 분야를 감사중점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2] 감사중점

- 국가대표 등 선수 및 지도자 관리의 적정성
-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및 훈련관리의 적정성
- 체육계 비리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실태
- 그 외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 운영의 적정성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대한체육회 종합감사”(2018년 10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별감사”(2018년 5월)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체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2019. 2. 18.~4. 5.)한 뒤 2019. 4. 1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20일간 감사인원 19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사 등을 위해 2019. 5. 22.부터 같은 해 5. 30.까지 7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연장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9. 6. 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1. 3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1)

[범 례]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여성가족부: 여가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1. 체육계 관리 주체

국민체육 총괄부처인 문체부를 중심으로 [표 3]과 같이 비장애체육분야(생활체육 포함)는 대한체육회가, 장애체육분야는 장애인체육회가 각각 담당하며, 양 체육회 산하에 스포츠 종목별 단체와 시·도체육회가 있다.

[표 3] 체육계 관리 주체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훈련 지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 집행·관리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대한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승인 및 훈련 지원 ▪ 국가대표 선수촌(진천·태릉·태백) 운영 및 관리 ▪ 스포츠평정위원회 운영(선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및 처벌 등) ▪ 클린스포츠센터·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장애인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승인 및 훈련 지원 ▪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 운영 및 관리 ▪ 법제상벌위원회 운영(선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및 처벌 등) ▪ 체육인지원센터(권익보호팀) 운영
회원종목단체(73개)/ 가맹단체(4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등록·관리 ▪ 국가대표 선발(경기력향상위원회/전문체육위원회 운영) ▪ 소속 선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및 처벌(제명 등) 등
시·도체육회(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스포츠선수 및 지도자 관리(광역자치단체 단위)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역 종목단체에 배분 ▪ 소속 선수·지도자에 대한 포상 및 처벌 등

자료: 문체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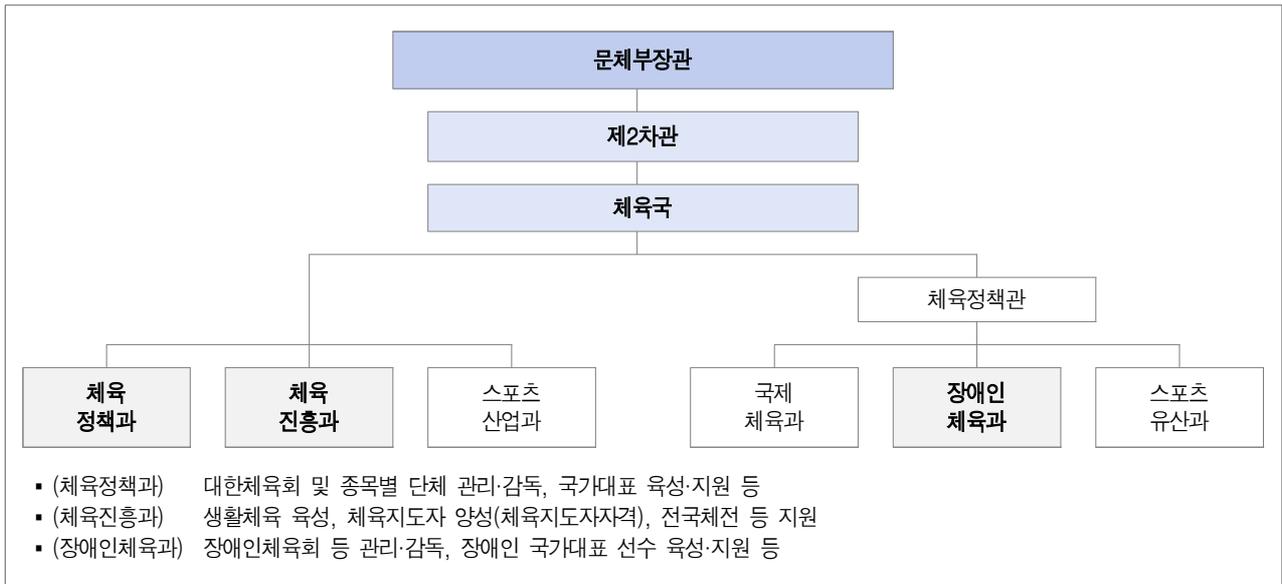
2. 체육계 관리 주체별 주요 현황

가. 문체부 체육분야 주요 현황

1) 조직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그림 1]과 같이 제2차관 소속 체육국이 체육진흥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국가대표 선수 육성, 국제체육 교류,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그림 1] 문체부 체육국 조직도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 현황

2019년 문체부 체육분야 예산·기금 총액은 [표 4]와 같이 계 1조 4,646억 원인데 세부적으로 전문체육 3,490억 원, 생활체육 8,044억 원, 국제스포츠 1,068억 원, 장애인체육 655억 원, 스포츠산업 1,38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문체부 체육분야 예산·기금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장애인체육	스포츠산업	합 계
예산	일반회계	-	17.4	8.8	2.6	1.3	30.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2,341.3	-	-	-	2,341.3
국민체육진흥기금		3,490.1	5,685.4	1,058.9	652.8	1,388.1	12,275.3
합 계		3,490.1	8,044.1	1,067.7	655.4	1,389.4	14,646.7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주요 업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① 체육시설·프로그램·지도자 확충 등 다수 국민에게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제공해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② 스포츠 비리[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성)폭력 등] 개선대책 발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③ 국가대표 육성·지원, 전문체육대회 개최, 경기력향상연구연금²⁾ 지급 등 전문체육 분야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문체부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 등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체육단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기타 체육단체 등을 감독하면서 필요한 경우 업무보고를 받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있다.

2) 문체부는 1975년부터 국제대회 입상선수(메달리스트)를 평가하여 월정액(최대 월 1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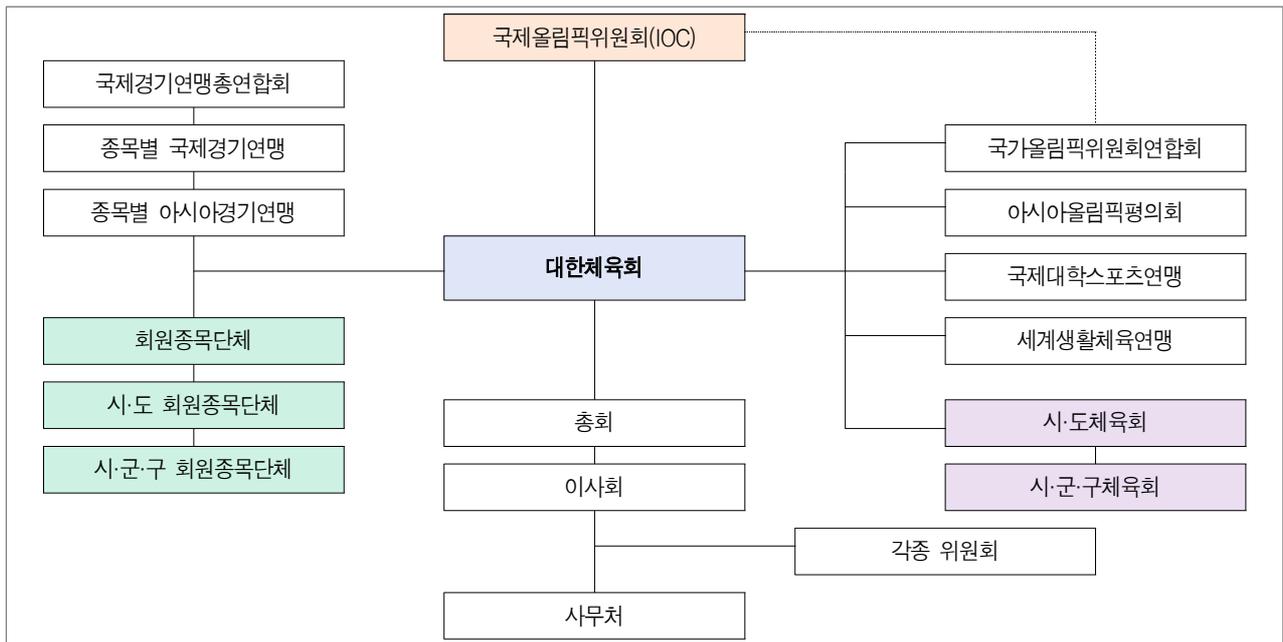
나. 대한체육회 주요 현황

1) 조직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한 법정법인으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대한체육회는 [그림 2]와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 등 국제체육기구에 가입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데, 2019년 5월 현재 73개 종목단체(정회원단체 61개, 준회원단체 4개, 인정단체 8개, 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³⁾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7개 시·도별 체육회가 그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대한체육회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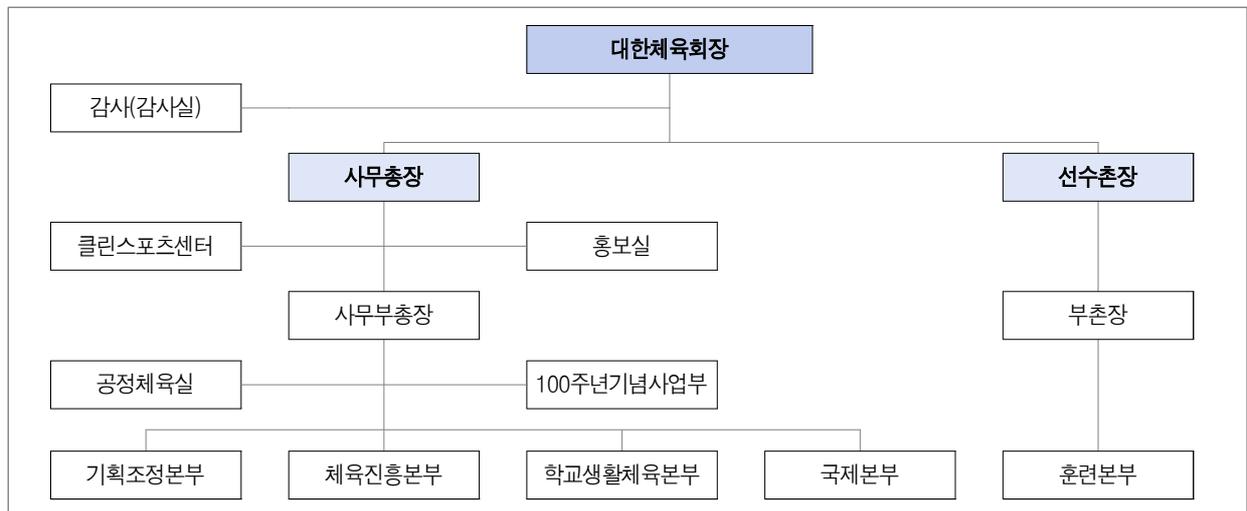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3)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되며, ①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 ② 준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승인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제한받는 단체, ③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함

대한체육회는 [그림 3]과 같이 회장(비상임), 사무총장(상임), 선수총장, 감사4)를 포함하여 5본부, 3실, 15부, 2팀으로 구성5)되어 있고, 인원은 2019년 5월 현재 현원 247명(정원 260명)이며,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진천·태릉·태백 선수촌 3 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대한체육회 조직도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 현황

대한체육회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표 5]와 같이 총 3,473억 원으로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은 3,316억 원이고, 나머지 자체예산은 157억 원이다.

[표 5] 대한체육회 예산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예산	합계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소계		
1,345	1,791	180	3,316	157	3,473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4) 대한체육회 감사(비상임)는 대의원 중 1명(회원종목단체장)과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대한체육회 자체 감사에는 관여하나 기타 회원종목단체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는 결재 권한이 없는 등 관여하지 않고 있음

5) 클린스포츠센터, 100주년기념사업부,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준비기획부, 태릉선수촌 운영부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음

3)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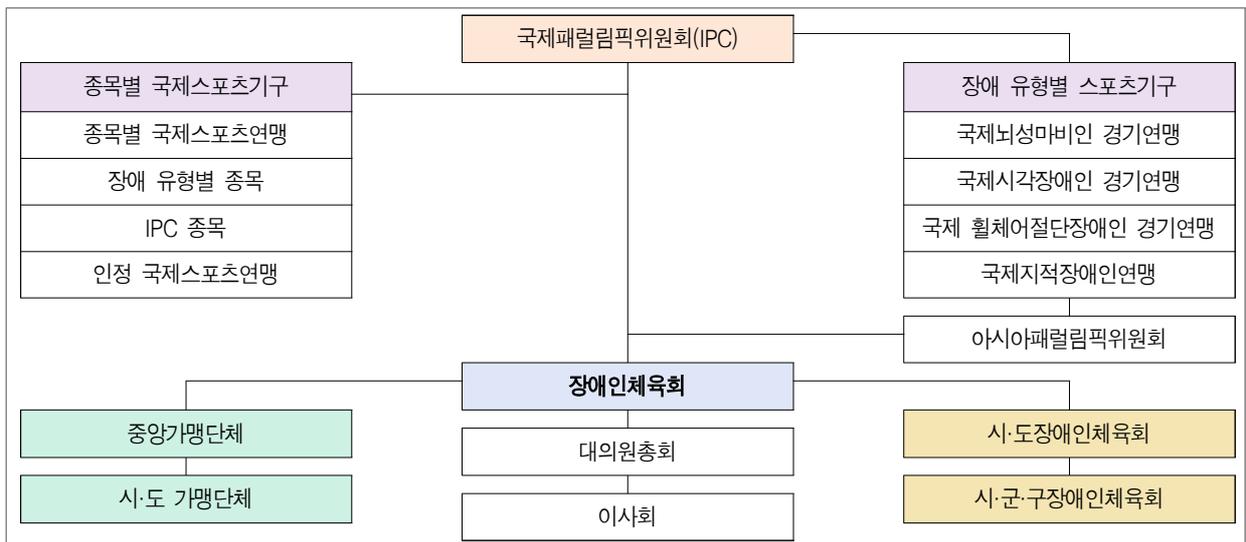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자체 「정관」 제5조 등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사업에 대한 지원, 전문체육(우수선수·지도자의 육성 등) 및 생활체육 진흥(스포츠클럽 지원 등), 올림픽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및 국제 교류,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체육인 복지 향상 및 은퇴선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장애인체육회 주요 현황

1) 조직

장애인체육회는 2005. 11. 25.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그림 4]와 같이 대외적으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 장애체육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2019년 5월 현재 41개의 체육단체(정가맹단체 32개 및 인정단체⁶⁾ 9개, 이하 “가맹단체”라 한다)가 가맹되어 있으며, 17개 시·도별 장애인체육회가 그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장애인체육회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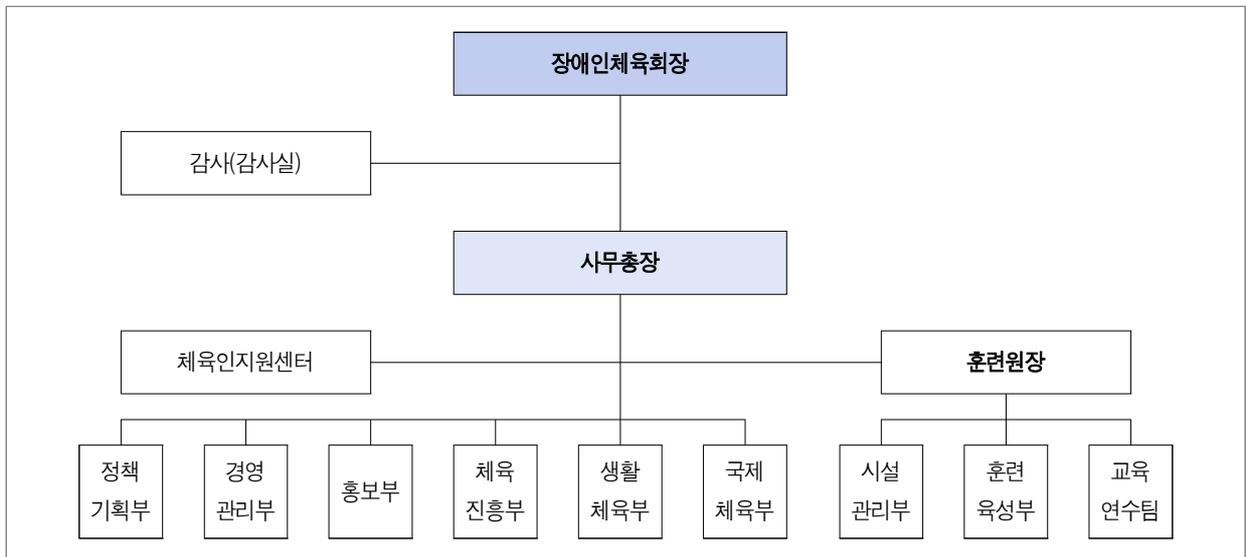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6)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인정단체는 이사회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임

장애인체육회는 [그림 5]와 같이 회장(비상임), 사무총장(상임), 감사(비상임), 훈련원장을 포함하여 1실, 8부, 1센터,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2019년 5월 현재 현원 69명(정원 76명)이며, 국가대표 훈련원으로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5] 장애인체육회 조직도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 현황

장애인체육회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표 6]과 같이 총 639억 원으로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금)은 552억 원이고, 나머지 자체예산 등은 87억 원이다.

[표 6] 장애인체육회 예산 현황(2019년 기준)

(단위: 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예산	기타	합계
체육단체 운영지원	생활체육지원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	기타	소계			
140	96	249	67	552	83	4	639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3) 주요 업무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자체 「정관」 제7조 등에 따라 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지원,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 사업, 생활체육의 육성·보급, 패럴림픽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및 국제 교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의 개최, 장애 체육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대한체육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규정」, 장애인체육회 「정관」과 「가맹단체운영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는 해당 체육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가입이 확정된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서, 해당 종목을 보급하고 선수 및 종목별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종목단체와 가맹단체는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시·도종목단체 등에 대한 지도와 지원,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별표 1] “회원종목단체 현황”과 같이 총 73개로 정회원단체 61개, 준회원단체 4개, 인정단체 8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인 회원종목단체로는 대한양궁협회, 대한스키협회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는 [별표 2] “가맹단체 현황”과 같이 총 41개로 정가맹단체 32개, 인정단체 9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인 가맹단체로는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등이 있다.

한편, 회원종목단체와 가맹단체 중 정회원·정가맹단체는 대한체육회와 장애

인체육회의 회원으로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등의 권리와 양 체육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마. 시·도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시·도체육회규정」, 장애인체육회의 「정관」 및 「시·도지회운영규정」에 따르면 시·도(장애인)체육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회이다.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시·도종목(가맹)단체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시·도 내 종합대회의 개최 및 국제 교류,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현재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별표 3] “시·도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과 같이 17개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다.

한편,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정회원(가맹)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문체부는 2008년 2월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지난 십여년간 체육계 내 (성)폭력, 승부조작, 조직 사유화(횡령, 배임 등 포함) 등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2019년 1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또다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는 등 체육계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체육계 자정 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고질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해 2019. 1. 14.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청구 배경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에 있다는 점과 공익감사청구 요지 등을 고려하여 ① (성)폭력 사건과 직접 관련된 선수촌 및 국가대표 관리(훈련 포함)의 적정 여부, ②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적정 행사 여부(㉠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조사·처리는 적정하게 하였는가? ㉡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을 적정하게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③ 감사과정에서 위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함께 점검하였으나 기존 체육 육성정책에 대한 고도의 정책적 결정·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성적 지상주의, 교육방식, 회원종목단체 육성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감사결과 ① 선수촌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관리, 교육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 ② 국가대표 훈련비를 부당 편취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한 문제점, ③ 비위 신고사항을 적정한 조사 없이 방치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점, ④ 실효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을 부실 수립·발표하거나 반복적으로 대책만 발표하고 사후 이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점 등 [표 7]과 같이 총 40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문체부 등에 이를 개선하거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하였다.

[표 7] 지적사항 총괄

구분	합계	주의	통보		
			일반	인사자료	시정완료
건수	40	17	20	2	1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표 8]과 같다.

[표 8] 주요 지적사항 요약

분야	주요 지적사항
선수촌 운영 및 국가대표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선수촌 출입관리 소홀, 보안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절차 미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 실시 등 국가대표 사고 예방 노력 미흡 · 대한카바디협회 등 3개 회원단체는 이면계약 등을 통해 국가대표 훈련비(숙박비, 급식비, 국외전지 훈련비) 및 수당을 부당 편취 · 대한골프협회 등 13개 회원단체는 공개공고 등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른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분야	주요 지적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스포츠비리 조사·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신고사건을 방치하거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하지 않는 등 27건을 부실 처리 ·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에서 권한 없이 재심의 감경하거나 처분요구를 불이행하는데도 내버려 두거나 전 대한수영연맹 임원이 부당 사면·복권되어 대한체육회 임원으로 취임한 부당 사례 발생 · 장애인체육회의 제재기준이 불합리하여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부당 사례 발생 ·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지도자선수 등록제한 기간 중에 23명이 등록되어 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도자·선수 활동을 계속하는 부당 사례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스포츠비리 개선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한 고발수사의뢰 기준을 마련·시달하지 않아 관련 업무가 공정성·형평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 운동부에서 인지한 비위사실 보고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일탈하고 있고 체계적 관리도 곤란 · 비위지도자의 체육계 퇴출을 위한 징계정보 공유방안이 대책 수립 후 5년이 지난 2018년 말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을 체육단체에 통보·제재토록 하였으나 대부분(87.9%)이 통보되지 않았고, 통보된 경우에도 방치되는 사례 다수 발생 · 성추행 비위행위가 소속단체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처분 없이 재직하는 부당 사례 발생 ·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한 (성)폭력, 승부조작 등 관련자를 체육단체에서 양정기준 하한보다 낮게 징계 처분하는데도 지도·감독 없이 방치 · 비위지도자의 취업 등을 제한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제도가 2012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5년간 제재실적이 1명에 불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사실상 방치(표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97명에 대해 처분 필요) · 징계사실 확인 불철저로 (성)폭력 지도자 등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관련 계약직 직원을 규정에 위반되게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 · 강원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에서 강원도 등이 보조한 대회운영 관련 보조금 등을 횡령

2. 선수촌 운영 및 국가대표 등 관리 분야

실 태

가. 국가대표 선수촌 등 운영 현황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는 [표 9]와 같이 2011년 10월 개촌한 진천선수촌을 비롯하여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 등 3곳의 선수촌을 운영 중이고,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 10월 개촌한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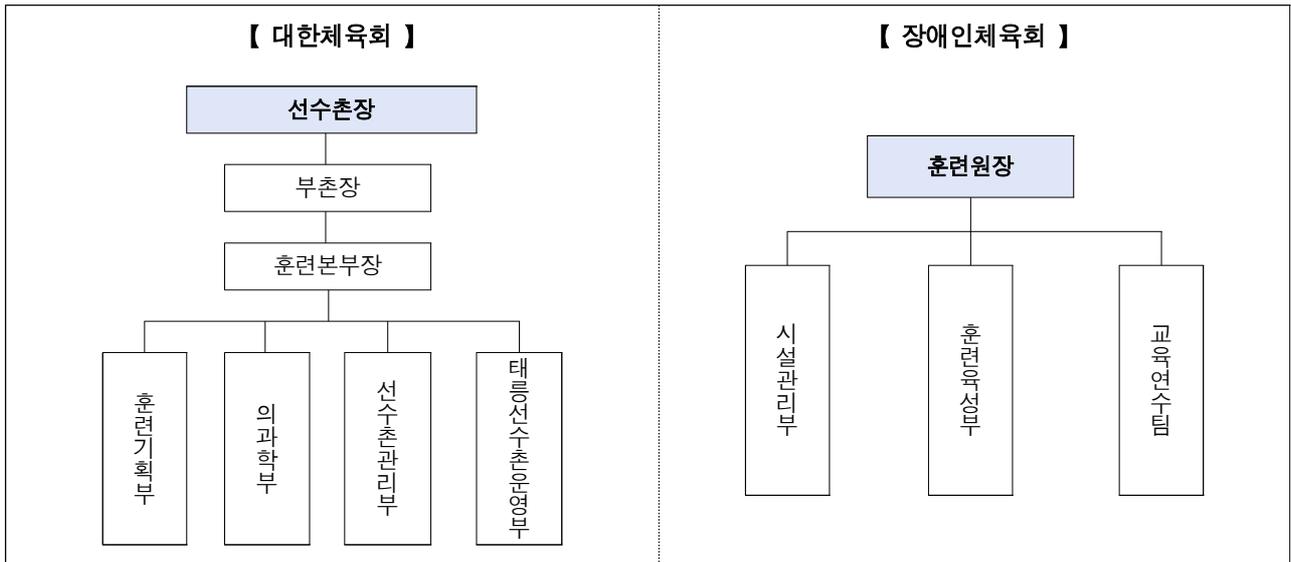
[표 9] 국가대표 선수촌 및 훈련원 운영 현황

구분	소재지	개촌시기	시설 현황	훈련인원(2018년)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충청북도 진천군 (1단계) 2011년 10월 (2단계) 2017년 9월	숙소 3개 동·훈련시설 21개 동 등	1,310명
	태릉선수촌	서울특별시 노원구 1966년 6월	숙소 3개 동·훈련시설 13개 동 등	174명
	태백선수촌	강원도 태백시 1998년 6월	숙소/체육관 1개 동 등	62명
장애인체육회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	경기도 이천시 2009년 10월	숙소 1개 동·훈련시설 5개 동 등	515명

자료: 대한체육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선수촌장 아래 훈련본부(훈련기획부, 선수촌관리부, 의과학부, 태릉선수촌운영부)에서, 장애인체육회는 훈련원장 아래 훈련육성부·시설관리부 등에서 각각 국가대표 훈련계획 수립 및 관리, 선수촌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조직구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체계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의 경우 사전에 강화훈련을 승인받은 자 등에 한해 시설 이용에 필요한 출입증을 교부하거나 매일 3차례 순찰⁷⁾을 실시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표 10]과 같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5조와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각종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10] 국가대표 선수촌 내 비위행위 발생 현황(2013~2019년)

연번	발생 시점	종목	비위 행위자	직책	비위 내용	선수촌의 조치 ¹⁾	협회·체육회의 조치
1	'13년경	수영	A	선수	A는 '13년경 진천선수촌 여자탈의실에 USB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 촬영함 ※ '16년 8월 언론 보도 후 A는 제명되었고, 상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9년 5월 현재 재판 중임	-	제명
2	'15년 9월	빙상	B	선수	B는 '15년 9월 훈련 도중 국가대표 선수 C가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넘어지게 되자 C를 폭행함	-	'15/'16 시즌 대회 출전정지
3	'17년 8월	레슬링	D	선수	동료 선수 폭행	퇴촌	사회봉사 20시간

7) 다만, 야간 및 휴일 등에 당직근무자가 순찰활동을 하면서 소등 및 잠금 위주로 시설점검을 진행하고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연번	발생 시점	종목	비위 행위자	직책	비위 내용	선수촌의 조치 ¹⁾	협회·체육회의 조치
4	'17년 12월	레슬링	E	지도자	E가 '17년 12월 또는 '18년 1월경 레슬링 기술을 지도한다며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함 ※ '19년 1월 언론 보도 직후 선수촌은 레슬링 대표팀 전체에 대해 입촌 불가를 통보하고,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조사 후 징계 처분	퇴촌 (1개월)	자격정지 1년
5	'18년 1월	빙상	F	지도자	F는 '18년 1월 국가대표 선수 J를 진천선수촌 빙상장 지도자실에서 폭행함 ²⁾	-	제명
6	'18년 1월	레슬링	G	지도자	G는 '18년 1월경 선수촌 내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국가대표 선수 H를 폭행함	퇴촌	자격정지(6개월)
7	'18년 9월	배구	I	지도자	I는 '18년 9월 선수촌 숙소에서 같은 종목 트레이너를 강제 추행함	-	제명
8	'18년 12월	정구	K	선수	선수촌 내에서 음주	퇴촌 (3개월)	경고 (자원봉사 40시간)
			L				
			M				
9	'18년 12월	유도	N	지도자	선수촌 내에서 음주	퇴촌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10	'18년 12월	태권도	O	선수	새벽시간 무단 외출, 월담	퇴촌 (3개월)	-
			P				
			Q				
			R				
			S				
11	'19년 1월	레슬링	T	선수	훈련기간이 아닌 때에 새벽시간 월담하여 무단 출입·시설물 사용	퇴촌 (1개월)	-
12	'19년 1월	체조	U	선수	이성친구를 선수촌과 숙소내 무단 출입시킴	퇴촌 (5개월)	출전정지 4개월
13	'19년 2월	빙상	V	선수	다른 선수(W)의 출입증을 발급받아 여성 숙소내 무단 출입	퇴촌 (3개월)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
			W				
14	'19년 6월	빙상	쇼트트랙 전체	전체	X 선수가 Y 선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훈련시간에 발생하였고, 단순히 행위자 및 피해자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전체적인 훈련 태도 및 분위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퇴촌 (1개월)	-

주: 1. 대한체육회 선수촌(진천·태릉·태백) 내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수촌은 비위행위자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소속 회원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비위행위자를 퇴촌 조치한 후 소속 회원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대표 훈련 및 입촌 여부를 결정함

2. F 코치는 위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항소심)을 선고받았으나, J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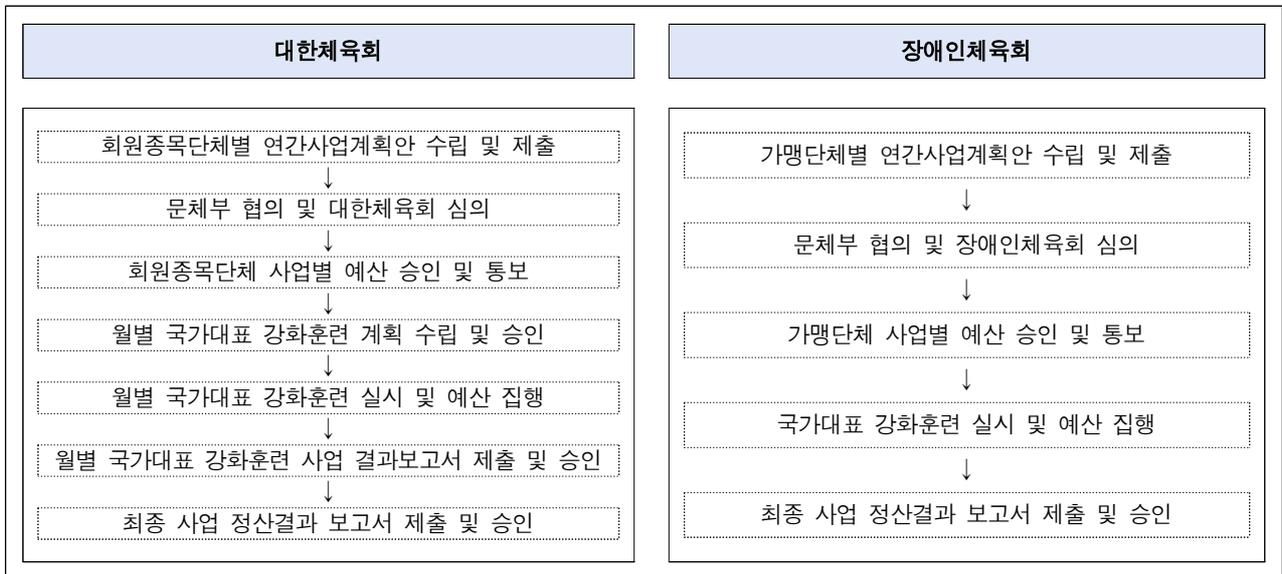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나. 국가대표 훈련 지원 및 의무교육 등 운영 현황

1) 국가대표 훈련 종류 및 훈련비 지원(규모, 절차, 정산 포함)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그림 7]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로부터 연간 및 월별 훈련계획⁸⁾을 제출받아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승인하고 훈련비 등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강화훈련이 종료된 후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를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

[그림 7] 국가대표 훈련계획 수립 및 정산 절차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표 11]과 같이 대한체육회는 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종목 중 올림픽대회 출전 가능 여부 및 메달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8개 종목을 중점지원·집중지원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종목별 참가자 대비 최대 3배수 내외에서 연간 최대 260일의 훈련일수를 배정하는 등 훈련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패럴림픽대회 성적 등을 고려하여 29개 종목을 전략종목·육성종목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훈련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각

8) 장애인체육회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함

가맹단체로 하여금 연간 170일의 목표 훈련일수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 종목별 훈련 지원 현황(2019년 기준)

구분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유형	중점지원(6개), 집중지원(5개), 관심지원(19개), 정책지원(13개), 일반지원(5개)	전략종목(9개), 육성종목(7개), 일반종목(7개), 동계종목(6개)
그룹화 기준	올림픽대회 및 아시안게임 종목의 올림픽대회 출전 가능 여부 및 메달 획득 가능성	패럴림픽대회 성적
지원 종목	48개 종목	29개 종목
지원 인원	참가자 대비 최대 3배수 내외	최소 5명에서 최대 26명 이상
종목별 훈련일수	최대 260일 지원	170일 목표 ⁹⁾

주: 가맹단체가 교부받은 훈련예산 한도에서 인원 및 훈련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훈련 시행장소를 기준으로 입촌훈련과 촌외훈련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입촌훈련은 국가대표가 선수촌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표 12]와 같이 입촌 대상자에게는 훈련기간 중 숙박과 식사가 무료⁹⁾로 제공되고, 선수·지도자에게는 훈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촌외훈련은 선수촌 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해당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입촌훈련에 상응하는 수준의 식비·숙박비(한도 내 사후 실비 정산)와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훈련상황을 보고받는 등 사전·사후적으로 촌외훈련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훈련 예산은 2019년 기준 대한체육회가 862억 원,

9) 장애인체육회는 입촌훈련 예산으로 1일당 3.8만 원의 식비를 가맹단체에 지급하고 가맹단체는 이를 선수촌에 지급함

장애인체육회가 20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표 12] 국가대표 훈련종류별 훈련비 지원 내용(2018년 기준)

구분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입촌훈련		숙박 및 급식 무료제공	숙박 무료제공 / 식비 1일 3.8만 원
초외훈련	숙박비	1일 4만 원	작동
	급식비	1일 3.8만 원	작동
국외전지훈련		숙박비, 식비, 일비 최대 195달러	숙박비, 식비, 일비, 항공료 지원
훈련수당	선수	1일 6만 원	작동
	코치	월정액 500만 원(총감독 30만 원 별도 지급)	1일 15만 원
	트레이너	월정액 225만 원	1일 10만 원

그 외 국외정보수집, 외국인지도자 초청, 전담팀 구성 등 지원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국가대표 교육 실시 현황

대한체육회는 2015. 2. 13. 및 2018. 4. 12.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60일 이내에 연 1회 이상 반도핑 및 스포츠인권교육(성폭력 방지교육 포함)을 의무적으로 이수¹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에 대한 반도핑 및 스포츠인권교육을 가맹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교육 이수 실적은 [표 13]과 같다.

[표 13] 국가대표 반도핑교육 및 스포츠인권교육 이수 현황(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교육 대상 (A=B+C)	이수자(B)	미이수	
			인원(C)	비율(C/A)
대한체육회	반도핑교육	1,871	446	19.2
	스포츠인권교육	1,987 ^{주)}	628	31.6
장애인체육회	반도핑교육	405	110	21.4
	스포츠인권교육	314	201	39.0

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은 2018. 4. 12.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 5. 1. 이후 강화훈련에 참여한 국가대표에 대하여 조사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0) 반도핑교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도핑 관련 검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스포츠인권교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함

다. 국가대표 등 지도자 및 선수 현황 및 국가대표 선발 절차

스포츠 지도자나 선수로서 대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또는 가맹단체에 매년 1회 지도자나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014. 1. 1.부터 “지도자·선수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도자·선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¹¹⁾, 등록 신청 시 시·도 회원종목단체가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심사한 후 회원종목단체가 승인¹²⁾하여 등록하게 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도 2016. 8. 2.부터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도자·선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¹³⁾,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시·도 가맹단체의 1차 심사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를 거쳐 가맹단체가 최종 심사하여 등록하게 되고,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편, 2019년 5월 기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와 선수는 [표 14]와 같이 총 60개 종목 계 13만 3천여 명이고, 이 중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는 약 1%인 1,488명이며,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총 35개 종목 계 1만 2천여 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는 약 3.3%인 431명이다.

11) 2014. 1. 1. 전에는 선수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수에 대해서만 등록함

12) 2019. 1. 31. 전에는 시·도 회원종목단체의 1차 심사 이후 시·도체육회가 2차로 심사하였으나, 등록처리의 신속·간소화를 위해 시·도체육회의 2차 심사 절차를 생략함

13) 2016. 8. 2. 전에는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수에 대해서만 등록함

[표 14]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등록 선수·지도자 현황(2019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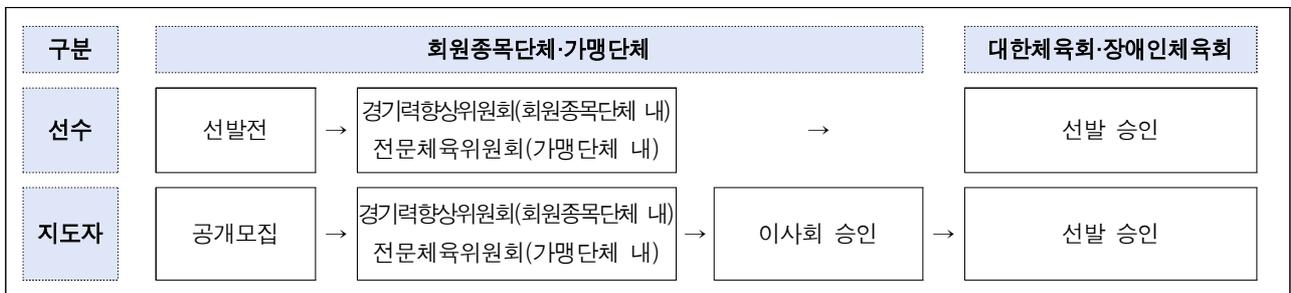
(단위: 개, 명)

구분	등록				국가대표					
	종목 수	계	선수	지도자	종목 수	계	선수	지도자		
								코치	트레이너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53	128,422	113,090	15,332	38	1,239	1,012	182	45
	동계종목	7	5,222	4,526	696	7	249	204	41	4
	소계	60	133,644	117,616	16,028	45	1,488	1,216	223	49
장애인체육회	하계종목	29	12,583	11,639	944	23	384	295	69	20
	동계종목	6	357	313	44	5	47	32	10	5
	소계	35	12,940	11,952	988	28	431	327	79	25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는 [그림 8]과 같이 선발전, 공개모집 등을 거쳐 각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에 설치된 각각 경기력향상위원회 또는 전문체육위원회의 의결로 선발한 후 대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지도자의 경우 각 체육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추가로 거치게 되어 있고, 패럴림픽대회 등 종합대회¹⁴⁾에 참가하는 장애인체육회 산하 종목별 감독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 설치된 전문체육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8]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선발 절차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4) 농아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유형별 종합대회 등

문 제 점

가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출입관리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2018. 5. 12.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등이 무인발급기(KIOSK, 2대)를 통해 발급받은 보안카드(전자출입증)를 이용하여 진천선수촌 정문, 훈련장, 숙소 등을 이용¹⁵⁾하도록 하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퇴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진천선수촌 정문 출입 관리 부적정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6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는 대한체육회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진천선수촌으로 입촌하는 즉시 대한체육회가 발급하는 보안카드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2018년 하반기 (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자 승인받지 않은 사람은 진천선수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진천선수촌 내부에 있던 무인발급기 2대 중 1대를 정문 웰컴센터로 이동 배치하는 한편, 차량이동 시에도 차량탑승자 전원이 정문 출입리더기(차량용)에 보안카드를 인식시키고 정문 보안요원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¹⁶⁾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차량 또는 웰컴센터를 통해 도보로 출입하는 국가대표의 보안카드 접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의 진천선수촌 출입을 적정하게 통제하여야 했다.

15) 정문 및 행정센터 등(1단계), 훈련장 및 부대시설 등(2단계) 및 숙소(3단계)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16) 선수촌 일반방문자는 웰컴센터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일지에 소속, 이름, 방문시간, 방문대상자 등을 기록한 후 방문부서 또는 대상자로부터 유선으로 승인받아 신분증과 일반출입증을 교환하여 출입함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2019년 1월에 시작된 진천선수촌 강화훈련에 참여한 국가대표 명단과 진천선수촌 정문 출입 기록을 대조하여 진천선수촌 출입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15]와 같이 국가대표 입촌자 636명¹⁷⁾ 중 191명(30%)이 보안카드를 정문 출입리더기에 접촉하지 않은 채 입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진천선수촌 출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 15] 국가대표 입촌일 정문 출입리더기 미접촉자 현황(2019. 1. 1.~1. 31.)

(단위: 명, %)

입촌 예정자	입촌자	접촉자 (비율)	미접촉자 (비율)
637	636	445 (70)	191 (30)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진천선수촌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회원종목 단체장은 훈련계획에 따른 입촌 대상자가 선수촌에 입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선수촌장에게 신청하고, 선수촌장은 훈련계획과 선수촌 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촌 및 시설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강화훈련을 승인받은 국가대표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보안카드에 강화훈련 기간 중 정문 및 행정센터 등(1단계), 훈련장과 부대시설 등(2단계) 및 숙소(3단계)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8. 5. 12.부터 입·퇴촌 관리시스템을 운용함에 따라 같은 해 5. 11. 기존에 발급되어 사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출입증¹⁸⁾을 반납하도록

17) 입촌 예정자 637명 중 2명(근대5종 국가대표 Z, 아이스하키 트레이너 AA)이 실제 지연 입촌하거나 입촌하지 않았는데도 훈련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기간에 적발되어 2019. 5. 7.과 5. 28. 각각 360,000원과 1,089,000원 반납함

18) 마그네틱카드로 기록된 정보는 고치기 어렵고 보안에도 취약함

하였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입촌 승인기간 외에는 보안카드에 부여된 모든 시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삭제하고, 사용이 중지된 플라스틱 출입증은 전부 회수하여 승인받지 않은 자가 선수촌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국가대표 강화훈련이 없었던 진천선수촌 정비기간(2019. 1. 1.~1. 9.) 중 진천선수촌 출입내역을 점검한 결과 대한체육회는 강화훈련이 종료된 국가대표의 보안카드에 기부여된 권한 중 숙소 출입 권한(3단계)은 회수하였으나 정문 및 행정센터 등(1단계), 훈련장 및 부대시설 등(2단계)의 출입 권한은 원인 미상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회수하지 않아 국가대표 28명이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42회에 걸쳐 보안카드로 진천선수촌에 무단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원 미확인자가 2019. 1. 13. 전 레슬링 국가대표 지도자 G19)에게 발급되었던 플라스틱 출입증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선수촌을 출입하는 등 유도 등 회원종목단체에 발급한 플라스틱 출입증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²⁰⁾ 신원 미확인자가 사용 중지된 플라스틱 출입증 16개를 이용하여 183회에 걸쳐 선수촌에 출입하는 등 출입 관리에 사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진천선수촌 보안카드 무인발급기 운영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본인 외의 제3자가 무인발급기에서 보안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선수촌 내 각종 훈련시설, 숙소 등에 무단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카드 발급 과정에 지문인식 등 적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2018년 4월까지 국가대표 지도자임

20) 대한체육회는 보안카드 발급 불량 등 무인발급기 문제가 해소되자 2018년 12월 기준에 발급한 플라스틱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조치함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보안카드 무인발급기(정문 1대, 숙소관리동 1대)에 본인이 아니어도 간단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목)만 입력하면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2월 남자쇼트트랙 국가대표 V가 알고 있던 여자선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안카드를 무단 발급받아 여자 숙소에 무단 출입하다 적발되어 퇴촌 및 출전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유명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국가대표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임의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시설·숙소 등에 무단 출입함으로써 대표선수들의 안전 위협과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 및 규정적용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 ① 국가대표 본인 외의 제3자에게 보안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발급기를 통한 보안카드 발급 과정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승인받지 않거나 보안카드 접촉 없이 무단으로 진천선수촌에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및 보안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국가대표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부적정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인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약물 오·남용 등 불법행위 근절, (성)폭력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반도핑교육 및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대한체육회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2018. 4. 12. 시행) 제15조에 따르면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²¹⁾에서 실시하는 반도핑교육 및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교육²²⁾(이하 “의무교육”²³⁾이라 한다)을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 60일 이내에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회원종목단체가 강화훈련 계획서 작성·제출 시 의무교육 일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대표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사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강화훈련 계획서에 의무교육 일정 등을 반영하도록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2018년 강화훈련에 참여한 국가대

2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2007. 6. 22. 문체부 소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반도핑 전담 기구임

22)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스포츠 (성)폭력 등의 사건을 예방·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23)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전문선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인터넷 교육 시행)을 매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대표에 대하여는 좀 더 질 높은 교육(대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반도핑교육은 2015. 2. 13., 스포츠인권교육은 2018. 4. 12. 의무적으로 이수(연 1회 이상)하도록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제15조 규정을 개정함

표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실태를 점검²⁴⁾한 결과 [표 16]과 같이 반도핑교육은 국가대표 2,317명 중 1,871명은 이수하였으나, 446명(19.2%)은 이수하지 않았으며, 2018년 4월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스포츠인권교육의 경우도 국가대표 1,987명 중 1,359명은 이수한 반면, 628명(31.6%)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2018년 국가대표 의무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의무교육 대상 (A=B+C)	이수자 (B)	미이수	
			인원(C)	비율(C/A)
반도핑교육	2,317	1,871	446	19.2
스포츠 인권교육	1,987 ^{주)}	1,359	628	31.6

주: 스포츠 인권교육은 2018. 4. 12.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 5. 1. 이후 강화훈련에 참여한 국가대표에 대하여 조사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문체부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스포츠 인권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표 17]과 같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국가대표 2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하다가 적발되거나, [별표 4] “장애인 국가대표에 대한 징계 현황”과 같이 5개 가맹단체 소속 국가대표 7명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등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4) 대한체육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반도핑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해당 교육 이수자 명단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반도핑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된 명단만 확보하고 있어 이번 감사 시 2018년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만 분석함

[표 17] 장애인 국가대표의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제재 현황

연도	성명	종목	대회명	약물	제재사항
'17	AB	태권도	37회 전국체전	S6.에페드린	8개월 자격정지
'18	AC	태권도	38회 전국체전	S9.프레드니솔론 S9.프레드니손	4개월 자격정지

자료: 장애인체육회 자료 재구성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과 관련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율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의 “스포츠 인권교육 강화 대책”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의무화²⁵⁾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달리 국가대표에게 교육 이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면서 국가대표 강화훈련 계획에 교육일정 등을 반영하도록 하지 않고, 해당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성)폭력 사고 등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참고로 이번 감사기간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여한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성)폭력 예방 등 교육의 이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18]과 같이 반도핑교육의 경우 2016년도에는 국가대표 477명 중 433명이 이수하고 44명(9.2%)은 이수하지 않은 반면, 2018년도에는 515명 중 405명만 이수하고 110명(21.4%)은 이수하지 않아 미이수자 비율이 2.3배 이상 증가하였고, 더욱이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교육 미이수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5) 대한체육회는 일반인 국가대표의 금지약물 복용 및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 제15조에 반도핑(2015년 3월 도입) 및 (성)폭력 예방(2018년 4월 도입)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함

[표 18] 장애인 국가대표의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대상 인원	반도핑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미이수(비율)	이수	미이수(비율)
2016년	477	433	44(9.2)	387	90(18.9)
2017년	479	433	46(9.6)	416	63(13.2)
2018년	515	405	110(21.4)	314	201(39.0)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①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대표 선발 후 강화훈련 계획 수립 시 의무교육 일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장애인 국가대표에 대하여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대표 강화훈련 계획 수립 시 해당 교육 일정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앞으로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강화훈련 계획에 의무교육 일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대표의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으로 반도핑 및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약물 오·남용,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국가대표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반도핑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이

수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촌외훈련비 등 관리·감독 부적정

문체부는 매년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 지원 사업계획²⁶⁾을 검토·승인한 후 대한체육회에 촌외훈련비 및 수당 등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대한체육회는 다시 각 회원종목단체²⁷⁾에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제2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위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나 지도자 등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신청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각 회원종목단체가 교부받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26) 대한체육회는 각 회원종목단체의 국가대표 강화훈련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위 사업계획을 수립함

27) 다만, 2016년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에서 직접 회원종목단체에 교부함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받고 그 관련자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의 서류가 첨부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²⁸⁾ 또는 대한체육회는 위 규정에 따라 각 회원종목단체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그에 첨부된 정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촌외훈련 비중(훈련일수 기준)이 90% 이상이면서 촌외훈련비가 2억 원 이상²⁹⁾인 대한카바디³⁰⁾협회 등 5개 회원종목단체³¹⁾가 최근 4년간(2015~2018년) 촌외훈련비 등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와 민원³²⁾이 제기된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국외전지훈련비, 국가대표 수당 등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28) 각 회원종목단체는 2016년의 경우 보조사업자로서 문체부로부터 정산업무를 위임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이외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대한체육회에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음

29) 2017년 기준

30) 인도에서 성행하는 변형 투기종목으로 술래잡기와 피구, 격투기가 혼합된 형태의 경기

31) 대한카바디협회, 대한크리켓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32) 익명의 제보자가 감사원에 2019. 4. 4. 바이애슬론연맹 직원 AF의 비리에 대해 제보함

1) 대한카바디협회의 경우

대한카바디협회(이하 “카바디협회”라 한다)는 [표 19]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숙박비 614,700,000원, 급식비 678,784,000원, 훈련수당 1,563,382,000원 계 2,856,866,000원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교부받아 숙박비 등으로 2,838,816,000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18,050,000원을 반납하였다.

[표 19] 카바디협회 촌외훈련비 등 교부·집행 내역(2015~2018년)

(단위: 천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교부액 (A)	숙박비	167,840	157,200	157,200	132,460	614,700
	급식비	150,309	140,975	205,608	181,892	678,784
	훈련수당	348,348	337,986	458,884	418,164	1,563,382
	계	666,497	636,161	821,692	732,516	2,856,866
집행액 (B)	숙박비	158,290	157,200	157,200	128,820	601,510
	급식비	146,668	140,975	205,484	180,995	674,122
	훈련수당	348,348	337,788	458,884	418,164	1,563,184
	계	653,306	635,963	821,568	727,979	2,838,816
반납액 (A-B)	숙박비	9,550	-	-	3,640	13,190
	급식비	3,641	-	124	897	4,662
	훈련수당	-	198	-	-	198
	계	13,191	198	124	4,537	18,050

자료: 대한체육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가) 숙박비 관련

카바디협회는 촌외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의 숙박시설 등(원룸 20개 실, 훈련장 용도 지하실)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2. 30. 임대업자인 AD와 “○○오피스텔”(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17,850,000원³³⁾을 9개월 간(2015년 1~9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카바디협회와 AD는 당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5. 1.

33) 2016년부터는 월 13,310,000원에 12개월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이면약정 금액은 월 7,800,000원으로 동일함

12. 이면약정을 체결하여 실제 월 임대료를 17,850,000원에서 7,800,000원으로 조정 후, 당초 지급하기로 한 9개월간의 임대료 160,650,000원과 실제 연간 임대료 93,600,000원³⁴⁾과의 차액은 AD가 기부금 형식으로 카바디협회에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카바디협회는 2015. 1. 31. 당초 계약서대로 2015년 1월 임대료(17,850,000원)를 AD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5년 숙박비 계 158,290,000원을 집행한 후, 이면약정에 따라 실제 연간 임대료(93,600,000원)를 제외한 차액 64,690,000원을 카바디협회 명의의 계좌 및 AE³⁵⁾ 명의의 카바디협회 관리 계좌(이하 “별도계좌”라 한다)로 돌려받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숙박비로 집행한 601,510,000원 중 242,710,000원³⁶⁾을 반환받아 전기료 등 공공요금³⁷⁾으로 48,117,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 194,593,000원은 협회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나) 급식비 관련

카바디협회는 촌외훈련에 참여하는 지도자·선수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AE와 구두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교부받은 급식비 1일 기준액 38,000원(조식 9,000원, 중식 15,000원, 석식 14,000원)을 전액 그대로 지급하되 양자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는 식사단가(6,000~7,000원 수준)와 식수 인원에 따라 결정되는 급식비 등(별도 제공하는 특식, 야식, 음료 등 포함)과의

34) 매월 7,800,000원씩 12개월분임

35) 카바디협회가 국가대표 지도자 등의 식사를 위해 급식 계약을 체결한 식당의(상호: □□) 대표자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카바디협회 이사를 역임함

36) 이면약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각각 64,690,000원, 63,600,000원, 63,600,000원 계 191,890,000원이나 2018년은 2개월분 임대료(숙박비) 15,600,000원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자부담으로 처리함에 따라 50,820,000원만 돌려 받음

37) 당초 약정 시에는 임대료에 포함하기로 하였던 전기료, 상수도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를 이면약정 시 카바디협회가 반환금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함

차액은 기부금 형식으로 카바디협회에 반환하는 것을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카바디협회는 2015년 급식비 146,668,000원을 AE에게 지급한 후 정
당 급식비 105,169,000원을 제외한 차액 41,499,000원을 구두 계약대로 카바디협
회 명의의 계좌 또는 별도계좌로 돌려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카바디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촌외훈
련 급식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한 674,122,000원 중 급식비 497,344,000원을 제
외한 차액 176,778,000원을 돌려받아 카바디협회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목
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다) 훈련수당 관련

카바디협회는 촌외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문체부와 대
한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수당을 전액 지급하면, 선수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
수수당지급지침”과의 차액을, 지도자는 “직원급여표”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
납³⁸⁾하도록 요청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카바디협회는 2015년 대한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선수·코치수당
348,348,000원 중 사전합의 내용과의 차액 120,852,000원을 별도계좌로 돌려받는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훈련수당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고한
1,563,184,000원 중 337,308,000원을 돌려받아 카바디협회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카바디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별표 5] “카바디협회 촌외
훈련비 등 부당 집행 현황”과 같이 숙박비 194,593,000원, 급식비 176,778,000원,
훈련수당 337,308,000원 계 708,679,000원을 그 지급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후 사

38) 교부받은 수당은 1인당 1일 6만 원이나, 지침상에는 선수 경력, 대회 참가 여부, 훈련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므로 일률적인 차액(비율)은 없음

실과 다른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이 첨부된 정산보고서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였는데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5년부터 2017년³⁹⁾까지 카바디협회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2)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의 경우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하 “바이애슬론연맹”이라 한다)은 [별표 6] “바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비 등 교부·집행 내역”과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⁴⁰⁾ 외국인코치 수당 683,471,000원, 국가대표 수당 2,526,176,000원, 국외전지훈련비 2,633,640,000원 계 5,843,287,000원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교부받아 5,608,472,000원을 집행한 후 나머지 234,815,000원을 반납하였다.

가) 외국인코치 및 귀화선수 수당 관련

(1) 바이애슬론연맹 직원 AF의 경우

바이애슬론연맹은 국가대표팀의 확성⁴¹⁾ 지도를 위해 2013. 8. 30. 근로계약⁴²⁾을 체결한 오스트리아 국적 AG 명의의 한국계좌를 직접 관리⁴³⁾하였다.

그런데 바이애슬론연맹은 AG의 7개월간 수당⁴⁴⁾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59,500,000원과 2014년 4월 및 7월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2,960,000원 계 62,460,000원을 AG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중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월간의 수당 명목으로 총 23,019,770원⁴⁵⁾(3,500유로/월×5)만 현금으로 출금

39) 대한체육회는 2018년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감사일 현재 검토 중임

40) 2016년은 문체부에서 춘외훈련계획을 승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정산 승인함

41) 스키선수의 활주 속도를 높여주거나 장비를 보관할 때 산화 방지를 위해 스키에 왁스를 칠하는 것을 말함

42) 바이애슬론연맹은 필요에 따라 1개월, 3개월 등으로 기간을 나누어 AG와 근로계약(기간: 2013. 10. 1.~12. 31., 2014. 8. 1.~8. 31., 2014. 10. 1.~2015. 3. 31.)을 체결함

43) 관리자: 바이애슬론연맹 직원 AF

44) 2014년 8월과 2014년 10월~2015년 3월, 8,500,000원/월

하여 AG 명의의 외화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등 AG 명의의 한국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39,440,230원이 적은 금액을 AG에게 지급⁴⁵⁾하였다.

또한 바이애슬론연맹은 2015. 9. 15. 2015년 하반기 국가대표 훈련에 참여하지 않게 된 AG가 마치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대표를 지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대한체육회로부터 3개월분 수당으로 계 26,400,000원을 교부받아 AG 명의의 한국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실제로는 AG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바이애슬론연맹이 AG에게 지급한 수당을 부풀리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 포상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별표 7] “AG의 수당 등 교부·정산 현황”과 같이 AG에게 실제로 지급한 23,019,770원보다 65,840,230원을 부풀린 88,860,000원을 AG에게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바이애슬론연맹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와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애슬론연맹이 부당하게 수령한 65,840,230원과 예금이자 20,335원 계 65,860,565원의 실제 사용내역에 대하여 AG 명의의 한국계좌를 직접 관리한 바이애슬론연맹 직원 AF는 [그림 9]와 같이 ① AG 명의의 한국계좌에서 2016. 2. 5. 인출된 6,000,000원은 선수단 ○○ 피복 구입비로, ② 19,014,400원은 제3자 명의 계좌를 경유(AH⁴⁷⁾→AI·AJ⁴⁸⁾)하여 현 바이애슬론연맹 임원 AK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가 2회(2017. 6. 19. 및 7. 26.)에 걸쳐 돌려받아 왁스 구입비로 지출하였고, ③ 나머지 40,846,165원은 AG 명의의 한국계좌에서 직접 인출

45) 월 3,500유로를 지급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원화로 인출한 금액과 송금수수료를 합한 금액임

46) 현금 인출 후 유로화로 환전하여 AG의 외국계좌로 송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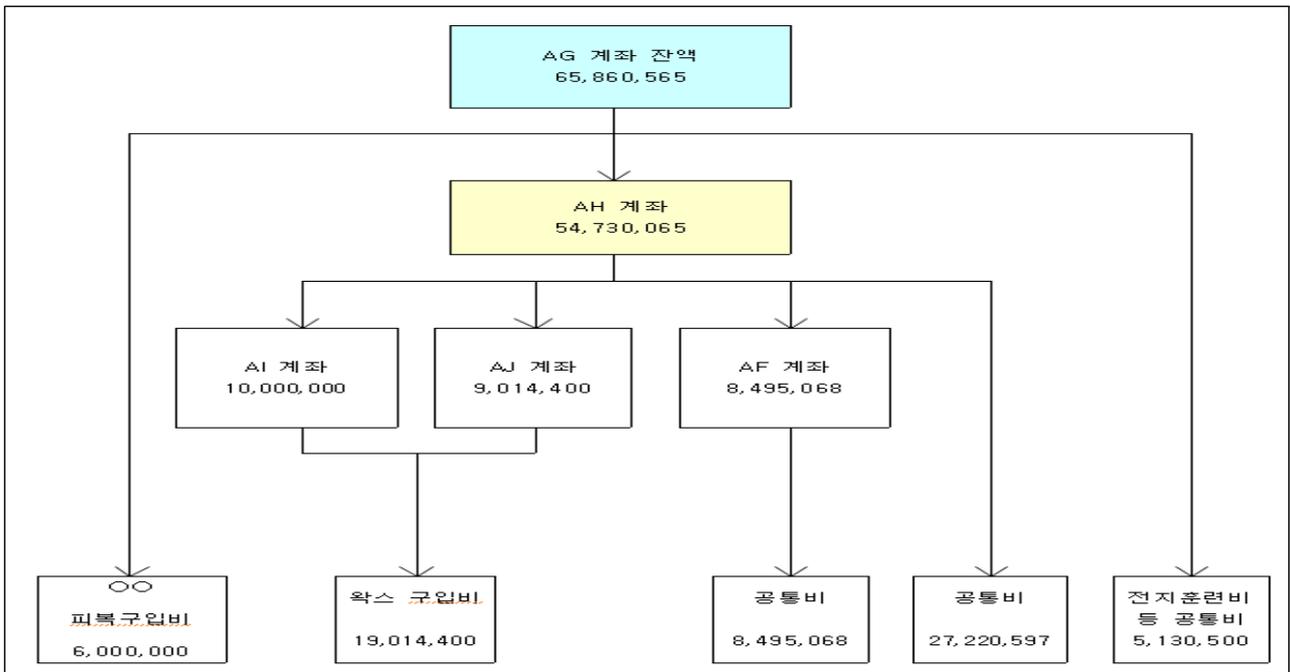
47)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임

48) AI와 AJ는 누구인지 모름. 직원 AF는 임원 AK의 지시로 AH 계좌에서 2017. 5. 12. AI 및 같은 해 5. 26. AJ에게 송금함

(5,130,500원)하거나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선수 AH(27,220,597원) 및 AF(8,495,068원) 본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전지훈련비 및 연맹 공통경비로 각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림 9] AG 명의 계좌 잔액 흐름도

(단위: 원)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① ○○ 피복 구입비는 2015. 10. 12. AH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 집행 (6,350,084원)된 내역이 있어 AF가 용도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⁴⁹⁾되고, ② 왁스 공급업체 대표 AL이 2017. 10. 10. 왁스 대금(20,000,000원⁵⁰⁾) 중 11,000,000원을 AF 명의의 계좌에 반환한 사실 등이 있어 AF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 바이애슬론연맹 임원 AK의 경우

49) AF는 당초 피복구입비로 6,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 부외계좌(AH)에서 피복구입비가 별도 집행된 내역을 제시하자 피복구입비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않음

50) AF는 AH 명의의 계좌에서 AI 및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9,014,400원을 임원 AK가 관리하였는데, AK가 위 금액에서 985,600원을 더한 20,000,000원을 본인에게 다시 송금하여 왁스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바이애슬론연맹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여하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별표 8] “바이애슬론 귀화선수 등의 한국계좌 개설 현황”과 같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AM 등 4명의 러시아 국적 선수를 귀화⁵¹⁾시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하였고, 2016. 6. 4. AN과 국가대표팀 코치 용역제공 계약(기간: 2016. 6. 4.~2017. 3. 31.)을 체결하는 등 5명을 국가대표 외국인코치 등으로 선발하였다.

그런데 바이애슬론연맹은 2017. 1. 5. AO 명의의 한국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에게 주지 않고 직접 관리⁵²⁾하면서 2017. 1. 20.부터 2018. 5. 11. 사이에 AO에 대한 국가대표 수당 등 명목으로 위 계좌에 85,398,226원을 입금한 후 그중 46,810,000원만 현금으로 인출하여 AO에게 지급⁵³⁾하고, 나머지 38,588,226원은 △△군청 바이애슬론 감독 AP⁵⁴⁾ 등 3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표 20]과 같이 바이애슬론연맹은 AO 등 9명의 귀화선수와 외국인코치 등의 명의로 된 한국계좌를 직접 개설⁵⁵⁾·관리하면서 2015. 6. 10.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당으로 입금한 계 764,205,229원 중 311,185,306원을 합리적 사유 없이 현 바이애슬론연맹 임원

51) 임원 AK가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귀화를 추진함

52) 관리자: 바이애슬론연맹 임원 AK

53) 감사원 감사기간 중 AO 본인에게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AO는 수당 등으로 받은 금액은 AK에게 받은 현금 약 250만 루블(한화 약 45,000,000원)이 전부라고 하였는데, 이는 AO에 대한 수당 등 85,000,000여 원 중 AK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약 46,000,000원과 비슷하여 현금인출액만 AO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임

54) AP 감독의 본인계좌로 입금된 귀화선수 수당 중 실제 귀화선수에게 송금된 거래 내역은 없음

연번	일자	지급금액(원)	거래점	거래내용	거래상대방	비고
1	2017. 4. 18.	4,275,336	올림픽	타행송금	AK	-
2	2018. 1. 26.	10,000,000	강릉	대체	-	-
3	2018. 2. 8.	10,000,000	♀♀중	타행송금	AQ	신원미상
4	2018. 4. 18.	10,870,000	강릉	타행송금	AP	△△군청 감독
5	2018. 7. 6.	3,442,890	강릉	타행송금	AP	"
합계		38,588,226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55) AO 외 타 귀화선수의 경우 한국계좌 개설 시 해당 선수의 도장이 아닌 AF의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함

AK 또는 AK의 특수관계인⁵⁶⁾ 명의의 계좌에 송금 등을 하였는데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바이애슬론연맹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⁵⁷⁾하였다.

[표 20] 귀화선수 등의 한국계좌 출금 내역

(단위: 원)

성명	계좌이체 등(용도불명액)	현금 출금(지급액)	계
AV	67,382,440	92,560,000	159,942,440
AW	82,855,435	102,718,923	185,574,358
AO	38,588,226	46,810,000	85,398,226
AM	35,230,420	21,641,000	56,871,420
AN	17,817,000	25,230,000	43,047,000
AX	10,410,000	28,150,000	38,560,000
AY	10,220,000	44,037,000	54,257,000
AZ	44,481,785	69,150,000	113,631,785
BA	4,200,000	22,723,000	26,923,000
계(9명)	311,185,306	453,019,923	764,205,229

주: 위 한국계좌 내역 외에 바이애슬론연맹은 2017. 12. 29. 당시 연맹 임원 BB의 지정기부금 7,000만 원을 AW 명의의 별도 한국계좌로 입금하였는데(바이애슬론연맹 회계 반영), 4일 후인 2018. 1. 2. 위 계좌에서 BB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례도 있음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AO 등의 명의로 된 한국계좌를 직접 관리한 AK는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송금 등을 한 311,185,306원은 러시아 주재 한국인의 부탁으로 국내 가족에게 원화 송금 등을 하는 데 먼저 사용한 후 같은 금액을 러시아에서 원화 송금을 부탁한 한국인으로부터 루블화로 돌려받아 귀화선수·외국인 지도자 등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AO는 AK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이

56) AK는 귀화선수 등의 계좌에서 본인에게 9회 58,495,723원, AR(AK의 여동생)에게 1회 2,700,000원, AS(AK 부친)에게 4회 14,265,800원, AP(△△군청 바이애슬론 감독)에게 7회 35,210,276원, AT(AK의 회사 직원)에게 1회 18,200,000원, AU(AK의 친구)에게 6회 22,118,000원, AQ(AK는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음)에게 3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함

57) 대한체육회는 2018년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감사일 현재 검토 중이며 2019년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는 시기가 미도래함

[표 20]의 현금 출금액(46,810,000원)에 상당하는 약 250만 루블⁵⁸⁾이 전부라고 이번 감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반면, AK는 러시아에서 루블화로 수당을 별도 지급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AK가 속칭 ‘환치기’를 부탁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 계좌를 경유하여 송금할 필요는 없다는 점, ③ 2017. 12. 29. 당시 연맹 임원 BB가 귀화선수 AW에게 지급하도록 지정 기부한 70,000,000원이 AK가 관리하는 AW 명의의 한국계좌에 입금되었다가 4일 후인 2018. 1. 2. AW에게 지급되지 않고 BB 명의의 계좌로 다시 반환⁵⁹⁾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K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국외전지훈련 숙식비 관련

바이애슬론연맹은 2014. 8. 12.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러시아 튜멘 소재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하계 국외전지훈련을 하는 등 [표 21]과 같이 2014년 8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6회에 걸쳐 러시아 튜멘에서 전지훈련을 하였고,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016 국대 하계전지훈련”을 제외한 5차례는 바이애슬론 경기장 부속 호텔인 ▷▷에서 숙식을 일괄 제공받았다.

58) AO는 감사원 감사 중 본인은 한국계좌 개설 후 연맹에서 계속 계좌를 갖고 있었고, 임원 AK에게 급여를 현금으로만 약 250만 루블을 받았다고 답변함

59) 지정기부금이 반환되었으나 바이애슬론연맹 자체회계에는 지정 기부한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

[표 21] 국가대표 선수의 튜멘 국외전지훈련 현황(2014~2018년)

(단위: 일, 명, 원)

연도	훈련명	훈련기간	숙식장소	숙박 일수	인원	1일 1인당 숙식비
2014	국대 하계 국외전지훈련	2014. 8. 12. ~ 8. 27.	▷▷ 호텔	15	21	42,361
2015	2015 국대 맞춤형 지원사업(3차)	2015. 10. 7. ~ 11. 1.	▷▷ 호텔	25	21	141,680
2016	2016 국대 하계전지훈련	2016. 5. 16. ~ 6. 21.	확인 불가	36	16	118,238
	국대 16/17시즌 전지훈련	2016. 10. 13. ~ 11. 14.	▷▷ 호텔	32	21	141,517
2017	2017 국대 시즌 전지훈련	2017. 10. 13. ~ 11. 7.	▷▷ 호텔	25	26	146,139
2018	2018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2018. 10. 11. ~ 11. 7.	▷▷ 호텔	27	12	81,349

주: 2014년의 경우만 실제 숙식장소에서 기금카드로 숙식비 집행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바이애슬론연맹은 2014년 8월 실시한 “국대 하계 국외전지훈련” 시에는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 호텔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 15일간 숙식비용으로 1일 1인당 42,361원⁶⁰⁾ 계 13,343,771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 호텔에서 숙식한 나머지 4차례 국외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실제 숙식을 제공받은 ▷▷ 호텔이 아니라 현 바이애슬론연맹 임원 AK의 지인이자 튜멘 지역 ◻◻연합회 회장인 BC가 운영하는 ◁◁ 등의 영수증이나 BC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표 21]과 같이 2014년에 비해 1.9~ 3.4배가량 높은 1일 1인당 81,349원~146,139원을 숙식비로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실시한 “국대 하계 국외전지훈련” 시 숙식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바이애슬론연맹은 [별표 9] “국가대표 튜멘 국외전지훈련과 관련한 숙식비 지급 현황”과 같이 사실과 다른 숙식비 영수증을 제출한 4차례의 국외전지훈련 과정에서 최대 198,000,000원가량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대한체육회는 “2017 국대 시즌 전지훈련”에 점검 목적으로 러시아 현지를

60) 21명이 15박을 하면서(연인원 315명) 숙식비로 13,343,7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1인당 1일 단위 요금으로 환산하면 42,361원(13,343,771원/315명)이 됨

방문(2017. 10. 27.~11. 3.)하여 선수단이 ▷▷ 호텔에서 숙식하는 것을 직접 보고 도 ◁◁ 영수증을 인정하는 등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바이애슬론연맹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와 정산 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⁶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K는 BC가 운영하는 업체 등에서 튜멘 전지훈련 숙식비가 과도하게 결제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숙식을 제공한 ▷▷ 호텔 지급액과의 차액이 존재한다면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러시아 현지 숙식 예약을 부탁받은 BC가 중간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고, 본인이나 바이애슬론연맹이 차액을 돌려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 호텔은 공공기관이 운영할 뿐 아니라 2014년에도 이용한 경험이 있던 시설(경기장 및 호텔)을 BC에게 의뢰하여 세부 견적 및 실제 소요비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BC가 요구하는 대로 결제한 점에 비추어볼 때 AK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대한크리켓협회의 경우

대한크리켓협회(이하 “크리켓협회”라 한다)는 [표 22]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⁶²⁾까지 국가대표 친외훈련비 1,324,199,000원(숙박비 687,955,000원, 급식비 636,244,000원)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로부터 교부받아 1,279,53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4,661,000원을 반납하였다.

61) 대한체육회는 2018년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감사일 현재 검토 중임

62) 크리켓협회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크리켓이 정식종목에서 제외되자 회원종목단체 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한체육회 준회원단체에서 제외되었고 2018년부터는 친외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표 22] 크리켓협회 촌외훈련비 교부집행 내역(2015~2017년)

(단위: 천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교부액 (A)	숙박비	230,835	202,320	254,800	회원종목단체 제외로 미지원	687,955
	급식비	201,980	192,204	242,060		636,244
	계	432,815	394,524	496,860		1,324,199
집행액 (B)	숙박비	221,155	200,489	243,035	"	664,679
	급식비	193,510	190,465	230,884		614,859
	계	414,665	390,954	473,919		1,279,538
반납액 (A-B)	숙박비	9,680	1,831	11,765	"	23,276
	급식비	8,470	1,739	11,176		21,385
	계	18,150	3,570	22,941		44,661

주: 촌외훈련비 교부집행 시 숙박비와 급식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숙박비 및 급식비는 1일 단가 비율로 나누어 표시하였으므로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음

자료: 크리켓협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크리켓협회는 2014. 12. 22. 인천광역시크리켓협회(이하 “인천협회”라 한다)와 ‘크리켓협회와 인천협회가 대한민국 크리켓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훈련시설, 숙박시설, 식당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인천협회는 2015. 4. 6. 위 협약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1층 일부 시설과 인천연희크리켓경기장 본부동을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국가대표 합숙시설, 협회 사무실⁶³⁾ 등으로 사용하며 대한체육회가 크리켓협회에 교부한 촌외훈련비 전액⁶⁴⁾을 지급받아 경기장 관리, 국가대표 숙박 및 급식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크리켓협회는 훈련비 정산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크리켓협회는 구체적 사용 내역없이 인천협회가 크리켓협회에 발급한

63) 크리켓협회는 인천협회가 임대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연희크리켓경기장 본부동에 인천협회와 같이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크리켓협회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한편 크리켓협회 산하에는 인천협회가 유일함에 따라 크리켓 국가대표 30명 중 29명이 인천협회 소속임

64) 2017년 일부 촌외훈련비(12,162,000원)를 크리켓협회에서 직접 집행함

계산서⁶⁵⁾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대한체육회 등에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촌외훈련비를 집행한 인천협회로부터 촌외훈련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협회는 국가대표 숙박비·급식비로 사용되어야 할 촌외훈련비 1,279,538,000원 중 1,267,376,000원⁶⁶⁾을 크리켓협회로부터 지급받아 [별표 10] “인천협회의 촌외훈련비 세부지출 내역”과 같이 크리켓협회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할 직원 BD의 급여 47,576,000원(2015년 4월~2016년 12월⁶⁷⁾)과 국제대회 출전수당 2,824,000원 등 계 50,400,000원을 교부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하였다. 또한 인천협회는 촌외훈련비로 집행하여야 할 43,886,000원⁶⁸⁾을 인천협회 행사·교육비 및 운동장 사용료 등 교부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의혹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천협회는 [별표 11] “크리켓협회의 촌외훈련비 교부·집행 내역”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크리켓협회에서 지급받은 촌외훈련비 1,267,376,000원 중 1,163,54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3,827,000원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하지 않은 채 2018년도에 집행⁶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크리켓협회가 용역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업무제휴협약서와 촌외훈련비를 교부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⁷⁰⁾ 인천협회 발급 계산서 등을 정산 증빙서류로 제출하

65) 인천협회는 크리켓협회에 매달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는 한 달치 계산서(남자숙박비, 남자급식비, 여자숙박비, 여자급식비) 4건을 발급함

66) 차액 12,162,000원은 크리켓협회가 인천선수촌 입촌에 따라 숙박비 등으로 직접 집행함

67) 2017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행정직원에게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이후 미집행함

68)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교육비 및 운동장 사용료로 집행한 총액은 44,546,800원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2018년도에 행사·교육비로 집행한 660,000원은 중복되므로 제외(2018년도 미반납 금액에 포함)한 금액임

69) 경기장 임대료 44,560,000원, 인건비 16,800,000원, 시설 관리비 21,092,000원 등으로 집행함

70) 크리켓협회는 협약에 따라 인천협회에 국가대표의 훈련업무 전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촌외훈련비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은 생략한 채 대한체육회에 업무제휴협약서와 계좌이체내역(크리켓협회

였는데도 크리켓협회와 촌외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촌외훈련비를 집행한 인천협회의 세부 집행증빙을 확인⁷¹⁾하지 아니한 채 크리켓협회가 제출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 등 3개 기관⁷²⁾은 감사결과의 사실관계 및 규정적용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촌외훈련비 부당 집행액은 환수하고 관련 협회나 연맹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①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촌외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② 외국인코치 및 귀화선수 선발 시 수당의 정확한 금액과 집행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③ 국외전지훈련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대한카바디협회 등 3개 회원종목단체⁷³⁾에 대한 촌외훈련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을 재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부당 집행

→인천협회), 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인천협회는 크리켓협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세부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갖추지 않음

71) 대한체육회는 2015년 및 2017년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대한 정산보고를 승인(2018년도분은 감사일 현재 승인하지 않고 있음)하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등에 대한 정산보고를 승인하였음

72) 문체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73) 대한카바디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크리켓협회

된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며

②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임원 AK와 직원 AF 등 3개 회원종목단체의 관련자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장으로 하여금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8조에 따라 위 관련자들을 3개 회원종목단체에 징계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대한체육회장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국가대표 지도자가 강화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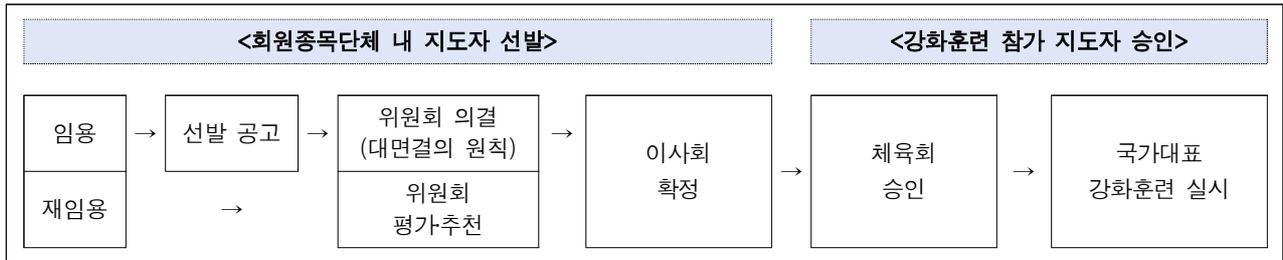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그림 10]과 같이 회원종목단체는 원칙적으로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절차에 따라 선발하되,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력향상위원회⁷⁴⁾(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이를 대한체육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8조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 등록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단체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을 포함,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대표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임

그리고 회원종목단체가 국가대표 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도 위원회의 평가와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0]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절차



자료: 「국가대표 선발규정」 내용 재구성

한편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⁷⁵⁾로 대신할 수 없고,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 중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추천한 국가대표 지도자의 강화훈련 참가를 승인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추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45개 회원종목단체⁷⁶⁾가 최근 3년(2016~2018년)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별표 12]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 위반 현황” 및 다음 [사례]와 같이 대

75)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라 일부 선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도자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76)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훈련만 실시하고 있어 제외함

한골프협회 등 13개 회원종목단체가 공개선발절차 또는 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였는데도 대한체육회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를 위반한 사례

1. 공개공고 절차 미이행

- (테니스) 대한테니스협회는 2016년까지 공개공고 및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BE가 임의로 국가대표 지도자 남자팀 감독 BF 및 여자팀 감독 BG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
- (탁구) 대한탁구협회는 2015. 2. 25. 2015년 국가대표 지도자(코치 4명)를 선발하면서 막연히 우수한 지도력을 갖춘 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남자팀 코치 BH, BI 및 여자팀 코치 BJ, BK 등 4명을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2015. 3. 1.~2016. 8. 31.)
- (골프) 대한골프협회는 2017. 11. 28. 2018년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면서 유능한 지도자를 선발한다는 사유로 공개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BL, BM 등 4명을 국가대표 지도자(코치 3명, 트레이너 1명)로 선발

2. 위원회 미개최

- (복싱) 대한복싱협회는 2018년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면서 2017년 국제대회 성적이 우수했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평가 및 추천 없이 이사회에서 BN 등 5명을 2017년 국가대표 지도자로 재임용
- (비치발리볼) 대한민구배구협회는 배구종목인 비치발리볼의 국가대표 감독을 선발하면서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2조의 내용과 달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BO 및 BP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발
- (테니스) 【문제점 1】 “공개공고 절차 미이행” 내용 참조

3. 위원회 대면회의 없이 서면결의

-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연맹은 국가대표 감독 1명을 선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위원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서면결의를 통해 AF를 감독으로 선발하도록 의결하였고, 이사회도 서면결의를 통해 국가대표 감독을 확정
- (역도) 대한역도연맹은 2017년도 대표팀 성과가 좋다는 사유로 지도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7. 12. 14. 2018년도 국가대표 감독 1명 및 코치 4명을 선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위원회 위원이 많다는 사유로 서면결의를 통해 2018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재임용을 의결하고, 이사회 확정을 통해 결정
- (스쿼시) 대한스쿼시연맹은 2017년 및 2018년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위원을 소집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서면결의를 통해 2017년에는 BQ 및 BR(2017. 2. 1.~12. 31.)을, 2018년에는 BR 및 BS(2018. 2. 1.~12. 31.), BT(2018. 10. 1.~11. 30.)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의결하고, 이사회 확정을 통해 결정

그 뿐만 아니라 다음 [사례]와 같이 대한민국배구협회 등 7개 회원종목단체가 경력 기준(감독 5년 이상, 코치 2년 이상)에 미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추천하였는데도 대한체육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국가대표 지도자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기준에 미달한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한 사례

○ (배구 등 7개 종목)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배구의 세부종목인 비치발리볼 감독에 지도자 경력이 3년(2년 미달)에 불과한 BO를 선발·추천하는 등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배구협회 등 7개 회원종목단체는 경력 기준(감독 5년 이상, 코치 2년 이상)에 미달한 7명의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및 코치)를 선발·추천

연번	종목	이름	구분	경력 기준 (A)	경력 (B)	미흡 기간 (A-B)	비고
1	배구(비치발리볼)	BO	감독	5년 이상	3년	2년	등록 선수가 아닌 일반인 지도 ¹⁾
2	바이애슬론	AF	감독	5년 이상	없음	5년	지도경력 미달 ²⁾
3	근대5종	BU	코치(2018년)	2년 이상	없음	2년	-
4	핸드볼	BV	코치(2016년)	2년 이상	없음	2년	-
5	빙상	F	코치 (2016, 2017년)	2년 이상	2개월	1년 10개월	지도경력 미달 ³⁾
6	루지	BW	코치 (2015, 2016, 2017년)	2년 이상	3개월	1년 9개월	최초 선발('15년 8월) 시 지도경력 미달
7	체조	BX	코치 (2017, 2018년)	2년 이상	1년	1년	-

주: 1.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비치발리볼 BO 감독이 2006~2008년 경기도 안산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배구강사로 활동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등록된 배구선수가 아닌 일반 초등학생을 지도한 경력은 인정 불가
 2. 바이애슬론연맹은 AF 감독이 하계선수권대회(슬로바키아), 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스올림픽대회 등에 경기임원(코치 등 지도자)으로 참가하여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선수 지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
 3. 대한빙상경기연맹은 J 선수에 대한 개인지도 경력을 인정하여 F를 국가대표 코치로 선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개인지도 경력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선수 지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경력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앞으로 회원종목단체에서 공개공고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 등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추천하는 일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지도자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리 분야

실 태

가.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처리 전담기구 운영 현황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비리신고를 조사·처리하기 위해 [표 23]과 같이 비리신고 접수 및 처리 전담조직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23] 기관별 비리신고 전담 조직 설치 현황

운영주체	명칭	설치 현황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2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로 개소 201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운영 위탁(센터장: 체육정책과장)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개소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및 결과 처분요구(수사의뢰 등)
	스포츠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7월 선수고충처리센터로 개소 폭력·성폭력 민원 전담(인권상담사 4명)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권익보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 6월 개소 장애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민원 전담(인권상담사 2명)

자료: 문체부 등 제출자료 재구성

1)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현황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2014년 2월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관련 비리의 조사·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문체부 소속으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직접 운영(문체부 감사실 직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인력으로 구성)하였다.

그 후 2015년 6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을 제정하면서 명칭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하였으나, 센터장은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이 계속 겸직하는 형태로 2019년 5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위 신고센터 내에 검찰청 수사관 1명, 경찰청 6명, 예금보험공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을 설치·운영하기도 하였다.

2)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현황

대한체육회는 (성)폭력 등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체육인 대상 스포츠인권교육 등을 위해 2005년 7월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스포츠인권익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6년 3월에 “스포츠인권센터”로 명칭을 재차 변경하여 2019년 5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⁷⁷⁾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여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2017. 1. 25.부터 클린스포츠센터를 설치⁷⁸⁾하여 운영하고 있다.

클린스포츠센터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현재 센터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을 제외한 11명은 클린스포츠센터 신고사건 접수·조사(3명),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사건 접수·조사(5명), 행정지원(3명)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77) 2019년 5월 현재 클린스포츠센터 소속 기구로 운영 중임

78) 사무총장 직속 기구로 운영 중임

3)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권익보호팀) 운영 현황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활동 운영계획」(2013년 4월)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장애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체계적 상담을 진행하고 조사·처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2013년 6월 “권익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다가, 2018년 4월에는 “체육인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체육인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현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체육인 (성)폭력 사건 조사(3명), 행정지원(2명)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나.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처리 절차 및 실적

1)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절차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는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대한체육회 내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는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장애인체육회 내규), 「감사규정」에 따라 각각 스포츠 비리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

가) 비리 신고사항 접수 경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공통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 및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스포츠 비리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표 24]와 같이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클린스포츠센터는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내 메뉴⁷⁹⁾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반면 스포츠인권센터와 체육인지원센터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⁸⁰⁾하여 실명만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표 24] 기관별 비리신고센터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익명 신고 가능 여부

구분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자체 홈페이지 구축 여부	×	×	○	○
익명 신고 가능 여부	○	○	×	×

자료: 문체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나) 비리 신고사항 처리 절차

4개 신고센터는 공통적으로 스포츠 관련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확인 및 진술 요청 등을 통해 신고사항을 조사한 후 산하 체육단체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형법」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사항에 대해 산하 체육단체가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단체에 신고사항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등으로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한 이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79)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문체부 홈페이지-민원마당-신고센터-스포츠비리신고” 메뉴, 클린스포츠센터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공정체육-클린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고 접수함

80)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는 “sports-in.sports.or.kr”, 체육인지원센터 홈페이지는 “sports.koreanpc.kr”

[그림 11] 비리 신고사항 처리 절차

신고센터 구분	조사 주체	조사결과 처리	이행관리	수사의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원칙) 문체부	체육단체에 징계 등 조치요구	이첩·조치 기관에 결과통보 요청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의뢰 가능
	(예외)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 산하 체육단체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 센터 및 스포츠 인권센터	일반 사항	(원칙) 대한체육회	체육단체에 징계 등 조치요구	
		(예외) 산하 회원종목단체 등 * 산하 체육단체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	
	선수권익 침해사항	(원칙) 산하 회원종목단체 등	징계처분	
		(예외) 대한체육회 * 사안이 중대·긴급한 경우	체육단체에 징계 등 조치요구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원칙) 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에 징계 등 조치요구	산하 체육단체로 부터 징계 결과를 보고 받음	
	(예외) 산하 가맹단체 등 * 산하 체육단체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		

자료: 문체부 등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9조에 따라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권익침해 사안은 산하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⁸¹⁾하도록 하고 있고, 권익침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실적

가)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표 25]와 같이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총 810건의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였는데, 이 중 횡령·배임 등이

81) 국가대표 선수 등이 회원종목단체의 대표로서 훈련 또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한 사안의 경우 회원종목단체로 이첩하고, 기타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로 이첩함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사안은 33건을 접수하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부터는 접수실적(2017년 75건, 2018년 55건)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5]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접수실적(2014~2018년)

(단위: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승부조작(편파판정)	32	22	25	8	2	89
(성)폭력	15	6	6	3	3	33
입시비리	5	9	4	4	1	23
조직 사유화	114	47	77	11	2	251
기타(횡령·배임 등)	108	113	97	49	47	414
합계	274	197	209	75	55	81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접수된 810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표 26]과 같이 156건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 512건은 무혐의로 자체종결하였으며, 27건은 수사의뢰하였고, 115건은 체육단체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조사주체별로는 545건은 문체부가 직접조사 및 조치요구 등을 하였고, 나머지 265건은 대한체육회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26]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처리실적

(단위: 건)

구분		승부조작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기타 (횡령·배임 등)	합계	
처리 결과	조사 중	13	3	8	37	95	156	
	종결	자체종결(무혐의)	50	20	14	181	247	512
		수사의뢰	2	0	1	2	22	27
		징계 등 조치요구	24	10	0	31	50	115
		합계	89	33	23	251	414	810
조사 주체	직접	59	21	14	185	266	545	
	이첩	30	12	9	66	148	265	
	합계	89	33	23	251	414	81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표 27]과 같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총 304건⁸²⁾의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였는데, 비리 유형별로는 횡령·배임 등이 2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141건, 2018년 163건을 접수하였다.

[표 27]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접수실적(2017~2018년)

(단위: 건)

연도	승부조작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기타 (횡령·배임 등)	합계
'17년	16	11	0	7	107	141
'18년	6	17	0	0	140	163
합계	22	28	0	7	247	304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접수된 304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이 72건은 2019년 5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181건은 무혐의로 자체종결, 51건은 회원 종목단체 등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⁸³⁾하였다.

조사주체별로는 185건은 대한체육회가 직접조사 및 조치요구 등을 하였고, 나머지 119건은 회원종목단체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28]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처리실적

(단위: 건)

구분		승부조작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기타 (횡령·배임 등)	합계	
처리 결과	조사 중	2	9	0	3	58	72	
	종결	자체종결(무혐의)	10	12	0	3	156	181
		수사의뢰	0	0	0	0	0	0
		징계 등 조치요구	10	7	0	1	33	51
	합계	22	28	0	7	247	304	
조사 주체	직접	12	10	0	6	157	185	
	이첩	10	18	0	1	90	119	
	합계	22	28	0	7	247	304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82)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아 처리한 86건은 제외함

83) 클린스포츠센터가 접수·처리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없음

한편 스포츠인권센터의 경우 [표 29]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폭력 27건, 폭력 86건 등 계 113건의 권익침해 사항을 접수하였고, 연도별로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33건과 34건을 접수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 각각 13건과 12건을 접수하는 등 접수실적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건을 접수하여 다시 증가하였다.

[표 29]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접수실적(2014~2018년)

(단위: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성폭력	9	8	2	2	6	27
폭력	24	26	11	10	15	86
합계	33	34	13	12	21	113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접수된 113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표 30]과 같이 6건은 2019년 5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22건은 무혐의로 자체종결, 85건은 회원종목단체 등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⁸⁴⁾하였다.

조사주체별로는 7건은 대한체육회가 직접조사 및 조치요구 등을 하였고, 나머지 106건은 회원종목단체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30]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처리실적

(단위: 건)

처리결과			조사주체	
조사 중	자체종결(무혐의)	징계 등 조치요구	직접	이첩
6	22	85	7	106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다)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는 [표 31]과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5건의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였는데, 이 중 (성)폭력은 8건,

84) 스포츠인권센터가 접수·처리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없음

편파판정·횡령 등 기타는 7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가장 많은 7건의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였다.

[표 31]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접수실적(2014~2018년)

(단위: 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성)폭력	0	1	2	3	2	8
기타(편파판정·횡령 등)	2	0	0	4	1	7
합계	2	1	2	7	3	15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접수된 15건에 대한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이 1건은 수사의뢰하였고, 14건은 가맹단체 등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조사주체별로는 6건은 장애인체육회가 직접조사 및 조치요구 등을 하였고, 나머지 9건은 가맹단체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32]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처리실적

(단위: 건)

처리결과		조사주체	
수사의뢰	징계 등 조치요구 ^{주)}	직접	이첩
1	14	6	9

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14건 전부 징계처분이 완료되었음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다. 스포츠 비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양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등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단체별로 운용하고 있는 징계제도에 따라 소속 지도자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1)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징계제도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각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안건을 심의·의결⁸⁵⁾하고 있고, 대한체육회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의결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⁸⁶⁾하는 등 2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징계종류는 [표 33]과 같이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와 경징계(견책, 감봉)로 구분되는데, 지도자·선수 등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징계종류가 달리 적용되고, 지도자·선수 등 개인뿐 아니라 체육 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도 징계(출전정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표 33] 대한체육회 등의 징계종류 및 신분별 적용 여부

구분	중징계					경징계	
	제명	해임	강등	자격정지	출전정지	감봉 ^{주)}	견책
지도자	○	○	×	○	○	○	○
선수	○	×	×	○	○	×	○
심판	○	○	○	○	○	○	○
임원	○	○	×	○	×	○	○
운동부	×	×	×	×	○	×	×

주: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심판·임원으로 한정하여 적용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85)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2016년 3월 통합 대한체육회 설립 이전까지 비위행위 종류에 따라 (성)폭력 등 선수 권익침해에 대한 사항은 선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상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던 징계기구를 2016년 3월 통합 대한체육회를 설립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일원화함

86) 시·도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2)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징계제도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각 단체에 법제·상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고 있고,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초 징계를 의결한 체육단체가 재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장애인체육회가 최종적으로 결정⁸⁷⁾하는 등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징계종류는 [표 34]와 같이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와 경징계(견책)로 구분되고, 지도자·선수 등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징계종류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표 34] 장애인체육회 등의 징계종류 및 신분별 적용 여부

구분	중징계						경징계
	제명	해임	강등	자격정지	출전정지	감봉	견책
지도자	○	○	×	○	○	○	○
선수	○	×	×	○	○	×	○
심판	○	×	○	○	○	×	○
임원	○	○	×	○	○ ^{주)}	×	○

주: 임원은 직무 정지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87) 시·도가맹단체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가 징계 후 재심·의결한 징계사항은 (중앙)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문 제 점

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부적정

문체부는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약⁸⁸⁾ 관련 비위를 직접 관리할 목적으로 2014. 1. 22.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2. 3.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⁸⁹⁾(2015. 6. 12.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 변경)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위 계획에 따르면 제보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문체부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요구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조치결과를 취합하는 등 이행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상적 사안인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이첩하여 조사·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 6. 12. 제정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체육단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아닌 체육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을 이첩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첩받은 체육단체는 그 처

88)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89) 문체부는 2014. 2. 3.부터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에서 징계요구, 수사의뢰 및 이행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5. 15.부터는 “스포츠4대약 합동수사반 운영계획”에 따라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며, 2015. 6. 12.부터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 제정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수사의뢰, 이첩, 종결 등으로 신고사항을 처리함

리결과를 신고인과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회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스포츠 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히 직접조사 또는 이첩조사로 분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 등 처리결과를 회보받아 적정 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기적으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비리신고 내용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부실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표 35]와 같이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한 810건의 신고사항을 대상으로 조사·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35]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비리유형별 접수 현황(2014~2018년)

					(단위: 건)
(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횡령/배임 /금품수수 등	계
33	89	23	251	414	810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 조사 미실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2016. 3. 3. “대한태권도협회 임원 BY가 위 협회 임원 및 직원과 공모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신문광고 등을 명목으로 허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 지출하는 등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조사하지 않는 등 2건⁹⁰⁾의 비리 신고사항을 직접 또는 이첩조사 없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

또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전국씨름연합회 직원 BZ가 시·도연합회가 자신

90) [별표 13]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미실시 내역” 연번 1, 2

의 지시에 불응하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부터 시·도연합회 사무국장들을 교육시켜 보조금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전국대회 참가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신고내용을 2016. 5. 23. 대한체육회에 이첩하였는데, 대한체육회가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등 체육단체에 이첩한 8건⁹¹⁾의 비리 신고사항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신고사항 이첩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별표 13]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미실시 내역”과 같이 2014. 7. 16.부터 2017. 9. 25. 사이에 접수한 10건의 비리 신고사항이 짧게는 1년 7개월에서 길게는 4년 9개월이 지난 2019년 5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었다.

2)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2014. 4. 21. “대한택견연맹 및 전국택견연합회 임원 CA가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을 협박하여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직원 임금 및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위 신고사항을 조사한 경찰청으로부터 2014. 11. 1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력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순회코치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경남택견연맹 전무이사 등 11명의 통장⁹²⁾에 입금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382백만 원) 혐의가 확인되어 CA 등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택견연맹에 CA⁹³⁾ 등에 대해 징계요구

91) [별표 13]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미실시 내역” 연번 3~10

92) CA가 11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해당 통장의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도 함께 관리함

93) 임원 CA는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음

를 하지 않고 위 신고사항을 종결처리하는 등 [별표 14]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한 내역”과 같이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2014. 4. 21. 부터 2016. 9. 25. 사이에 접수한 계 7건의 비리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등으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하였다.

3) 체육단체에 징계요구한 후 방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2018. 1. 19.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 CB가 2017년 12월경 총회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재무이사로 앉히고, 사무처장의 출근을 막는 등 갑질을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위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대한파크골프협회 인사위원회에서 2018. 2. 7. 파면의결된 직원 CC에 대하여 임원 CB가 파면이 아닌 사직처리하도록 대한파크골프협회 직원 CD 등에게 지시하였고, CC에게 7,377,398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CB 등을 징계하도록 2018. 7. 4.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경유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대한파크골프협회는 CB에 대한 징계안건은 상정하지 않은 채, CD 등에 대한 징계조치 결과만 2018. 12. 24.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회보하였다.

그런데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파크골프협회에 CB에 대한 징계요구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별표 15] “체육단체에 징계요구한 후 방치한 내역”과 같이 2016. 1. 29.부터 2018. 11. 1. 사이에 체육단체에 통보한 계 10건의 징계요구사항이 최장 3년이 지나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데도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체부는 ① [별표 13] 관련 비리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10건에 대해 2018년부터는 현장점검·독촉 공문 시행 등으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위 공문은 단순히 “미결사항이 많으니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미결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시행하였고, 공문 시행 후에도 미결사항 처리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② 또한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항인데도 수사의뢰만 하고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별표 14] 관련 7건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사법처리와 별개로 우선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징계를 요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 제21조가 제정(2016. 3. 21.)된 이후에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례⁹⁴⁾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책임은 징계사유가 있는 이상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죄 인정 여부를 떠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그리고 [별표 15] 관련 징계요구만 하고 방치한 10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징계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징계요구한 후 공문으로 독촉하여 결과를 회신받은 사례⁹⁵⁾도 있는 등 강제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등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94) [별표 14]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한 내역” 연번 7

95) 접수번호 550: 2016년 8월 징계요구, 2017년 3월 징계처분결과 제출 독촉, 2017년 5월 징계 후, 결과 회보함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미처리 신고사항 10건 및 범죄 혐의가 확인된 7건을 조속히 조사·처리하는 한편,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10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이 방치·부실 처리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회원종목단체 임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이첩조사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클린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부정·불공정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르면 클린스포츠센터에 접수된 비리신고 사항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산하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등에 신고내용을 이첩할 수 있다.

한편 피신고인이 해당 체육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 등의 지위에 있는 때에는 피신고인 소속단체에서 신고내용을 공정하게 조사·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원 관련 사항 등 체육단체의 공정한 조사·처리를 기대하기 어려

은 경우에는 비위 신고내용을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체육단체의 상급기관에서 조사·처리하는 등 이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대한체육회는 2017. 3. 13. “대한◇◇경기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CE가 대한체육회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장 자격요건(1급 심판원)을 갖추지 못한 채 한국◇◇선수권대회 1차전(2017. 3. 6.~3. 12.) 심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정팀에 유리하도록 편파판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⁹⁶⁾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3. 29.에는 “위 사람의 심판위원회 위원장 자격⁹⁷⁾ 및 심판장 자격에 대한 확인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2017. 3. 21.과 같은 해 3. 31. 피신고인이 심판위원회 위원장 겸 「심판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공정한 조사·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한◇◇경기연맹에 위 신고내용을 조사·처리하도록 이첩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경기연맹은 피신고인 CE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 1급 심판원 자격이 없는데도 “1급 심판원이 심판장 및 부심판장을 할 수 있고, 1급 심판원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2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하고 40경기 이상의 시간계측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는 사실 등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 3. 24. “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연맹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를 통과하였

96) 신고인은 심판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는 피신고인이 2017년 1월부터 각종 국내대회에서 심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함

97) 신고인은 「심판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연맹이사를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CE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연맹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고, 「심판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원 자격부여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한◇◇경기연맹에 있으므로 피신고인의 자격은 문제없다”고 내부검토를 한 후 같은 해 4. 4. “피신고인의 심판위원회 위원장 및 심판장 자격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부당하게 종결처리⁹⁸⁾하는 등 향후에도 임원 등의 지위에 있는 피신고인의 소속단체로 이첩한 부당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공정하게 조사·처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에 공감하면서도 당시 신고인이 “연맹의 답변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 그 의견에 따라 이첩하였다고 주장하나 심판장 자격의 적격 여부 등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처리 방향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체육단체의 임원 관련 사항 등을 이첩한 경우 공정한 조사·처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한 조사·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한체육회 또는 해당 체육단체의 상급단체에서 조사·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회원종목단체 등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98) 2018. 3. 1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VY 의원이 CE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1월 1급 심판원 승급심사 시 본인이 응시자인 동시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였고 이전부터 1급 심판원 자격이 없는 채로 심판장으로 활동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이에 따라 문체부 등은 대한◇◇경기연맹 특정감사(2018. 7. 9.~7. 11.)를 실시하여 CE 심판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을 심판장으로 배정하는 등 심판 배정상 불공정 행위(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 대회운영 직권남용” 등의 비위를 확인한 후 2018. 10. 5.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대한체육회는 2018. 10. 10. 대한◇◇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2019. 3. 11. CE는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43조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로 하여금 위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징계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재심 권한이 없는 체육단체가 임의로 재심의 · 감경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43조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해당 단체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이 다를 때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해당 체육단체가 스스로 재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게이트볼협회 임원 CF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협회 운영비에서 매월 600,000원에서 1,000,000원씩 총 49,600,000원을 현금 수령 후 부적정하게 집행⁹⁹⁾한 데 대하여

2017년 9월 임원 직위가 상실되는 1년 자격정지 처분¹⁰⁰⁾을 하였다가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에 따라 같은 해 10월 재심의를 통해 6개월 자격정지로 감경 처분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족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년 전국생활대축전 족구 ○●부 경기에서 경상북도가 부정선수 출전으로 몰수패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족구협회 ○●부 감독 CG에게 2018년 6월 3년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가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같은 해 7월 재심의를 통해 1년 자격정지로 감경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대한민국족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과 달리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자체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도, 서울특별시체육회¹⁰¹⁾와 대한민국족구협회¹⁰²⁾로 하여금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2) 징계 처분요구 등에 대한 조치 미이행

99) 서울북부지법은 2018. 12. 21. CF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2019. 6. 14.) 및 3심(2019. 9. 9.)에서는 CF가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결제하고 현금 수령 후 사용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등의 회계처리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적 사용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함

100)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대한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고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음

101) 대한체육회는 감사원 자료수집이 시작(2019. 2. 18.)된 이후인 2019. 2. 26.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제·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9. 5. 31.까지 자체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음

102) 대한민국족구협회는 대한민국족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의를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제·개정하겠다고 2019. 3. 4. 대한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표준(안) 승인요청” 문서를 시행하였으나 2019. 5. 31.까지 자체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음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결과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은 이에 대해 조치한 후 조치결과를 대한체육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대한체육회장은 감사대상 단체의 조치결과가 당초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이 규정 징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조치한 경우에는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체육단체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재심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2016년 10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부터 경상남도북성협회 임원 CH가 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장(링)의 임대수익, 체육단체가 낸 발전기금 및 협회 운영자금 등 84,970,450원¹⁰³⁾을 위 협회 임원 CI가 협회에 기부(출연)한 것처럼 변칙회계처리¹⁰⁴⁾하고, ② 2014년 8월

103)

(단위: 원)

연도	변칙회계처리 금액	변칙회계처리 재원
2012년	22,500,000	링 임대수익, 남해군체육회 및 남해군북성협회가 기부한 발전기금
2013년	20,807,000	링 임대수익, 경상남도북성협회 운영비
2014년	20,663,450	링 임대수익, 경상남도북성협회 운영비
2015년	21,000,000	링 임대수익, 경상남도북성협회 운영비
합계	84,970,450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04) CI는 2012년 경상남도북성협회 임원으로 선출되면서 매년 2,000만 원씩 협회에 출연하기로 공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역 북성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위와 같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변칙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경 ◇◇◇ 고등학교 기간제 지도교사로 재직하면서 복싱부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해 10. 18. 경상남도체육회에 CH를 중징계하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6. 11. 7. CH에 대하여 중징계가 아닌 견책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2016. 12. 13. 경상남도체육회에 CH에 대한 견책처분이 징계기준에 위배되고 부당하므로 대한체육회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시 징계하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체육회는 2019. 3. 8.까지 CH에 대한 징계 재심의 등을 하지 않았고, 대한체육회도 CH와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재심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2016년 10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협회장 당선자 CJ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위 협회 심판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기 보조금 16,159,750원을 인출한 후 부당 사용한 혐의로 2015년 2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 형을 받았는데도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아 2016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CJ를 중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CJ를 징계하지 않은 채 불문 처리하였고, 대한체육회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CJ에 대한 재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CH는 변칙회계처리·선수폭행 등 최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고도 견책 처분만 받은 채 2019. 5. 31.까지 경상남도복싱협회 임원으로 있고 CJ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1)항”과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처분한 사항을 자체 재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체육단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항”과 관련하여서는 2019. 6. 20. 경상남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CH와 CJ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재심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 ① 「감사규정」 제20조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체육회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에게 CH와 CJ에 대한 재정계요구를 하거나 직권으로 재심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 및 제43조의 내용과 달리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서 징계처분한 사항에 대해 권한 없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과 다른데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라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업무 수행 부적정
----------	-------------------------------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정관」(2016. 3. 7. 시행) 제11조에 따라 대한수영 연맹을 관리단체¹⁰⁵⁾로 지정하고, 「관리단체운영규정」(2016. 3. 21. 시행) 제4조¹⁰⁶⁾

105)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등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함

에 따라 관리위원회(대한체육회 5명, 외부 3명)를 구성하여 대한수영연맹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2017. 4. 11.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통합과정¹⁰⁷⁾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 구제방안 지침”(공정체육부-957, 이하 “위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해 6. 13. 전 대한수영연맹 임원 CK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대해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8. 25. 개최된 제24회 관리위원회에서 CK를 사면·복권하는 것으로 처리¹⁰⁸⁾하였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위 지침에 따르면 통합과정¹⁰⁹⁾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모든 사안이 구제대상에 포함되나, 4대 주요 징계사유¹¹⁰⁾는 당초 징계양정이 ‘가혹’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당초 징계처분 경위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육회 통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면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4대 주요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초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계양정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106)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체육회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07) 2016년 3월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말함

108)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 CL(퇴직), 직원 CM, 직원 VJ, 직원 CN이 참석, 직원 VK는 불참함

109) 통합 관련 합의문 서명일인 2014. 11. 6.부터 2016. 12. 31. 사이에 징계가 의결·확정된 사안에 대해 서만 구제 대상에 포함됨

110) 1.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편파판정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한편, 위 지침에 따라 2017. 6. 13.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CK는 “제62회 회장배 겸 KBS배 전국수영대회”(2013년 9월 개최)에서 싱크로 부문 심판위원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선수에 대한 유리한 채점을 청탁하는 쪽지를 준 사실이 2015년 7월 문체부 조사과정(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에서 적발되어 2015. 10. 3.부터 2016. 4. 6.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징계(1심: 대한수영연맹) 및 이의신청(2심: 대한수영연맹, 3심: 대한체육회) 과정에서 자격정지 1년(최초 3년)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CK는 “6번 선수 점수 부탁”이라고 쪽지에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2015. 5. 13. 문체부와의 문답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면서도 2017년 6월 제출한 구제신청서에는 우수선수를 추천하는 취지로 “6번 선수”라고 쓴 쪽지를 전달하였을 뿐 채점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채점 청탁 때문이 아니라 2015. 6. 19.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찬성해 달라”는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의 부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근거 없는¹¹¹⁾ 주장을 하였다.

또한 당초 3년에서 1년 자격정지로 감경된 징계양정은 2016년 4월 개최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토의 내용 등에 따르면 가혹한 수준¹¹²⁾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대한체육회 직원 VJ, CM, CN 등은 채점 청탁 쪽지의 존재 사실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문체부의 기준

111) CK의 비위행위는 경쟁클럽 운영자가 신고하였는데, 문답조사는 통합 반대 이전인 2015. 5. 13. 이루어지는 등 통합 반대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2016년 4월까지의 당초 징계절차에서는 경쟁수영클럽을 운영하던 심판위원장이 개인적 앙심을 품고 음해성 제보를 하였다는 주장만을 제기함

112) 행위시점 이후이기는 하나 2016년 4월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승부조작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에 해당하고, 2018년 10월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에 해당함

조사결과와 3차례에 걸친 대한수영연맹 및 대한체육회의 징계 및 이의신청 결과를 합리적 사유 없이 부인하고, CK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설령 구제신청자의 주장대로 체육회 통합에 반대해 문체부로부터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은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위 지침에 따르면 징계양정 감경만 가능한 CK를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2017. 8. 25. 사면·복권하였다.

그 결과 대한체육회 「정관」(2017. 6. 8. 시행) 제30조에 따른 영구 임원결격사유(승부조작 관련 1년 이상 자격정지)가 없어진 CK는 2018. 7. 9. 대한체육회 임원으로 선임¹¹³⁾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대한체육회는 CK의 행위가 통합 반대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징계 목적이 당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K에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지침에 따르면 감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사면·복권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회원종목단체 관리위원회가 대한체육회 지침 등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113) 2019. 2. 20.경부터 위 사면·복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2. 28. 자진 사임함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마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등 부적정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활동 운영계획”(2013년 4월)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2013년 6월 권익보호센터(현 체육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선수·지도자와 관련된 (성)폭력 비위 등을 조사하고 있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과 함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강제추행 신고사건 조사·처리 불철저

장애인체육회의 구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2016. 6. 8. 시행) 제22조와 제22조의3(현행 같은 규정 제23조와 제23조의3 참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 등 비위신고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직접 조사한 후 법제·상벌위원회 의결로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가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체계적 상담, 조사·처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전문상담 인력 등¹¹⁴⁾으로 구성된 체육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가맹단체는 비위신고 사건을 조사·처리할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보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는

114) 체육인지원센터 조사인력은 2013년 3명(전문상담사 2명, 직원 1명), 2016년 4명(전문상담사 2명, 직원 2명), 2019년 5명(전문상담사 3명, 직원 2명)으로 늘어나고 있음

등 비위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에는 구체적 수위를 정하여 징계요구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¹¹⁵⁾하고, 이를 직접 조사하고도 전문인력이 없는 가맹단체에서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하여 처리하게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는 2017. 6. 8.과 6. 9.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들이 촌외 합숙 훈련장소(훈련기간: 2017. 5. 15.~6. 14., 충주조정경기장)에서 코치 CO로부터 언어폭력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복수¹¹⁶⁾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해 6. 13.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선수 3명 및 트레이너로부터 [표 36]과 같이 “비위혐의자가 반복적으로 미성년 선수들¹¹⁷⁾에게 ‘정신나간 x’ 등 언어폭력을 하고, 엉덩이를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 진술·기록¹¹⁸⁾을 확보하였다.

[표 36] 강제추행 조사결과보고서 요약(장애인체육회)

구분		조사 내용 및 결과
조사 내용	CQ 선수	· 발과 손으로 엉덩이를 누르는 등 수일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 ▷ 일자횟수: 5. 16. 1회, 5. 18. 1회, 5. 29. 2회 · ‘정신나간 x’, ‘싸가지 없는 xx’ 등 수차례 언어폭력
	CR 선수	· 한 손으로 엉덩이 양쪽을 잡는 등 수일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 ▷ 일자횟수: 2일간 3회(날짜 모름) · ‘정신나간 x’ 등 수차례 언어폭력
	CP 선수	· ‘이 xx야’, ‘싸가지 없는 xx’ 등 수차례 언어폭력
	CS 트레이너	· 선수들에게 ‘정신나간 x’ 등 언어폭력을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는 것을 수차례 직접 목격
조사 결과		· 비위혐의자가 언어폭력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인정하지 않아 추가 조사 필요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15)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결정으로 통보한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음

116) CP 선수의 보호자, CQ 선수, CR 선수의 보호자 등 3건임

117) 2017년 강제추행 당시 CQ 선수는 만 18세, CR 선수는 만 17세로 미성년자였음

118) 장애인체육회 조사결과보고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상담사가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실 직원 및 감사실장이 결재)에 따르면 CQ 선수는 휴대폰에 기록해 놓은 자료를 갖고 조사에 임했으며 해당 자료를 상담사가 확인함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이와 같이 복수의 피해자는 물론 동료 지도자로부터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단지 가해자가 부인한다는 사유로 2017. 6. 22. (성)폭력 등을 조사할 전문상담사나 감사부서 등이 없는 대한장애인조정연맹에 강제추행 여부를 추가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대한장애인조정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비위혐의자와 감독만 면담하는 등 부실하게 조사한 후 2017. 7. 20. 위 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상정¹¹⁹⁾하였고, 이와 같이 부실하게 조사된 결과에 따라 비위혐의자는 같은 해 7. 24. 위 연맹 이사회 의결로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되어,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을 경우(제명)에 비해 경미한 ‘지도자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받게 되었다.

참고로 강제추행 혐의가 이와 같이 부실하게 조사·처리되자 피해선수들은 2017년 8월 중순경 비위혐의자를 직접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1심)은 2018. 9. 13.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비위혐의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¹²⁰⁾하였다.

2)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 불합리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 제6항 및 「경기인 등록 규정」 제17조 등에 따라 비위행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선수·지도자·심판 등 체육회 내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체육회는 「선

119) 대한장애인조정연맹은 비위혐의자와 감독에 대한 면담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지 않고 2017. 7. 20. 법제·상벌위원회 개최 시 비위혐의자가 언어폭력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두 보고하고 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함

120) 그 후 2019.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임

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수·지도자·심판 등 체육회 내 모든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등 인권유린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인정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기간 중 체육계 내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장애인체육회는 1년 미만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선수 등에게 강제추행 및 언어폭력 등 비위행위를 하고도 지도자 자격 6개월(2017. 7. 24.~2018. 1. 23.) 정지 처분만 받은 CO는 선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대회기간: 2017. 9. 15.~9. 19.)에 강제추행 피해선수와 같은 팀 소속으로 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선수가 대회기간 중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2차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장애인체육회는 재판진행 경과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재판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가맹단체와 협력하도록 하겠으며, 인권 침해가 중대한 사건이 신속·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선수·지도자 등의 등록제한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9. 6. 19. (성)폭력 사건

은 1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모든 활동이 제한되도록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인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마치고도 (성)폭력 조사·처리 전문인력이 없는 체육단체에 (성)폭력 신고사항을 이첩함으로써 (성)폭력 신고사항이 부실하게 조사·처리되는 일 등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바

경기인 등록 및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경기인 등록 규정」¹²¹⁾ 및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¹²²⁾에 따라 각각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로 하여금 지도자와 선수 등에 대한 등록업무¹²³⁾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가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선수 등록관리시스템¹²⁴⁾과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¹²⁵⁾을 각각 구축·운영하고 있다.

121)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는 2013. 12. 16.까지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선수 등록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12. 17.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을 제정하여 2016. 3. 20.까지 지도자 및 선수 등록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3. 21.부터 2019. 1. 30.까지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2019. 1. 31.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는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 등 경기인 등록업무를 수행함

122)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가맹단체는 2016. 8. 1.까지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선수에 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8. 2.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을 제정하여 2019년 5월 현재까지 지도자 등 경기인 등록업무를 수행함

123) 등록된 지도자·선수만이 대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 가능함

124)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임

125)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임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지도자 등 경기인 등록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구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2013. 12. 17. 시행)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기단체 상벌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불가능¹²⁶⁾한 자에 대해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가, 등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2016. 6. 16. 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¹²⁷⁾에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였고, 징계사유가 (성)폭력 등 중요 비위행위¹²⁸⁾인 경우 지도자 등록을 영구히 제한하였다.¹²⁹⁾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2016. 8. 2.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을 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등¹³⁰⁾에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도자 등록을 제한¹³¹⁾하였고, 징계사유가 (성)폭력 등 중요 비위행위¹³²⁾인 경우 지도자 등록을 영구히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선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규정을 마련

126) 2013. 12. 17. 시행된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에는 등록금지·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4. 7. 15. “등록금지” 용어를 “자격정지”로 변경함

127)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128)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

129) 대한체육회는 2019. 1. 31.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정지 기간에만 지도자 등록을 제한(중요 비위행위의 경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유지)하는 한편, 2019년 1월 이전까지 선수 등록제한 제도를 운용하지 않다가 2019. 1. 31. 「경기인 등록 규정」을 마련하면서 같은 규정 제17조에 제명 또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는 전문선수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130)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131) 장애인체육회는 2016년 8월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선수에 대한 등록제한 제도를 운용하지 않음

132)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

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는 징계를 받아 등록이 제한된 자가 지도자 또는 선수로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¹³³⁾에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284명과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등¹³⁴⁾에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43명을 대상으로 등록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2017. 8. 21.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아 지도자 등록이 영구히 제한된 CT¹³⁵⁾를 2019. 1. 21. ♡♡초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등록해주는 등 [별표 16]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부당 등록 명세”와 같이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축구협회 등 10개 단체는 징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도자 18명을 부당하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경우 2015. 10. 13.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서 성추행으로 제명되어 지도자·선수 등록이 영구히 제한된 CU를 2016. 3. 21. 및 2017. 4. 17. ♠♠시 장애인복지관 소속 육상 선수로 등록시켜주는 등 [별표 17]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선수 부당 등록 명세”와 같이 장애인체육회 산하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등 6개 단체는 징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도자·선수 5명을 부당하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2014년 1월 이후부터 2019년 5월 현

13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각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134)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각 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135) [별표 16]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부당등록 명세” 연번 1

재까지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가 등록심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위 비위행위자 23명은 실질적 제재 없이 지도자 또는 선수로 등록한 후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등 비위지도자 등의 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였다.

2)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부적정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는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 및 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2조 등에 따라 매년 양 체육회가 운영하는 등록관리시스템에 지도자·선수를 등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등록실적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이 대한체육회는 연 평균 14만 4천여 명, 장애인체육회는 1만 3천여 명이다.

[표 37]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선수 등록 현황(2017~2019년)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대한 체육회	지도자	19,176	19,730	16,028	18,311
	선수	130,639	130,547	117,616	126,267
	합계	149,815	150,277	133,644	144,578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833	1,358	988	1,060
	선수	12,250	13,039	11,952	12,414
	합계	13,083	14,397	12,940	13,474

주: 2017~2018년은 매년 12. 31. 기준이며, 2019년은 5. 30. 기준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이와 같은 지도자·선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종목단체와 가맹단체의 행정인력은 회원종목단체가 평균 9.4명¹³⁶⁾, 가맹단체가 평균 3명¹³⁷⁾에 불과한 반면, 각종 대회 개최 등 수행업무는 많아 징계처분자에 대한 등록제한 등 등록업무의

136) 정회원 61개 단체 및 준회원 6개 단체의 행정직원 수 기준임

137) 정가맹 32개 단체의 행정직원 수 기준임

적정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징계처분 이력에 대한 전산자료 입력·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징계처분 이력을 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격정지 등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는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로 하여금 등록심사 과정에서 등록 신청을 한 지도자·선수 등의 자격정지 등에 따른 등록결격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결과 “1)항”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등¹³⁸⁾이 (성)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23명을 등록제한 기간 중에 등록시켜 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가 등록심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지도자·선수 등록관리시스템 및 장애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① 자격정지 등에 따라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지도자를 등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주의)

138)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② [별표 16]과 같이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지도자를 부당하게 등록한 대한축구협회 등 10개 회원종목단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등록제한 기간 중인 CT의 지도자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제한 기간에는 등록이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징계기록과 지도자·선수 등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① 자격정지 등에 따라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지도자·선수 등을 등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단체의 등록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주의)

② [별표 17]과 같이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지도자를 부당하게 등록한 대한장애인체육상연맹 등 6개 가맹단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등록제한 기간 중인 CU 등 5명의 지도자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제한 기간에는 등록이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징계기록과 장애인체육인 등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 추진 분야

실 태

가.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 추진 현황

문체부는 200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난 10여 년간 체육계 (성)폭력·승부조작·입시비리 등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시행하였는데 각각의 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스포츠비리 개선대책 추진 현황(2008~2019년)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①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 (2008.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여성지도자 할당제 도입 체육계 통합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
	②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2013.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인권익센터 지원대상 확대(장애인·프로선수) 체육단체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무관용 원칙 적용 지도자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징계내역 등) 및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 	문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③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방안(2014.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스포츠인권익센터의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 지도자 등록 취소제 추진 	문체부
	④ 선수폭력 방지대책 (2016.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의 (성)폭력 관련 징계 강화(자격정지 1년 이상) 경기력향상연구금 수령자격 상실요건 강화 징계절차 간소화(3심제→2심제) 	문체부
	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2019.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스포츠 비리전담 독립기관)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 법안 마련 선수층에 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여성관리자 배치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승부 조작 및 편파 판정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	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2012.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승부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체육단체 비리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 	문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등
	②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2013.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목별 경기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해 임원의 임기·자격 제한 비리 경기단체 및 임원 퇴출제도 신설 공정체육센터(대한체육회) 설치(비리제보 상시 조사) 	문체부
	③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2014.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4대악(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사례 제보접수 및 관련 조치 총괄기구 설치 	문체부
	④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2016.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기록 현장 확인, 온라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입학비리 연루자 퇴출을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통보 제도 도입 	문체부 교육부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성폭력 및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1)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2008. 2. 18. 발표]

2007년 5월 여자 프로농구팀 감독¹³⁹⁾이 미국 전지훈련 중 여자선수를 지도자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하다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야기되고 비위지도자 등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 구 문화관광부는 2008. 2. 18. 구 교육인적자원부¹⁴⁰⁾,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표 39]와 같이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표 39]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

세부 대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여성지도자 할당제(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지도자 20% 할당제) 도입▪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강화(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화)▪ 지도자·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연 1회 이상)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위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와 함께 영구제명자의 경기장 접근을 금지하고, ②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를 대한체육회에 설치하되, 관리 및 운영은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신고자 보호는 물론 신속한 사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외 ③ 체육계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추진하되, 우선 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지도자 20% 할당제 등 여성지도자 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여

139) 신문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우리 애들이 있는데 왜 립살롱에 가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됨
140)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3. 3. 23. 교육부로 명칭 변경됨

성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발표한 2008년 이전 10년간(1998~2007년) 여성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비율이 20%를 밑돈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¹⁾

2)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2013. 1. 15. 발표]

보치아¹⁴²⁾ 종목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2012. 9. 17. “2012년 런던장애인을 올림픽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물론,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 지도자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런던장애인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폭언·(성)폭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태스크포스팀¹⁴³⁾을 구성하여 스포츠 현장 내 (성)폭력 현황 및 의견 등을 청취하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898명, 지도자 66명, 학부모 85명 등을 대상으로 “운동부 현황 및 (성)폭력 실태·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체부는 2013. 1. 15. 교육과학기술부, 여가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5개 종목단체¹⁴⁴⁾와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대한체육회에 설치되어 있던 스포츠인권익센터의 인권 침해신고 및 상담 지원대상을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뿐 아니라 장애인 및 프로선수까지 확대하고, ② (성)폭력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거나 체육단체

14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격검증 및 연수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자격증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자격증을 일정비율 이상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임

142) 표적구에 가깝게 던진 공의 집수를 함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임

143) 문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144)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간 기준이 상이할 뿐 아니라 징계처분 또한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단체별 징계양정기준¹⁴⁵⁾을 마련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③ 폭력 지도자를 체육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지도자 채용 심사 시 지도자의 징계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3)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방안(2014. 4. 28. 보고)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2008년 2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도 2014년 3월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 선수들에 대한 코치의 폭언·성추행 사건과, 화성시청 여자 쇼트트랙팀 선수들에 대한 감독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4. 4. 28. 문체부는 다시 [표 40]과 같이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40]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성폭력 방지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직무교육 확대 ▪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전국체전 등 체육행사 시 스포츠 인권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인권익센터의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 ▪ 지도자 등록 취소제 추진 ▪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프로그램 개발 ▪ 피해 선수 통합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위 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선수·지도자 등의 인권 침해사항을 전담하여 온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권익센터를 확대하여 충청·강원·영남·호남지역에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②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지도자 중 (성)폭력 등의 비위를 저질러 자격정지·제명 등 지도자 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도자 등록을 즉시 취소¹⁴⁶⁾한다는 것이나 위 대책 중 (성)폭력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145) 폭력 행위의 종류 및 경중, 과실 정도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제시하는 ‘징계기준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었음

146) 대한체육회의 구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

이유로 권역별로 스포츠인권익센터의 지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안은 2015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타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설치계획이 폐지되었다.¹⁴⁷⁾

4) 선수폭력 방지대책(2016. 1. 8. 발표)

2015년 10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후배 선수를 폭행하여 출전 정지 1년을 처분받은 사건과, 같은 해 12월 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국가대표인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하여 자격정지 10년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는 2016. 1. 8. “선수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위 대책에 따라 ① 선수·지도자가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예외 없이 자격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¹⁴⁸⁾하고, ②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수령자격 상실 요건으로 선수·지도자 대상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며, ③ 징계의결 시 내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가 2심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 단체가 1차로 징계를 의결한 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을 하도록 징계 절차를 3심제(1·2심: 소속단체, 3심: 대한체육회)에서 2심제로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5)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2019. 1. 25. 발표)

2019년 1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상습 성폭행이 폭로된 이후 유도·태권도·정구 종목 등에서 잇달아 “미투(me too)”¹⁴⁹⁾가

147)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스포츠인권익센터의 폭력·성폭력 신고 접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스포츠인권익센터의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3년(2011~2013년) 연평균 신고 접수 건수는 40건이고, 그 중 방문 신고 접수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48) 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가장 강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음

14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임

확산되자,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9. 1. 25.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표 41]과 같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표 41]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주요 내용

주요 대책 내용	추진 부처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운영	국가인권위원회
▪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문체부·교육부·여가부
▪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	문체부·교육부·여가부·체육단체
▪ 국가대표 훈련환경(선수촌 등)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문체부
▪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여가부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위 대책에 따라 ① 인권조사 전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폭력 피해상황을 1년간 조사한 후 체육계 인권침해 행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검토 및 권고하기로 하였고, ②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인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육 분야 혁신에 필요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③ 체육단체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위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체육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체육단체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은폐·축소 시에는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④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대표 선수촌 내 사각지대에 CCTV를 보강·설치하고, 남·여 라커룸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한편, 진천선수촌과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에 인권상

담사가 상주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인권 보호 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다.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

1)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2012. 2. 21. 발표)

2011년 5월 발생한 프로축구(K리그) 승부조작 사건¹⁵⁰⁾에 이어 2012년 초 프로배구(V-리그), 프로야구¹⁵¹⁾ 등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스포츠의 근본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2. 2. 21. ①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 대책을 발표하면서 ②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및 상벌(지도자 활동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강화, ③ 체육단체 비리 임원 직무 배제 대책 등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도자·선수 등록 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지도자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정관에 비리 임원 직무 배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다.

2)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2013. 10. 7. 발표)

제94회 전국체육대회¹⁵²⁾에 출전할 서울특별시 고등부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서 부당하게 경고¹⁵³⁾를 받아 반칙패를 당한 선수의 아버지가 2013년 5월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해 7. 23.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본인 명예를 위해 체육단

150) 2011. 5. 6.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의 자살을 계기로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같은 해 5. 21. 부터 창원지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고, 여러 선수가 승부조작 가담자 및 브로커로 확인됨

151) 2012년 2월 대구지검이 프로야구 선수에게 첫 볼넷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브로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

152) 2013년 10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됨

153)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7차례 경고 처분으로 반칙패

체장을 하거나 체육단체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문체부는 2013년 8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종합 감사팀(3개 팀, 30명)을 구성한 후 태권도와 승마 등 언론의 지적이나 민원이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해당 체육단체의 사적 운영이나 편파판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 중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13. 10. 7. [그림 12]와 같이 경기단체 사유화 방지, 부진단체 임원 및 비리 임원 퇴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¹⁵⁴⁾을 발표하였다.

[그림 12]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세부 내용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중임 1회 허용, 회장과 8촌 이내 친족 임원 금지 특정학교 연고자 비율 제한
체육단체 운영 부적정	체육단체의 책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진단체 지정 부진단체 임원 및 비리 임원 영구퇴출
심판 불공정 경기운영 불공정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판위원회 위원장 호선, 심판 처우개선 오심 누적 심판(지도자) 자격 박탈, 심판기파·제척제
시·도경기단체 불공정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 감사·징계권 부여 공정체육센터 설치로 비위 제보 기능 강화

자료: 문체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2014. 1. 22. 보고)

문체부는 2014년 1월 승부조작·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를 “스포츠 4대악”으로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비위를 정부가 직접 감시·관리할 목적으로 문체부 소속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¹⁵⁵⁾를 설치하였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을 센터장으로 하여 문체부

154) 문체부 내부 보고자료 등에서는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155) 2013. 10. 7. 마련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임

소속 감사실 직원과 체육정책과 직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신고사항이 중대한 사안인 경우 문체부가 직접 조사·처리하되 그 외 일반적인 사안인 경우에는 관련 체육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문체부는 2015. 6. 12.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을 제정하여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의 명칭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변경하면서 센터 운영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¹⁵⁶⁾하였다.

4)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2016. 3. 15. 발표)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 소재 주요 대학교에서 야구·축구 종목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는 2016. 3. 15.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경기기록 현장 확인, 온라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경기실적 조작이나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②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영구제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며, ③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 비위행위자와의 고용계약 해지 등 학교 자체 처분에 그치지 않고 해당 종목단체에도 지도자의 비위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그 종목단체에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56)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소속은 그대로 문체부로 함(센터장: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문 제 점

가 무관용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문체부는 2012. 2. 21. 대한체육회에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하도록 하고, 2013. 1. 15.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2016. 1. 8. 대한체육회에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중징계(자격정지 1년 이상)하고, 포상실적 등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이 불가한 것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온정적 감경 의결을 방지(“선수폭력 방지대책”)하도록 하였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따라서 문체부는 위 3개 대책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적정하게 제정하였는지와 위 대책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성)폭력, 승부조작 등 체육계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 3. 21.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하면서 위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비위유형과 더불어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여 (성)폭력, 승부조작 등의 범

죄의 경우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¹⁵⁷⁾ 문체부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선수폭력 방지대책” 등의 취지와 달리 대한체육회가 위규정을 제정한 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성)폭력·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여전히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당 규정 제·개정¹⁵⁸⁾과 관련된 통합준비위원회¹⁵⁹⁾ 및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9년 5월 현재까지 (성)폭력 등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대한파크골프협회는 “2017년 대한체육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서 승부조작(스코어조작)으로 실격 처리된 CV 등 선수 11명에게 2017. 8. 7. 징계양정기준의 하한(자격정지 3년 이상)보다 낮은 견책 또는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별표 18] “징계양정기준 하한보다 낮게 징계처분한 현황”과 같이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성)폭력 및 승부조작 혐의로 징계처분한 104건 중 33건을 위 대책과 달리 징계양정기준 하한보다 낮은 양정으로 징계처분하는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57)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징계감경의 경우 확정된 사항에만 제한을 받을 뿐 제31조에 따른 징계심의 과정에는 감경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한보다 낮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관행적으로 감경하여 왔음

158) 2016. 3. 21.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한 이후 2019. 3. 13.까지 10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제32조의 내용은 크게 변동되지 않음

159)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법률 제13246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함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성)폭력 및 승부조작 등 체육계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심사과정에서 그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성)폭력 및 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폭력·성폭력 및 승부조작 등 체육계의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심사과정에서 그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대한체육회장으로 하여금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폭력·성폭력 및 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체육계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미수립 등**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횡령, 조직 사유화 등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조사·처리 등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문체부는 2008년 이후 ①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2008. 2. 18.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 ②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2012. 2. 21.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③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2013. 1. 15.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등의 스포츠 비리 개선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과 화성시청 여자 쇼트트랙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는 등 (성)폭력, 횡령, 조직 사유화, 승부조작 등 체육계 주요 비리는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체부는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주요 비위행위 임원, 지도자 등에 대한 고발·수사의뢰(이하 “고발 등”이라 한다) 원칙과 세부기준을 명확히 수립·시달하고,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관련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발 등 업무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서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채 범죄행위별 고발 등의 대상 및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도 고발 등의 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시달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지도자·임원 등에 대한 고발 등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

체 및 시·도체육회가 2014. 1. 1.부터 2019. 3. 8.까지 조사·처리한 157건의 비위 사건¹⁶⁰⁾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대한세팍타크로협회는 성희롱, 폭행 등의 혐의가 있는 CW¹⁶¹⁾에 대해 7년 자격정지 처분만 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등 [별표 19] “범죄혐의 미고발 명세”와 같이 미고발된 157명 중 비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의사 확인 등이 필요한 84명,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42명 등 계 126명을 제외한 31명 중에는 위 CW를 비롯하여 고액의 협회 사업비를 횡령한 회원종목단체 임원 등은 고발 필요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사유 없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고발 등의 조치가 누락되는 등 범죄행위 예방 효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비위지도자 등의 체육계 퇴출을 위한 고발 등 업무의 공정성·형평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성)폭력, 횡령 등 체육계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마련·시달하고 [별표 19] “범죄혐의 미고발 명세”의 31건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재검토·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과 협의하여 폭력·성폭력,

160)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성)폭력, 횡령 등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 징계처분한 임원·지도자·선수 167명 중 94%인 157명을 고발 등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함

161) CW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 시 소속팀 여자선수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1인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가량을 수시로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 성희롱을 하였으며, 국가대표 감독 재직 시에도 대표선수에게 수차례 폭행, 폭언을 한 혐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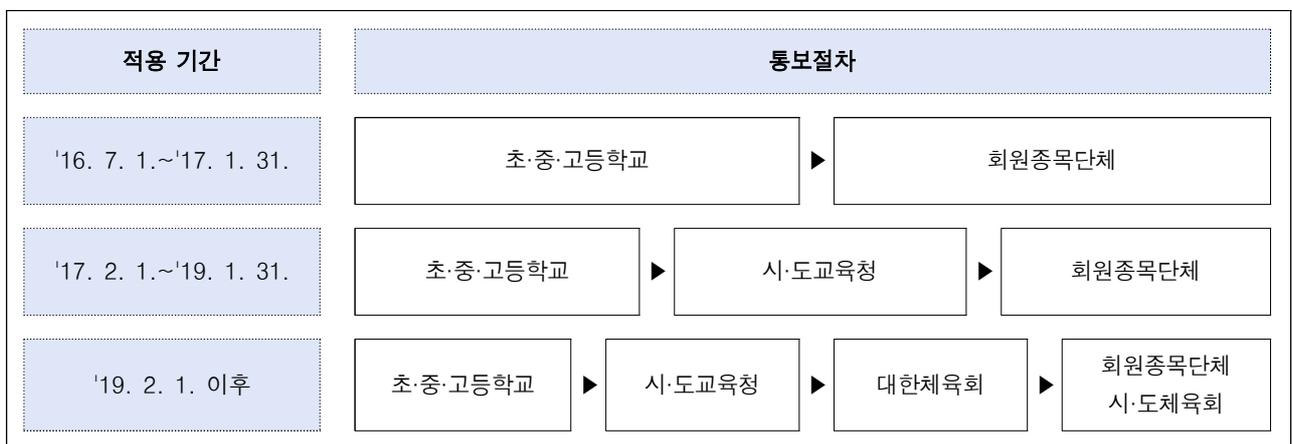
횡령 등 체육계 주요 비리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마련·시달하고, 폭력·성폭력 및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별표 19] “범죄혐의 미고발 명세”의 31건에 대하여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재검토·처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체육단체 소속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절차 미비**

문체부와 교육부는 2016. 3. 15.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도교육청 등이 해당 지도자의 비위사실을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¹⁶²⁾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교육부는 2016. 5. 9. 및 같은 해 7. 1. 위 대책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회원종목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에 송부하였고, 이후 교육부는 비위사실 통보 후 처리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통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 2. 1.과 2019. 2. 1. [그림 13]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통보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림 13]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통보 절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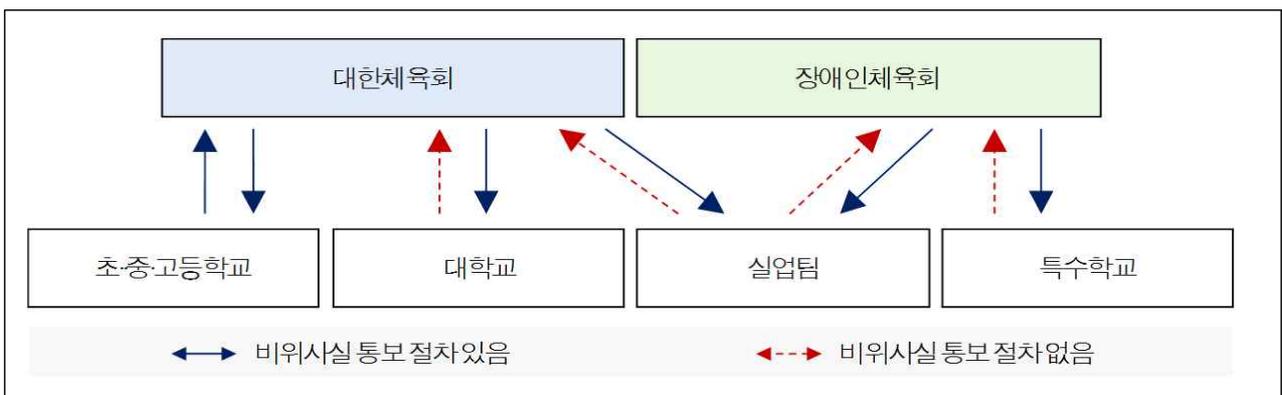
162)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 통보 대책은 교육부 소관임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지도자 등의 비위사실을 조사·심의하고 징계처분한 경우 그 결과를 비위지도자 등이 소속된 학교운동부 및 실업팀 등에 통보하여 해당 소속단체로 하여금 자체 복무규정 등에 따라 징계, 계약관계 중단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위 대책과 대한체육회 등의 규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비위사실은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와 초·중·고등학교 간에 상호 통보하기 때문에 [그림 14]와 같이 최초 조사·처리 주체¹⁾와 관계 없이 제도적으로는 동일한 제재 처분²⁾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정 단체에서 (성)폭력 등으로 해임되고도 다른 단체로 옮겨 활동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4] 운동부 지도자 등의 비위사실 통보 절차 유무 현황



자료: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대책에 포함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제외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대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부, 실업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도 대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비위지도자

1)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초·중·고등학교

2) 체육단체의 자격·출진정지 처분과 함께 소속단체의 복무규정에 따른 해임 등 제재 처분

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 조사·처리 주체에 따라 제재 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¹⁶⁵⁾도 해소하였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문체부는 2016. 3. 15. 교육부와 합동으로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대책”에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만 체육단체로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한 채 대학교와 특수학교 운동부, 실업팀과 관련해서는 2019년 5월 현재까지 비위사실 통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비위지도자 등의 조사·처리 경로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어려워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비위사실 조사·처리 경로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및 적정 사례

(소속단체가 먼저 비위사실을 조사·처리한 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례)

- 전 ■■도시공사 핸드볼팀 선수 CX, CY는 2016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후배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년 3월 ■■도시공사로부터 공개사과 등의 조치를 받음
 - 그러나 CX, CY는 2018년에도 후배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재차 적발되어 2018년 9월 ■■도시공사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월 계약 해지되었음
 - 그런데 CX, CY의 비위사실이 대한핸드볼협회 등에 통보되지 않아 CX, CY는 2차리에 걸쳐 폭행행위가 적발되고도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은 받지 않음
- 전 ◆◆도시공사 핸드볼팀 감독 CZ는 2016. 1. 12. 자신의 성추행 혐의(입맞춤, 포옹 등)가 ◆◆도시공사에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되고, 피해자 조사 등이 시작되자 같은 해 1. 20. “건강문제”로 사직서를 제출
 - 이후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 운영내규」 제7조*에 따라 CZ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함
 - *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조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CZ의 비위사실이 대한핸드볼협회 등에 통보되지 않아 CZ는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6년 9월 ◆◆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됨

165) 체육단체가 최초 조사한 경우 자격·출전정지 등의 처분 후 징계결과를 소속단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자체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처분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대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부, 실업팀이 최초 조사한 경우에는 소속단체의 징계결과를 체육단체에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단체에서 자격·출전정지 등의 처분이 누락될 수 있음

(체육단체가 먼저 비위사실을 조사·처리하여 후속조치가 적정하게 처리된 사례)

- ○○공사 레슬링팀 감독 G는 2018년 2월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해 9월 대한체육회로부터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비위사실이 ○○공사로 통보되어 ○○공사로부터 2019년 1월에 1개월 감봉처분을 받음

참고로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실업팀을 운영하는 41개 공공기관¹⁶⁶⁾에서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생한 비위사실 11건¹⁶⁷⁾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별표 20] “공공기관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명세”와 같이 체육단체에서 먼저 징계처분을 받은 후 공공기관에서 징계처분한 2건¹⁶⁸⁾을 제외한 나머지 9건¹⁶⁹⁾의 비위사실이 체육단체에 통보되지 않았고, 이 중 8건의 비위에 해당하는 7명¹⁷⁰⁾은 체육단체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대학교와 특수학교 운동부, 실업팀에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체육단체에 통보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위행위로 인해 소속단체에서 징계를 받거나 사직한 7명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교육부도 문체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대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당 체육단체에 통보하도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66) 2018년 12월 기준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 등록관리시스템 상 소속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팀 중 지방자치단체·군·경찰 소속팀 제외함

167) 총 15건의 비위사실 중 음주운전, 결직, 회사예산 부정 사용 등 체육단체의 징계대상 비위와 관련 없는 4건 제외함

168) [별표 20] “공공기관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명세” 연번 10, 11

169) [별표 20] “공공기관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명세” 연번 1~9

170) [별표 20] “공공기관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명세” 연번 1~8(연번 5, 6은 동일인으로 비위행위자는 7명임)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교육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처리 경로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비위지도자 등 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대학교와 특수학교 운동부, 실업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을 해당 체육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② 대한체육회장으로 하여금 비위행위로 인해 소속단체에서 징계를 받거나 사직한 DA 등 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라	비위사실 통·수보 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부적정
----------	------------------------------------

교육부는 2016. 3. 15.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¹⁷¹⁾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으로 하여금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지도자의 비위사실을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등¹⁷²⁾에 통보¹⁷³⁾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위 대책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이를 조사·검토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부 등이 비위사실 통·수보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 등도 징계처분

171) 문체부와 교육부는 2016. 3. 15.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한체육회와 교육부는 2016. 5. 9. 및 2016. 7. 1. 위 대책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회원종목단체와 시·도교육청 등에 송부함

172)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173) 교육부는 ① 2016. 7. 1.부터 2017. 1. 31.까지는 초·중·고등학교가 회원종목단체에 비위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였다가 ② 2017. 2. 1. 통보 절차를 변경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 31.까지는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③ 2019. 2. 1.에는 통보 절차를 다시 변경하여 2019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시·교육청이 각급 학교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대한체육회에 통보하면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학교운동부에서 비위행위를 하고도 해당 학교에서만 퇴직하고 다시 다른 학교·기관에 지도자로 재취업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시·도교육청 등의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사실 통보 누락

교육부가 2016. 7. 1. 시달한 학교운동부 비위사실 통보 절차 등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등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이 이를 회원종목단체 등에 제대로 통보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4,44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016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생한 지도자의 비위사실 173건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이 회원종목단체 등에 통보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통보대상 비위사실 173건 중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이 회원종목단체 등에 통보한 건수는 21건(12.1%)이었고, [별표 2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미통보 건에 대한 체육단체 징계 명세”와 같이 나머지 152건¹⁷⁴⁾(87.9%)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74) 통보되지 않은 152건 중 8건은 대한체육회 등에서 징계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44건은 징계처분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참고로 위 152건 중 [별표 2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미통보 건에 대한 체육단체 징계 명세” 연번 1~144 해당하는 지도자 140명은 비위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대한체육회 등175)에서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성)폭력 등 중요 비위행위 등176)으로 학교에서 해임되거나 사직한 33명이 해임 또는 사직 이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 활동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2017. 7. 10. ○○ 고등학교에서 폭력으로 해임된 배구부 코치 DB가 2018. 3. 2. ☆☆ 고등학교 배구부 코치로 등록한 후 대회에 참가하는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별표 22] “학교운동부의 비위지도자 등록·활동 명세”와 같이 11명이 폭행 등으로 학교에서 사직 또는 해임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운동부 지도자로 등록하고 계속 활동(대회 참가 7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위지도자를 채용한 사례

- ●● 고등학교는 2018년 3월 DC를 농구부 코치로 채용하였으나, DC는 2017년 7월 ■■ 고등학교에서 금품수수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지도자로 확인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통보 업무를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후 통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2) 회원종목단체 등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사실 처리 업무 소홀

대한체육회가 2016. 5. 9. 시달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시행 계획 알림” 등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등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이 학교 등에

175)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176) 성비위, 폭력, 승부조작, 금품수수

서 통보되면 이를 조사·검토한 후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2016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 등이 회원종목단체 등에 통보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21건에 대한 조사·처리가 적정한지 점검한 결과, 충청북도체육회는 2018. 5. 21.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통보 받아 충청북도럭비협회로 즉시 이첩¹⁷⁷⁾한 ▲▲ 중학교 럭비부 코치 DD의 성추행 사건을 충청북도럭비협회에서 2019년 5월 현재까지 조사·처리하지 않고 있는데¹⁷⁸⁾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별표 2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부당 처리 명세”와 같이 10건에 대한 조사·처리가 2019년 5월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학교운동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지도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등 비위지도자 관리에 사각이 발생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회원종목단체 등에 통보되지 않은 144건의 비위사실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등이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10건은

177) 충청북도체육회와 충청북도럭비협회는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DD의 성추행 사실을 통보받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위 사실을 인지하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럭비협회가 징계 등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함

178) 충청북도럭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간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사유로 방치함

대한체육회가 통보받지 못한 사안이나 앞으로 회원종목단체 등에 징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①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비위사실 중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통보되지 않아 해당 지도자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144건에 대해 대한체육회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지도자의 비위사실 통보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대한체육회장은 초·중·고등학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충청북도체육회 등 7개 체육단체(179)에 주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체육단체가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비위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10건에 대해 징계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마 회원종목단체 등의 징계결과 통보 업무 처리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180) 등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등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79) [별표 2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부당 처리 명세” 연번 9, 10은 통보·접수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사안으로 대한정구협회와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주의 축구 대상에서 제외함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대한체육회 구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2016. 3. 21. 시행) 제25조에 따라 회원 종목단체 등이 비위지도자·임원 등을 징계처분한 경우 같은 규정 제30조¹⁸¹⁾ 및 제40조 제2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¹⁸²⁾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한 지도자 등이 회원종목단체 등으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등의 처분만 받고, 소속단체에서는 아무런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종목단체 등의 징계결정서 통보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¹⁸³⁾ 등이 2016년 징계한 33건¹⁸⁴⁾을 대상으로 징계결과 통보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별표 24]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의 징계결정서 미통보 명세”와 같이 서울특별시유도회 등 2개 단체는 선수 폭행, 성추행 등의 비위로 출전정지 등 징계처분을 한 비위지도자 2명에 대한 징계결정서를 2019년 5월 현재까지 소속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유도회 등에서 소속단체에 징계결정서를 통보하지

180) 시·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도 포함

181)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유도회 등의 경우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비위지도자 등을 징계처분한 경우 징계결정서를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182) 징계대상자가 근무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모두 소속단체에 해당함

183) 전국 시·도체육회 중 2016년 임원·지도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도 포함하여 분석함

184) 회원종목단체 등의 소속 임직원 징계 사항 중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점검함

않은 2건 중 1건¹⁸⁵⁾은 소속단체에 비위사실이 알려져 징계대상자가 계약 해지된 반면, 2016. 11. 18. 성추행 등 혐의로 서울특별시유도회로부터 출전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 대학교 훈련처장(교수) DE¹⁸⁶⁾의 경우 징계결정서가 ▶▶ 대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2019년 5월 현재까지 소속단체로부터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소속단체가 비위사실을 미인지하여 징계하지 못한 사례

- 현 ▶▶ 대학교 여자 유도부 감독(훈련처장, 교수) 및 전 서울특별시유도회 임원 DE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훈련 도중 여자 선수의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물어 멍이 들게 하고 가슴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11월 서울특별시유도회로부터 임원 해임,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그런데 서울특별시유도회는 징계결정서를 DE의 소속단체인 ▶▶ 대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DE는 ▶▶ 대학교로부터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여자 유도부 감독으로 계속 활동 중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등의 징계결정서 통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회원종목단체 등의 징계결정서 통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울특별시유도회장으로 하여금 DE의 징계결정서를 소속단체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회원종목단체 등이 소속단체에 징계결정서를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징계결정서 통보 여부를 재조사하여 통보가 누락된 경우 비위지도자 등의 소속단체에 징계결정서를

185) [별표 24]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의 징계결정서 미통보 명세” 연번 2
 186) [별표 24]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의 징계결정서 미통보 명세” 연번 1

조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바 비위지도자 등의 징계정보 공유방안 미수립

문체부는 2013. 1. 15.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같은 해 10. 7.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각각 수립하여 (성)폭력 등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임원 등이 징계 기간 중 다른 체육단체의 지도자 등으로 복귀해 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 규정과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등을 공유·활용하도록 하였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문체부가 2013년 1월과 10월 수립한 두 대책(이하 “위 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2016. 6. 16.과 2016. 8. 2. 각각 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2016. 6. 16. 시행) 제6조와 구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2016. 8. 2. 시행) 제21조에 “타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만료일로부터 3년간, 징계사유가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인 경우 영구히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¹⁸⁷⁾ 다른 체육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지도자·임원 등의 등록 및 선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자 등록시스템 등을 구축¹⁸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일부 이행하였으나,

187)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2013. 11. 12.과 2014. 3. 12. 각각 「가맹경기단체규정」과 「정관」, 장애인체육회는 2014. 2. 5.과 2014. 2. 28. 각각 「가맹단체운영규정」과 「정관」을 개정하여 문체부 산하 다른 체육단체 등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188) 대한체육회는 2014년 1월, 장애인체육회는 2016년 8월부터 지도자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등록정보와 징계정보를 각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5월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관리시스템에 징계정보 등록 미시행), 양 체육회 간 등록관리시스템을 연동시키지는 않음

위 대책과 달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를 공유 활용하는 등의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7년 8월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과정에서 “2014. 4. 9. 성추행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제명된 ☒☒도청 컬링팀 코치 DI가 2016. 11. 14.부터 ○○시장애인체육회 휠체어컬링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하 “DI 사건”이라 한다)을 확인¹⁸⁹⁾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2017. 10. 19. 대한체육회 등¹⁹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2월 미성년 선수 성폭행으로 대한볼링협회에서 제명된 ▼▼ 고등학교 볼링팀 감독 DG가 ■■시 장애인볼링협회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이하 “DG 사건”이라 한다)는 문제 제기과 더불어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요청”이 있어 문체부가 2013년 수립한 대책과 달리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문체부는 그동안 수립하고 시행한 대책의 취지와 다르게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비위지도자 등이 다른 체육단체로 소속을 옮겨 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대책 중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간 징계정보 공유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위 대책대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다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양 체육회 간 징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189) 당시 감사결과 문체부는 장애인체육회로 하여금 지도자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등에 사실조회 등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하고,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지도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2019년 5월 현재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시 타 체육단체의 징계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있음

190)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도 문체부는 2013년 징계정보 공유대책 수립 후 위 DI 및 DG 사건 때까지 위 대책 이행여부를 방치하다가 DG 사건을 계기로 국정감사에서 징계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되자 징계정보 공유가 안되는 사유를 대한체육회에 문의하였고, 대한체육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장애인체육회 등과 징계정보를 공유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문체부는 지도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¹⁹¹⁾인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2018년 말까지 징계정보 공유방안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게다가 대한체육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문체부가 그동안 수립하고 시행한 대책의 취지에 역행해서 다른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이나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2017. 2. 8. 「정관」¹⁹²⁾ 및 2019. 1. 31. 「경기인 등록 규정」¹⁹³⁾ 등을 개정·완화하였는데도, 문체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문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가 곤란

191) 감사기간 중 문체부 업무담당자 등에게 체육단체에서 매년 지도자·선수 등의 등록을 받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징계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지 유관기관에 확인하게 하였는 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함

192) 대한체육회는 2017. 2. 8. 「정관」 제30조, 2017. 3. 23.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를 개정하여 문체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징계사유가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인 경우 영구히 임원 선임 제한)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

193) 대한체육회는 2019. 1. 31.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징계사유가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인 경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 제한)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

하다는 대한체육회의 의견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징계정보 공유 이행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 8.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보도되자 하루 만인 같은 해 1. 9.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방안을 또다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감사기간 중인 2019. 3. 13.과 같은 해 5. 29. 각각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체육회 등¹⁹⁴⁾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등¹⁹⁵⁾은 대한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였으나, 2019년 5월 현재까지 지도자·선수 등의 등록과 관련된 「경기인 등록 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다른 체육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선수 등은 등록이 제한되지 않는 등 임원 또는 지도자·선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2016. 12. 4.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폭행으로 제명된 DH가 2018. 5. 24. 대한수영연맹에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로 등록한 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는 등 2019년 5월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간 징계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별표 25] “체육단체 간 지도자·임원 부당 등록·선임 명세”와 같이 비위지도자 등 4명이 체육단체를 옮겨 복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대한체육회와 장

19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회원종목단체·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5) 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 중이거나 ② 폭력·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③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애인체육회 간 징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징계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 또는 선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3명¹⁹⁶⁾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 등을 통해 등록 또는 선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체육계 비위지도자 등의 관리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간 징계정보를 공유하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 ②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으로 하여금 등록 또는 선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DH 등 3명에 대해 지도자 등록 또는 임원 선임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며(통보)
- ③ 앞으로 스포츠 비리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한 후 대한체육회 등에서 수립된 대책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책과 다른 내용으로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개별통보사항 명세 1번 참조]

사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한 업무 처리 등 부적정
----------	---------------------------------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5와 제1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

196) [별표 25] “체육단체 간 지도자·임원 부당등록·선임 명세”에 해당하는 4명 중 DI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여 등록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에 대한 취소·정지 처분을 하는 등 자격증 보유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⁹⁷⁾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업무 처리 부적정

문체부는 2008. 2. 18. “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에서 성폭력 등 비위지도자의 학교운동부 취업¹⁹⁸⁾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¹⁹⁹⁾을 발표(교육부와 합동)하였는데, 위 대책대로 비위지도자의 학교운동부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등 비위사실이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증 취소·정지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4년 3월 발생한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 코치의 성추행 사실과 화성시청 여자 쇼트트랙팀 감독의 성추행 혐의 등을 직접 확인²⁰⁰⁾하는 등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과정이나 스포츠 비리 근절대책 마련 과정 등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재처분 대상 비위지도자를 파악하고도 이들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증 취소·정지 근거가 마련된 2012. 2. 17.부터 2017. 10. 18.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²⁰¹⁾

그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2017. 10. 19. 대한체육회 등 문체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선수 성폭행으로 대한볼링협회에서 제명된 ▼▼ 고등학교

197)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업무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을 총괄하면서 실기·구술시험 및 자격연수는 자격증 종별, 종목별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역 대학교 등에 위임하고 있음

198) 체육단체에서 성폭력으로 영구제명된 지도자가 여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 중인 사례가 발생됨

199) 2014년 10월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15. 1. 1.부터 학교에서 임용하는 운동부 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200) 위 사건들을 계기로 2014. 4. 28. “체육계 성폭력 방지 개선방안” 마련함

20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닌 기타 사유(자격증 타인 대여 및 허위 경력증명 제출 등)로 자격증이 취소된 사례는 7건임

교 불링팀 감독 DG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고, 과거 5년간 신고된 (성)폭력 사건 209건의 처리 적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취소·정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직접 문제 사례로 언급된 DG에 대해서만 2018. 6. 29. 체육지도자 자격증 2개월 정지처분을 하고, 그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폭행,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지도자의 현황 및 처분 필요성 여부는 2019년 5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가 징계처분한 지도자 현황과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이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가 필요한 비위지도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별표 26]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현황”과 같이 (성)폭력, 금품수수, 승부조작 및 그 밖에 직무상 부정·비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4명)²⁰²⁾ 또는 자격증 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⁰³⁾

또한 2014년 12월 폭력으로 징역형(1년 6개월)을 받은 야구부 코치 DJ가 2016년 자격증 취소 없이 ◀◀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채용되어 2019년 5월 현재까지 근무하는 등 [별표 27]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근무 현황”과 같이 위 자격증 취소 및 정지 대상 지도자 97명 중 총 15명이 자격증 취소·정지 처분 없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계속 근무하는 부당한 사례가 근절

202) [별표 26]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현황” 연번 27, 82, 84, 95

203)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징계처분받은 1,129명 중 금품수수, 입시비리,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 성폭력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체육지도자임

되지 않고 있다.

2)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재 기준 불합리

성폭력사건의 경우 특성상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 모멸감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고, 폭력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사건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등과 같은 중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은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정지 처분을 하되 행위의 경중과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정지 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2012년 2월 신설·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와 제12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 8월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는 비위행위의 유형이나 정도와 무관하게 위반 횡수에 따라서만 자격정지 처분(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4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을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성폭행하여 2017년 2월 대한볼링협회에서 영구 제명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 등을 하지 않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 고등학교 볼링팀 감독 DG에 대해 2018. 6. 29. 체육지도자 자격증 2개월 정지 처분밖에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된 DG에게 자격증 정지 2개월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2019년 1월까지 이를 개정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비위 유형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격증 정지 기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①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재업무와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 업무²⁰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UY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오니 위 사람의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고[통보(인사자료)]

[개별통보사항 명세 1번 참조]

② 직무상 부정·비위행위 등이 확인된 지도자 97명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비위행위의 경중과 횡수를 함께 고려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 상실·정지 업무 부적정

문체부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생활 보조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이하 “체육연금”이라 한다) 제도를 운용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체육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4) “비위지도자 등의 징계정보 공유방안 미수립” 건과 합건함

체육연금은 1975년 최초 도입되어 2005년 12월까지 비장애 체육인만을 대상으로 운용되다가 2006년 1월부터 장애 체육인까지 확대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월정금 또는 일시금²⁰⁵⁾, 일시·특별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지급 실적은 [표 42]와 같다.

[표 42] 체육연금 지급실적(2016~2019년 4월)

(단위: 천 원, 명)

구분	비장애 체육인				장애 체육인				
	월정금 (월평균)	일시금	장려금		월정금 (월평균)	일시금	장려금		
			일시	특별			일시	특별	
'16년	금액	7,721,825 (643,485)	25,200	441,000	31,500	2,431,125 (202,594)	4,480	435,000	-
	인원	1,044	2	23	7	251	1	16	-
'17년	금액	7,989,600 (665,800)	36,000	51,000	117,000	2,643,575 (220,298)	-	1,597,000	-
	인원	1,072	2	11	26	268	-	25	-
'18년	금액	8,323,800 (693,650)	22,400	391,500	202,500	2,902,500 (241,875)	42,000	52,500	58,500
	인원	1,120	1	34	45	304	2	6	13
'19년 4월까지	금액	2,835,925 (708,981)	-	6,000	4,500	1,014,900 (253,725)	-	16,500	49,500
	인원	1,124	-	3	1	310	-	5	11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문체부는 2015년 말 역도 국가대표 선수의 후배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2016. 1. 8. 마련한 “선수폭력 방지대책”에서 폭력을 행사한 선수·지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 행사를 체육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판단기준 및 문제점 】

1)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 사유 확인·조치 부적정

205) 입상실적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월정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육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한 경우 일시장려금, 20점 미만인 경우 등에는 특별장려금을 수령함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체육연금을 월정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19조와 제2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체육연금 지급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체육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에 체육연금 지급 대상자 등²⁰⁶⁾의 자진 신고에 따라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9년 5월 현재까지 언론 보도²⁰⁷⁾를 통하거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²⁰⁸⁾하여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체육연금 수령자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전부 확인하기 어렵고, 체육연금 수령자의 자진 신고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 처리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검²⁰⁹⁾해 본 결과, 2018. 12. 20. 장애인 유사성행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²¹⁰⁾받은 DK(7년 하계 장애인 올림픽대회 사격 은메달리스트

206) 지급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207)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언론 보도를 통해 DL(승마, 2017년 3월 상실), DM(야구, 2017년 5월 상실), DN(야구, 2018년 4월 상실) 등 체육연금 수령자 3명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체육연금 수령자격을 상실처리함

208)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프로야구 선수 DM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7년 5월)받아 체육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 체육연금 수령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조사대상 인원 1,307명 중 559명은 연금 수령자격 상실 및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748명은 미응답으로 확인하지 못함)

209) 2019. 3. 2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총 37일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체육연금 지급대상자 1,4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 및 지급정지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고, 1,425명 중 24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부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210) 대전고등법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포함

트)에 대해 2019년 4월까지 체육연금 40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²¹¹⁾되는 등 [별표 28]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체육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 3명에게 2019년 4월까지 최소 2,000만 원 이상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²¹²⁾

2) 체육연금 지급정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체육연금 지급대상자가 다른 선수·지도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성)폭력 사유로 징계 등을 받아 체육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간 체육연금 지급대상자의 징계사실 통보·확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징계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그동안 체육연금 부당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체육연금 지급대상자의 징계사실 통보·확인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일임한 후 지급정지 대상자에게 체육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대한체육회 등의 징계기록을 이용하여 체육연금 지

211) DK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체육연금 400만 원은 2019. 6. 24. 환수 완료함

212) 체육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3명 중 2명(DO, DP)은 자신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알렸으나, 판결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어 2019년 5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2명에 대한 체육연금 수령자격을 상실처리하지 못하고 지급을 정지한 상태임(DO는 2019년 3월부터 지급정지, DP는 2019년 5월부터 지급정지)

금정지 처리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6. 10. 18. 선수 폭행으로 자격 정지 1년을 처분받은 DQ(2년 아시아경기대회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에게 2018년 9월까지 체육연금 1,08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별표 29] “체육연금 지급 정지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와 같이 징계를 받아 체육연금 지급정지 대상인 2명에게 1,44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²¹³⁾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체육연금은 환수하는 한편, 체육연금 지급정지 대상자에게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DO, DP의 수령자격 상실 여부를 확정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폭력·성폭력으로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13)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9년 3월 체육연금 지급정지 대상자 DQ, G에 대해 각각 향후 24개월 및 12개월 동안 체육연금 지급을 정지함

5. 기타 분야

문 제 점

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계약직 직원 부당 채용

문체부는 2014년 2월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 4대약²¹⁴⁾ 관련 신고사항을 접수 및 조사·처리하기 위한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²¹⁵⁾(이하 “신고센터”라 한다, 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해 4. 1. 신고센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로 DR²¹⁶⁾을 채용(계약기간: 2014. 4. 1.~12. 31., 보수: 월 300만 원)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2015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센터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DR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신고센터에 계속 근무²¹⁷⁾하게 하였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이하 “문체부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채용권자²¹⁸⁾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

214)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215)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에 “스포츠 4대약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가 2014년 5월 경찰 등이 포함된 “스포츠 4대약 합동수사반”으로 확대·변경한 후 경찰 등의 파견이 종료된 2015년 6월부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그 후 2017년 6월부터는 문체부 직원은 없고, 파견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으로만 2019년 5월 현재까지 운영 중임

216)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문체부 ◇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 12월 문체부에서 퇴직함

217) 2018. 10. 15.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218)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부의 각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채용권자로 규정함

원,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 기준 등을 7일 이상 공고²¹⁹⁾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²²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직직원 시행세칙」 제5조 및 「운영직직원 시행세칙」 제5조 및 제8조 등에 따르면 연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문체부 관리규정과 유사하게 공고,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등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고센터를 총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위 규정들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1)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위반

문체부는 신고센터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찰청 등 다수 기관의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고, 운영주체(문체부) 및 책임자(체육정책과장)와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로 신고센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문체부 전 ▽국 국장 DS는 ① 신고센터가 단기간 운영된 후 폐지될 임시조직이며, ② 구 체육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꼼꼼한 성격의 DR이 ◇과 과장 등을 역임한 체육행정 전문가로서 책임자로 판단된다는 사유 등으로 2014년 3월(날짜 모름) DR에게 신고센터를 관리해 달라고 직접 연락해 수락을 받았다.

219)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생략 가능함

220)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는 생략 가능함

그리고 나서 DS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²²¹⁾ 이와 같은 사유로 DR을 신고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문체부 관리규정상의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2014. 4. 1. DR을 신고센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²²²⁾

2) 연봉 계약직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

문체부는 2014년 말(날짜 모름) 예산 사정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이 종료(2014. 12. 31.)된 DR을 2015. 1. 8. 퇴직처리(기간제 근로자 임면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DR을 신고센터에 계속 근무하도록²²³⁾ 하였다.

한편, DS는 신고센터 운영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날짜 모름) ◇과에 업무 연속성 등을 사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DR을 2015. 1. 1.부터 소급 채용하도록 지시²²⁴⁾하였다.

이에 ◇과는 DR의 소급 채용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① DR의 연령(1948년생으로 당시 67세)이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규정²²⁵⁾의 채용상한 연령(58세)을 초과하고, ②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한 채 2015년 1월부터 소급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거부하면서 ◇과에 전자우

221) DS는 문체부 관리규정상 공고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면서 계약직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222) DS는 자신이 채용 절차를 생략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과 과장은 계약직 직원 채용권자는 국장 DS였기 때문에 과에서 임의로 절차 생략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함

223) DR은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서 연락을 받고 신고센터에 계속 근무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224) DS는 채용 지시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과장이 지시자일 수도 있다고 진술함. 그러나 당시 과장은 자신은 2014년 말부터 DS와의 갈등으로 ◇과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할 수 없었고 DS가 직접 지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담당자도 당시 과장과 국장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종종 과장이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지시자는 국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225) 「계약직직원 시행세칙」과 「운영직직원 시행세칙」

편으로 관련 규정을 송부하였는데도 ◇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DR의 채용을 계속 지시하였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도·감독권과 사업승인권 을 가지고 있는 ◇과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껴 DR을 채용하기로 결정²²⁶⁾하고, DR의 소급 채용 근거를 ◇과에 요청하여 2015. 3. 31. “계속 사업으로 사업승인 전 집행 건에 대해 소급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공문을 접수한 후, 2015. 4. 29.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DR²²⁷⁾과 연봉 계약직 근로계약(연봉 3,871만 원)을 체결하는 등 4개월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고센터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의 자율성을 침해받았다.

관계기관 의견 문체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신고센터의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하도록 지시한 DS의 행위는 징계 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문화**

226) 공단 채용 담당자와 당시 인사팀장은 문체부의 DR 채용 지시 사항을 전무이사까지 보고하였고, 인사팀장은 문체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당시 67세인 DR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227) DR은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8. 10. 15. 의원면직하였으며 2015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연평균 4,022만 원의 연봉을 수령함

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개별통보사항 명세 2번 참조]

나 강원도골프협회 보조금 등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도민체전 등 지역 체육진흥 사업을 위해 강원도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강원도체육회는 「체육사업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산하 회원종목단체인 강원도골프협회에 위 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소년체전 골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골프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다.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강원도체육회의 「체육사업 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 및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강원도지사 또는 강원도교육감)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²²⁸⁾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22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리되고,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를 심사한 후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요구 등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재교부하는 강원도체육회도 위와 같은 내용(「체육사업 보조금 관리 규정」)이 있음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8조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공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에게 대하여 징계수위를 정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회원종목단체는 강원도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체육회는 강원도골프협회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관련 규정과 지원조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강원도골프협회가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관련 규정,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관련자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1) 각종 골프대회의 경기위원수당 등 횡령

강원도골프협회는 2017. 4. 17. 강원도체육회에 “강원도민체전(체육대회) 골프종목 대회운영비”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후 같은 해 5. 8. 강원도체육회로부터 경기위원(심판)수당, 경기위원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계 5,51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강원도골프협회 임원 DT는 2017. 5. 10. 강원도체육회로부터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강원도체육회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자녀 등 경기위원(심판)이 아닌 5명²²⁹⁾과 경기위원 10명 등 총 15명의 계좌로 각각 190,000원씩 총 2,850,000원을 이체한 후 경기위원이 아닌 5명에게 지급한 9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용도불명)로 사용하였다.²³⁰⁾

그리고 나서 DT는 2017. 6. 2. 강원도체육회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5명의 계좌에 각각 190,000원씩 이체하고 출력한 이체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DT는 강원도골프협회가 2013. 4. 5.부터 2017. 9. 15.사이에 진행을 맡았던 20개 골프대회 운영과정에서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교육청의 보조금 등 계 167,794,500원²³¹⁾을 재원으로 집행한 경기위원수당 등에서 [별표 30] “골프대회 경기위원수당 등 횡령 명세”와 같이 강원도체육회 보조금 12,570,000원,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920,000원 및 기타 지원금 3,140,000원 등 합계 16,630,000원²³²⁾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용도불명)로 사용하였다.

2) 협회 간사급여 횡령

강원도골프협회 임원 DU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0년 2월 경 DT에게 임원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협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임원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아는 사람을 간사로 등록하고 간사급여를 받아 활동비로 보태쓰라”고 얘기하였다.

229) 자신의 아내 DV, 아들 DW, 아들 친구 DX 및 강원도골프협회 직원 DY의 아들 DZ와 DY의 지인 EA

230) DT는 경기위원이 아닌 5명 중 DV, DW, DX로부터는 직접 각각 190,000원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한편, DY에게 “DZ와 EA에게 5. 10. 지급한 심판비를 돌려받아달라”고 지시하여 DY를 통해 DZ와 EA로부터 각각 190,000원씩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

231) 강원도체육회 76,601,000원, 강원도교육청 12,633,500원 기타 민간지원금 및 자부담 78,560,000원

232) 수령자로부터 본인이 직접 돌려받은 11,226,000원과 DY를 통해 돌려받은 5,404,000원의 합계액

이에 DT는 같은 달(날짜 모름) 강원도골프협회 임원으로 취임한 후 [표 43]과 같이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매달 900,000원씩²³³⁾,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매달 1,000,000원씩 계 92,300,000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DV에게 간사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증빙서류를 만들고 강원도골프협회가 각종 지원금 등 수입금을 관리하는 3개 운영비 계좌에서 97회에 걸쳐 92,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용도불명)로 사용하였다.

[표 43] 간사급여 횡령 명세

(단위: 원)

기간	월 수령액	총액	재원
2010년 2월~2013년 12월(47개월)	900,000	42,300,000	대한골프협회 지원금 및 시·군골프협회 분담금 등
2014년 1월~2018년 2월(50개월)	1,000,000	50,000,000	
합계	-	92,300,000	

주: DT가 2010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협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부인 DV의 명의로 간사급여를 매월 25~30일경에 현금으로 수령한 내역임

자료: 강원도골프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위 “1)·2)”항과 같이 DT는 경기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16,630,000원, 협회 간사급여 명목으로 92,300,000원 등 계 108,93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도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체육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강원도골프협회가 제출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와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233) 현재 강원도골프협회는 2013. 1. 1. 이후의 회계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그 이전의 회계서류는 남아있지 않음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강원도와 강원도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강원도골프협회에 DT가 횡령한 보조금의 반환과 DT 및 DU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고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단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강원도골프협회에 DT가 횡령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향후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성과평가 시 보조금 교부제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DT는 강원도골프협회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부인을 강원도골프협회 간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과 “1)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기위원수당 등 11,226,000원은 자신이 직접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강원도골프협회 직원 DY의 지인 등에게 지급한 5,404,000원은 감사원 감사 초기에는 DY를 통해 돌려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마지막 문답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DY는 DT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DT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뢰성이 없어 DT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DU는 “2)항”과 관련하여 DT에게 “강원도골프협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인 임원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아는 사람을 간사로 올리고 간사급여를 받아 활동비로 보태쓰라”고 얘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등에 따라 강원도골프협회에 교부한 보조금 중 DT가 횡령한 10,850,000원²³⁴⁾에 대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등에 따라 강원도골프협회에 교부한 보조금 중 DT가 횡령한 920,000원에 대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강원도체육회장은

①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8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횡령한 DT와 DT가 배우자 명의로 간사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DU를 강원도골프협회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DT와 DU를 「형법」 제356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앞으로 강원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에서 보조금 횡령 등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등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다 보조금 지원 제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부적정

대한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등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안정적 운영 및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인건비, 경기력향상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그 보조금을 다시 회원종목단체에 교부하는 등 [표 44]와 같이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34) DT의 횡령액 중 강원도의 보조금은 12,570,000원이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채권소멸시효(5년)가 도과한 1,720,000원(2014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임

[표 44] 2019년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 사업 개요

- 사업금액: 29,869백만 원
- 사업대상: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 사업내용:
 - ① 회원종목단체 행정 여건 개선 및 조직 운영 선진화 추진
 - ② 회원종목단체 등의 인건비, 경기력향상비, 행정보조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체육단체 운영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

「2017년 회원종목단체 등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지침」 3. II. 3.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횡령, (성)폭력, 비리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행정보조비, 경기력향상비 등 보조금을 삭감, 중단, 보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8~2019년 회원종목단체 관련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지침」 3. II. 3. 1. 등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횡령 등 보조금 및 자체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서는 행정보조비, 경기력향상비 등을 보류, 중단,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감액비율 등 구체적 제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징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임원 등의 비리행위 및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이 발생한 단체에 대해 당해 연도에 배정받은 경기력향상비 등 예산을 삭감, 중단,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징계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²³⁵⁾은 2017. 7. 10.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대한수영연맹 전 임원 EB에게 자격정지(5년) 처분을 하는 등 아래 [사례]와 같이 2017년 대한수영연맹 등 총 3개 회원종목단체²³⁶⁾의 임원을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하였다.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최종 징계 확정 사례

- ▶ (대한수영연맹)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7. 10. 대한수영연맹 전 임원 EB가 재직 당시인 2014년 3월~2015년 7월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기용 기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2,200만원)하였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처분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7. 10. 대한수영연맹 전 임원 및 국가대표 감독 EC가 재직 당시인 2009년 11월~2015년 8월 위 연맹 임원 ED 등으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및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정관 추천 등의 명목으로 금품수수(2,000만 원)하였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처분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7. 10. 대한수영연맹 전 임원 EE가 위 연맹 임원 및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선임 명목으로 위 연맹 임원 EF에게 청탁(236백만 원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처분
- ▶ (대한요트협회)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8. 22. 대한요트협회 전 임원 EG가 임원 재직 당시인 2008~2011년에 공금을 횡령(1,000만 원)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주)}
 주: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2017. 8. 22. 견책 처분 → 대한체육회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5. 1. 자격정지 1년 재처분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3. 21. 자격정지 1년 재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여 최종 견책 처분
- ▶ (대한승마협회)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4. 17. 대한승마협회 전 임원 EH가 구 전국승마연합회(2016년 2월 대한승마협회와 통합) 직원 재직 당시인 2015년 12월경 승마장 사업주로부터 금품(12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임원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부서 간에 제대로 공유²³⁷⁾하지 않은 채 [별표 31] “대한수영연맹 등 3개 단체의 2017~2019년 예산 집행 내역”과 같이 예산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대한수영연

235) 대한수영연맹 전 임원 EB 등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처분하였고, 대한승마협회 전 임원 EH, 대한요트협회 전 임원 EG는 대한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각각 징계처분함

236) 대한수영연맹, 대한요트협회, 대한승마협회

237) 회원종목단체 임원 징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과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 종목육성부 사이에 회원종목단체 임원 징계 현황 등이 공유되지 않음

맹 등 3개 단체에게 당해 연도에 배정받은 경기력향상비 등 예산을 삭감, 중단,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징계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배정²³⁸⁾할 때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대한체육회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징계 결과를 부서 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선수 및 지도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주무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한체육회장은 앞으로 임원 횡령 등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행정보조비 등을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38)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지원사업은 사업자(대한수영연맹 등)를 지정하고 경기력향상비 등의 예산액을 대한체육회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교부하고 있으므로 예산 신청액과 배정액이 동일함

별표 목차

[별표 1] 회원종목단체 현황	141
[별표 2] 가맹단체 현황	142
[별표 3] 시·도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	143
[별표 4] 장애인 국가대표에 대한 징계 현황	144
[별표 5] 카바디협회 촌외훈련비 등 부당 집행 현황	145
[별표 6] 바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비 등 교부·집행 내역	146
[별표 7] AG의 수당 등 교부·정산 현황	147
[별표 8] 바이애슬론 귀화선수 등의 한국계좌 개설 현황	148
[별표 9] 국가대표 튜멘 국외전지훈련과 관련한 숙식비 지급 현황	149
[별표 10] 인천협회의 촌외훈련비 세부지출 내역	150
[별표 11] 크리켓협회의 촌외훈련비 교부·집행 내역	151
[별표 12]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 위반 현황	152
[별표 13]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미실시 내역	153
[별표 14]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한 내역	156
[별표 15] 체육단체에 징계요구한 후 방치한 내역	158
[별표 16]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부당 등록 명세	161
[별표 17]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선수 부당 등록 명세	163
[별표 18] 징계양정기준 하한보다 낮게 징계처분한 현황	164
[별표 19] 범죄혐의 미고발 명세	167
[별표 20] 공공기관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명세	169
[별표 2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미통보 건에 대한 체육단체 징계 명세	170
[별표 22] 학교운동부의 비위지도자 등록·활동 명세	177
[별표 2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부당 처리 명세	179
[별표 24]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의 징계결정서 미통보 명세	181
[별표 25] 체육단체 간 지도자·임원 부당 등록·선임 명세	182
[별표 26]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현황	183
[별표 27]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근무 현황	188
[별표 28]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	189
[별표 29] 체육연금 지급정지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	190
[별표 30] 골프대회 경기위원수당 등 횡령 명세	191
[별표 31] 대한수영연맹 등 3개 단체의 2017~2019년 예산 집행 내역	194

[별표 1]

회원종목단체 현황^{주)}

연번	회원구분	단체명	연번	회원구분	단체명
1	정 회 원 단 체	대한검도회	38	정 회 원 단 체	대한에어로빅연맹
2		대한게이트볼협회	39		대한역도연맹
3		대한골프협회	40		대한요트협회
4		대한국학기공협회	41		대한우슈협회
5		대한궁도협회	42		대한유도회
6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43		대한육상연맹
7		대한근대5종연맹	44		대한자전거연맹
8		대한민국농구협회	45		대한조정협회
9		대한당구연맹	46		대한민국족구협회
10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47		대한철인3종협회
11		대한력비협회	48		대한체조협회
12		대한레슬링협회	49		대한축구협회
13		대한롤러스포츠연맹	50		대한카누연맹
14		대한루지경기연맹	51		대한컬링경기연맹
15		대한바둑협회	52		대한탁구협회
16		대한바이애슬론연맹	53		대한태권도협회
17		대한민국배구협회	54		대한택견회
18		대한배드민턴협회	55		대한테니스협회
19		대한보디빌딩협회	56		대한파크골프협회
20		대한복싱협회	5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21		대한볼링협회	58		대한펜싱협회
22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59		대한하키협회
23		대한빙상경기연맹	60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24		대한사격연맹	61		대한핸드볼협회
25		대한산악연맹	1	준 회 원 단 체	대한민국줄넘기협회
26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		대한카라테연맹
27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3		대한카바디협회
28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4		대한킥복싱협회
29		대한수영연맹	1	인 정 단 체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30		대한수중·핀수영협회	2		대한요가회
31		대한스쿼시연맹	3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32		대한스키협회	4		대한치어리딩협회
33		대한승마협회	5		대한특공무술중앙회
34		대한씨름협회	6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35		대한아이스하키협회	7		대한플로어볼협회
36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8		대한피구연맹
37		대한양궁협회			정회원단체 61개, 준회원단체 4개, 인정단체 8개, 합계 73개

주: 2019년 5월 기준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가맹단체 현황^{주)}

연번	회원구분	단체명	연번	회원구분	단체명
1	정가맹 단체 (종목별)	대한장애인골볼협회	22	정가맹 단체 (종목별)	대한장애인유도협회
2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3		대한장애인육상연맹
3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24		대한장애인조정연맹
4		대한장애인농구협회	25		대한장애인축구협회
5		대한장애인당구협회	26		대한장애인컬링협회
6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7		대한장애인탁구협회
7		대한장애인력비협회	28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8		대한장애인론볼연맹	29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9		대한장애인배구협회	30		대한장애인펜싱협회
10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1		정가맹 단체 (유형별)
11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12		인정단체	대한장애인볼링협회	1	대한장애인검도회
13			대한장애인사격연맹	2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14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3	대한장애인궁도협회
15			대한장애인수영연맹	4	대한장애인다트연맹
16			대한장애인스키협회	5	전국장애인바둑협회
17			대한장애인승마협회	6	대한장애인소프트볼야구협회
18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7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19			대한장애인양궁협회	8	대한장애인슬러협회
20			대한장애인역도연맹	9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21	대한장애인요트연맹		정가맹 단체 32개(종목별 30개, 유형별2개), 인정단체 9개, 합계 41개		

주: 2019년 5월 기준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시·도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현황^{주)}

연번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 시·도장애인체육회	회장
1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EI
2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EJ
3	대구광역시체육회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EK
4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EL
5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EM
6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EN
7	울산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EO
8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EP
9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EQ
10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ER
11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ES
12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ET
13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EU
14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EV
15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EW
16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EX
1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Y

주: 2019년 5월 기준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장애인 국가대표에 대한 징계 현황

연번	연도	단체명	성명 (직책)	사유	처분결과	소송 결과	처분일자	(성)폭행 관련
1	'16	대한장애인 역도연맹	-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줌	자격정지 (10개월)	화해권고 (법원)	'18. 4. 18.	○
2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	여성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한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자격정지 (1년)	-	'17. 11. 23.	○
3			-	상습적으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구타를 함	영구 제명	-	'16. 12. 4.	○
4			-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을 함	영구 제명	-	'16. 12. 4.	○
5		대한장애인 아이스하키협회	-	훈련용품 착복 및 보조금 카드 남용 의혹 등으로 자진 사임	경고 (자진 사임)	-	'16. 7. 7.	×
6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	'15년 호주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 참가 시 카지노 출입·도박으로 선수 품위 손상	주의	-	'18. 1. 26.	×
7	'17	대한장애인 볼링협회	-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및 성추행을 함	엄중 경고	-	'17. 9. 5.	○
8		대한장애인 조정연맹	-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욕설과 성추행을 하고, 국가대표 지도자를 대상으로도 성추행	자격정지 (6개월)	공판 진행 중	'17. 7. 24.	○
9		대한장애인 배드민턴협회	-	선수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 등으로 체육인 품위 손상	견책	-	'17. 6. 13.	×
10			-	FH 감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체육인 품위 손상	견책	-	'17. 6. 13.	×
11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	국가대표 지도자 무자격자로서 '15~'16년 국가대표 코치로 선발	영구 제명	-	'17. 10. 28.	×	
12	'18	대한장애인 육상연맹	-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함	진행 중	-	-	○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5]

카바디협회 촌외훈련비 등 부당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대한체육회 교부액	정산 서류상 집행액 (A)	정당 집행액 (B)	부당 집행액 (A-B)
2015년	숙박비	167,840	158,290	104,178	54,112
	급식비	150,309	146,668	105,169	41,499
	훈련수당	348,348	348,348	227,496	120,852
	소계	666,497	653,306	436,843	216,463
2016년	숙박비	157,200	157,200	105,602	51,598
	급식비	140,975	140,975	102,975	38,000
	훈련수당	337,986	337,788	235,272	102,516
	소계	636,161	635,963	443,849	192,114
2017년	숙박비	157,200	157,200	106,879	50,321
	급식비	205,608	205,484	152,619	52,865
	훈련수당	458,884	458,884	381,658	77,226
	소계	821,692	821,568	641,156	180,412
2018년	숙박비	132,460	128,820	90,258	38,562
	급식비	181,892	180,995	136,581	44,414
	훈련수당	418,164	418,164	381,450	36,714
	소계	732,516	727,979	608,289	119,690
합계	숙박비	614,700	601,510	406,917	194,593
	급식비	678,784	674,122	497,344	176,778
	훈련수당	1,563,382	1,563,184	1,225,876	337,308
	계	2,856,866	2,838,816	2,130,137	708,679

자료: 카바디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6]

바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비 등 교부집행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주)}	2017년	2018년	계
교부액 (A)	외국인코치 수당	54,900	131,200	155,750	276,000	65,621	683,471
	국가대표 수당 (선수, 지도자)	400,060	510,870	561,210	531,922	522,114	2,526,176
	국외전지훈련비	456,226	702,675	431,390	683,940	359,409	2,633,640
	계	911,186	1,344,745	1,148,350	1,491,862	947,144	5,843,287
집행액 (B)	외국인코치 수당	54,900	131,200	153,592	276,000	61,956	677,648
	국가대표 수당 (선수, 지도자)	399,310	510,870	556,630	378,600	522,114	2,367,524
	국외전지훈련비	451,138	676,743	431,171	667,404	336,844	2,563,300
	계	905,348	1,318,813	1,141,393	1,322,004	920,914	5,608,472
반납액 (A-B)	외국인 코치 수당	-	-	2,158	-	3,665	5,823
	국가대표 수당 (선수, 지도자)	750	-	4,580	153,322	-	158,652
	국외전지훈련비	5,088	25,932	219	16,536	22,565	70,340
	계	5,838	25,932	6,957	169,858	26,230	234,815

주: 2016년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교부 및 정산

자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바이애슬론연맹 자료 재구성

[별표 7]

AG의 수당 등 교부·정산 현황

(단위: 원)

연번	적요	귀속 연월	대한체육회 정산보고액 (A)	AG 실 지급액 (B)	부당 수령액 (A-B)	비고
1	알비 및 간식비	2014년 4월	960,000	-	960,000	미지급
2	포상금	2014년 7월	2,000,000	-	2,000,000	미지급
3	수당 (850만 원/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 (7개월분)	59,500,000	23,019,770	36,480,230	AG 명의를 한국계좌에 입금한 7개월분 수당 중 5개월분 수당 일부만 외국계좌로 재송금 (3,500유로/월)
4	수당 (880만 원/월)	2015년 10월~ 12월(3개월분)	26,400,000	-	26,400,000	AG 훈련 미참여
합계			88,860,000	23,019,770	65,840,230	

주: 실지급액은 AG 외국계좌 송금액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8]

바이애슬론 귀화선수 등의 한국계좌 개설 현황

연번	구분	이름	생년 월일	귀화 허가일자	한국계좌 개설일자	통장 인감	통장 서명	비고
1	귀화 선수	AM	1993. 3. 24.	2016. 3. 31.	2015. 5. 19.	AF	-	
2		AW	1984. 1. 11.	2016. 3. 31.	2015. 9. 30.	AF	-	
					2018. 6. 14.	AF	-	
					2017. 12. 28.	미상		기부금 통장
3		AO	1990. 10. 26.	2016. 12. 30.	2017. 1. 5.	-	-	
4	AV	1988. 2. 3.	2017. 2. 27.	2017. 2. 27.	AF	-		
5	외국인 전문가	AN	1979. 9. 12.	-	2016. 6. 27.	-	○	
6		AX	1982. 11. 13.	-	2017. 6. 5.	-	○	
7		AY	1997. 12. 30.	-	2018. 6. 14.	-	○	
8		AZ	1978. 5. 7.	-	2016. 6. 27.	-	○	
9	전담팀	BA	1987. 3. 26.	-	2018. 6. 14.	-	○	

주: 인감과 서명 중 어느 하나로 자금인출이 가능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9]

국가대표 튜멘 국외전지훈련과 관련한 숙박비 지급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훈련명	'15 국가대표 맞춤형 지원사업(3차)	'16/'17시즌 국가대표 전지훈련	'17시즌 국가대표 전지훈련	'18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훈련기간(A)	(10. 7.~11. 1.) 25박	(10. 13.~11. 14.) 32박	(10. 13.~11. 7.) 25박	(10. 11.~11. 7.) 27박	
인원(B)	21	21	26	12	
숙박비 결제	BC 계좌로 송금	BC 단말기에 카드결제			
숙박 장소	▷▷ 호텔 ¹⁾				
영수증상 가맹점명	◀◀	◆◆	◁◁	&&	
지급금액(C)	74,382,000	95,099,482	94,990,472	26,357,090	290,829,044
숙식 연인원(D=AxB)	525	672	650	324	
2014년 기준 1일 1인당 숙박비(E)	42,361	42,361	42,361	42,361	
2014년 기준 재산정 숙박비(F=DxE)	22,239,525	28,466,592	27,534,650	13,724,964	91,965,731
차액(C-F)	52,142,475	66,632,890	67,455,822	12,632,126	198,863,313

주: 1. 4개 훈련 모두 풀보드로 숙식
 자료: 바이애슬론연맹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0]

인천협회의 촌외훈련비 세부지출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비목	세부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¹⁾	합계	집행의 적정성
1	숙박비	인재개발원, 호텔 등	21,992	-	-	-	21,992	인정
2	관리비	통신, 전기·수도료 등 숙소관리비	28,004	22,932	27,216	21,092	99,244	인정
3	시설비	시설 임대료 및 장비 등 관리비	122,304	71,916	72,524	44,560	311,304	인정
		운동장 사용료(A)	4,890	4,410	5,135	-	14,435	부당의심
4	식비	조리사(FK) 인건비 및 식자재비	118,648	154,782	171,682	12,735	457,847	인정
5	운영비	국가대표 간식비 및 소모성 경비 등	38,143	22,162	53,007	9,235	122,547	인정
6	인건비	경기장 관리 및 행정보조 인건비	31,439	49,669	62,844	16,800	160,752	인정
		협회 직원 인건비(B)	17,019	28,140	2,417	-	47,576	부당
		국제대회 출선수당(C)	2,824	-	-	-	2,824	부당
7	행사운영비	행사 및 교육(D)	12,104	11,430	5,917	660 ²⁾	30,111	부당의심
합계			397,367	365,441	400,742	105,082	1,268,632	
목적 외 집행 의심액(A+B+C+D)			36,837	43,980	13,469	-	94,286	
미반납 이월 집행액			-	-	-	103,827	103,827	
부당의심 금액 합계			36,837	43,980	13,469	103,827	198,113	

주: 1.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크리켓이 정식 종목에서 제외되어 2018년부터 촌외훈련비 등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했으므로 2018년 집행한 금액 중 자부담한 1,255천 원을 제외한 전액(103,827천 원)을 부당 금액으로 계산

2. 행사운영비 660천 원은 중복되므로 목적 외 집행액 합계에서 제외하고 2018년도 미반납 이월 집행액에 포함하여 계산

자료: 인천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1]

크리켓협회의 촌외훈련비 교부집행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크리켓협회			→	인천협회		
	대한체육회 교부금액	대한체육회 정산금액	차액 반납		크리켓협회에서 받은 금액	지출한 금액	차액 적립
	(A)	(B)	(A-B)		(C)	(D)	(C-D)
2015년	432,815	414,665	18,150	→	414,665	397,367	17,298
2016년	394,524	390,954	3,570	→	390,954	365,441	25,513
2017년	496,860	473,919 ^{주)}	22,941	→	461,757	400,741	61,016
합계	1,324,199	1,279,538	44,661		1,267,376	1,163,549	103,827

주: 크리켓협회는 2017년 촌외훈련비 중 12,162천 원(473,919천 원-461,757천 원)을 인천선수촌 입촌에 따라 숙박비 등으로 직접 집행함

자료: 크리켓협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2]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절차 위반 현황

연번	종목	공개공고 미실시			위원회 미개최			서면결의			지도자경력 미흡 (감독 5년, 코치 2년 이상)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	골프	-	-	미실시	-	-	-	-	-	-	-	-	-
2	탁구	미실시	-	-	-	-	-	-	-	-	-	-	-
3	테니스	미실시	-	-	미개최	-	-	-	-	-	-	-	-
4	배구 (비치발리볼)	-	-	-	미개최	미개최	미개최	-	-	-	BO (감독)	-	-
5	복싱	-	-	-	-	-	미개최 (재임용)	-	-	-	-	-	-
6	스쿼시	-	-	-	-	-	-	서면결의	서면결의	서면결의	-	-	-
7	바이애슬론	-	-	-	-	-	-	-	서면결의	-	-	AF (감독)	-
8	역도	-	-	-	-	-	-	-	-	서면결의	-	-	-
9	근대5종	-	-	-	-	-	-	-	-	-	-	-	BU (코치)
10	루지	-	-	-	-	-	-	-	-	-	-	BW (코치)	-
11	빙상	-	-	-	-	-	-	-	-	-	F (코치)	F (코치)	-
12	체조	-	-	-	-	-	-	-	-	-	-	-	BX (코치)
13	핸드볼	-	-	-	-	-	-	-	-	-	BV (코치)	-	-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3]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미실시 내역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현 소속)	질문서 답변 및 확인 내용	비고
1	'16. 3. 3. (500)	문체부 (문체부)	대한태권도협회 임원 BY는 임원 FL 및 직원 FM과 공모하여 '07년부터 '16년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매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의 신문 광고 및 구독 관련 허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음(횡령)	신고사항 미처리 (현 소속: ★★신문 발행인)	당시 수사 중이라 미처리	재판결과 확인하여 징계 또는 종결 처리 필요
2	'16. 6. 30. (573)	문체부 (문체부)	동해시아구연합회 전 임원 FN은 시 보조금 횡령('14년 7월)으로 고소되었으나 항소 과정에서 동해시생활체육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쪽 모두 보조금 횡령자로 의심됨(횡령)	신고사항 미처리 * 감사기간 중 확인결과 임원 FN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동해시체육회는 FN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 없다고 주장 (현 소속: 없음)	당시 민원인이 추가자료 미제출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3	'16. 4. 7. (513)	대한체육회 (문체부)	대한레슬링협회 임원 FO가 협회 사무국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확정 전에 임원 FP가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FP를 직 무정지시켰으며, '15년 11월 선수육성금 4,000만 원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16년 2월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시·도 대의원 및 임원에게 보내는 등 협회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조직 사유화)	대한체육회에서 '16. 5. 31.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현 소속: 확인불가)	미처리사유 확인불가	조사·처리 필요
4	'16. 5. 23. (535)	대한체육회 (문체부)	전국씨름연합회 직원 BZ가 자신의 친형에게 각종 대회의 씨름장 설치를 맡긴 후 설치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각 시·도연합회가 자신의 지시에 불응하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09년부터는 매년 시·도연합회 사무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카드깡, 보조금 편법사용 방법을 교육시킴(행위일자 모름)(횡령)	대한체육회에서 '16. 5. 23.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현 소속: 대한씨름연합회 임원)	미처리사유 확인불가	조사·처리 필요

연 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현 소속)	질문서 답변 및 확인 내용	비고
5	'17. 9. 25. (746)	대한체육회 (문체부)	대한체조협회에서 '17년도 아시아선수권대회(주니어) 파견대표선발전 내용(선발기준 포함)을 규정에 위반되게 개최일 13일전에 공지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은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기회조차 갖지 못함(기타)	대한체육회에서 '17. 10. 25.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미처리사유 확인불가	조사·처리 필요
6	'14. 7. 16. (159)	대한스키협회 (문체부)	<p>▣▣중고등학교 스노보드팀 코치 FQ는 '09년부터 '14년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가면서 학생 1인당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징수하여 지출하고서도 학부모의 정산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만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고, 연도별 학생수와 구입한 장비개수가 일치하지 않음(횡령)</p>	<p>대한스키협회로부터 “강원도교육청이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여 실지감사 예정”이라는 답변만 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17년 3월 종결처리</p> <p>* 감사기간 중 강원도교육청 확인결과, FQ는 ◆◆고 학생을 ▣▣고 스노보드부 훈련에 참가시키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가 강원도교육청 감사결과('14년) 확인되어 '14. 9. 19. 사직처리 되었음</p> <p>* 현재 △△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현 소속: ○○협회 감독)</p>	강원도교육청 이 감사예정이라는 답변만 받고 미처리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7	'14. 8. 18. (171)	부산광역시 교육청 (문체부)	'13. 6. 19. ○○고 축구부 1학년, 2학년이 ○○중학교와 연습경기에서 8:0으로 패하자, 감독과 코치가 3학년을 질책, 이에 3학년 3명이 1, 2학년 19명을 한명당 35대씩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였는데, ○○고 학교폭력위원회는 구타한 3학년 학생에게 자원봉사 5일 조치만 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함(폭력)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14. 9. 19.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른 부서에서 신고인에게 이미 답변하였다”는 회보를 받고, 폭력에 관한 조사·처리내용이 없는데도 종결처리	부산시교육청 에서 기초치했다는 내용만 확인 후 미처리한 것으로 추정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8	'16. 12. 15. (675)	경기도 체육회 (문체부)	'16년도 수원시장기 태권도대회 개인품새 종목과 관련하여 정식 품새심판이 아닌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이 심판을 보면서 편파판정을 하였음(편파판정)	경기도체육회에서 '16. 12. 26.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미처리사유 확인불가	조사·처리 필요

연 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현 소속)	질문서 답변 및 확인 내용	비고
9	'17. 1. 5. (683)	경상남도 체육회 (문체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상남도태권 도협회 직원 VS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 VT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 로 매월 120만 원씩 입금시켜주 면서 가짜 영수증을 짜 맞추기 하는 등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으며, 임의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월권을 하였고, 임원 VU 당선 을 돕는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고 선거에 개입하였음 또한, VS는 경상남도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종료('16년 7월) 이후 집행권자의 사전결재 없이 사적 인 용도로 공금을 집행한 의혹이 있음(횡령)	경상남도체육회에서 '17. 1. 12. 이첩받은 신고사항 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 이 방치 (현 소속: 경상남도태권도 협회 임원)	미처리사유 확인불가	조사·처리 필요
10	'17. 6. 7. (722)	경상북도 체육회 (문체부)	울진군태권도협회 직원 VX는 예 산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있으며, '17년 도 민체전 울진군대표 선수를 임의 로 선발하였고, '16년 도민생활 체육대축전 당시 계체량측정 및 경기진행도 없이 준우승을 하였 다는 의혹이 있으며, '17년 도민 체전 대비 선수 동계훈련 보조금 을 횡령(훈련을 진행하지 않았음) 한 혐의도 있고, 도민체전 선수 선발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지역 태권도 관장을 폭행한 사실이 있 는 등 여러 가지 권력남용 의혹 이 있음(조직 사유화)	경상북도체육회에서 '17. 6. 13. 이첩받은 신고사항 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 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현 소속: 연락두절, 확인 불가)	미처리사유 확인불가	조사·처리 필요

자료: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4]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한 내역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 여부 ^{*)} (현 소속)	비고
1	'14. 4. 21. (102)	문체부 (문체부)	대한택견연맹 및 전국택견연합회 임원 CA가 다른 사람이 회장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협박하여 출마를 못하게 하였고, 직원임금 및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알 수 없음(횡령)	경찰청으로부터 '14. 11. 11. "대한택견연맹 및 전국택견연합회 임원 CA 등이 '08년부터 '14년까지 경기력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08년 1월부터 '14년 5월까지 순회코치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등이 보관하던 경남택견연맹 전무이사 등 11명의 통장(도장, 비밀번호)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3억 8,200만 원)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도 '14. 11. 13.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현 소속: 없음)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2	'14. 7. 11. (157)	문체부 (문체부)	사격국가대표 선수단 FR이 '03년부터 '13년까지 매년 태국에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면서 클레이사격 실제 훈련일수를 계획한 것보다 축소하여 실태비 차액을 착복(횡령)	경찰청으로부터 '15. 7. 8. "FR 등이 '07년부터 '13년까지 전지훈련 체재비에서 8억여 원을, 국내 총외훈련에서는 숙박업체 및 식당의 결제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4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15. 8. 20.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2급전문스포츠지도사) (현 소속: 없음)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다만,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을 받은 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및 제1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여부 검토 필요
3	'14. 11. 26. (253)	문체부 (문체부)	○○대학교 유도부 감독 FS가 상대 학교 감독과 짜고, 유도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본인의 아들 FT를 '13년 추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우승하게 함(승부조작)	경찰청으로부터 "○○대학교 유도부 감독 FS는 본인의 아들이 시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상대팀 감독들에게 저달라고 부탁하여 '13년 ▲중고유도연맹전에서 우승하였으며, 위 실적으로 ○○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4. 12. 16.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는 등 승부조작 사실을 확인하고도 '14. 12. 16.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2급전문스포츠지도사), ('16. 7. 1. 업무방해죄로 벌금 2천만원 확정, 근거: 부산지검 '19. 5. 29. 발급 형사재판확정증명원) (현 소속: 없음)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여부 검토 필요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 여부 ^주) (현 소속)	비고
4	'15. 2. 25. (312)	문체부 (문체부)	'14년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에서 감독관이 사전에 배정되지 않은 자를 심판으로 배정하고, 대회 후 위 심판에게 1급 심판자격을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140만 원을 수수함(횡령)	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 임원 FU가 '12년 11월 대회 중 자격증 발급비용 21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여 '15. 6. 1.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 * 감사기간 중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위 사람은 '16. 8. 12. 횡령 혐의로 벌금 70만 원 확정(현 소속: ●●연맹 심판위원장)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5	'15. 4. 7. (341)	문체부 (문체부)	경기도수영연맹 회장 FV 등이 '14년 경기도 교육감배 대회에서 심판복을 협찬받고도 구입한 것처럼 200만 원을 지출처리 하는 등 허위 정산처리함(횡령)	경기도수영연맹 임원 FV가 '13년부터 '14년까지 위 연맹 등에서 개최한 10개 대회에 필요한 심판복 480벌을 ●●스포츠에서 협찬받고도 ■■스포츠에서 구입한 것처럼 '14년 11월 경기도체육회 등에 허위로 정산보고(1,100만원)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자 3명을 횡령 혐의로 '16. 5. 31.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현 소속: 없음)	조사-처리 필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제1항 제10호에는 횡령 등으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징계실익이 있음
6	'15. 4. 29. (362)	문체부 (문체부)	대한장애인승마협회 직원 FW가 '14년 1월부터 '15년 3월까지 보조금 4,000만여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한 후 횡령한 사실을 위 협회가 확인하여 변제 서약까지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음(횡령)	대한장애인승마협회 직원 FW의 횡령자백 자술서를 확인하여 '15. 6. 1. 횡령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종결처리	조사-처리 필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 제1항 제10호에는 횡령 등으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징계실익이 있음
7	'16. 9. 25. (633)	문체부 (문체부)	제주도축구협회 임원 FX, 직원 FY 등 임직원 4명은 '07년부터 '12년까지 심판 참여 횡수를 부풀려 심판비를 과다수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6년간 1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를 모두 폐기함(횡령)	신고인이 '16. 10. 11. 신고를 취하(신고인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하여 조사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하자 내버려두다가 “위 임직원들 중 FY가 '17. 12. 27.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백만 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주도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도 징계요구 없이 '18. 11. 23. 종결처리(현 소속: ■■■대 행정팀장)	행위일로부터 5년 경과

주: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 여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와 신고서류 등으로 확인
 자료: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5]

체육단체에 징계요구한 후 방치한 내역

연 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및 징계요구사유 (현 소속)
1	'15. 8. 6. (411)	대한탁구협회 (문체부)	<p> <input checked="" type="checkbox"/>중고등학교 탁구부 전임코치 FZ와 탁구부 감독교사 GA가 '10년부터 '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생선수 7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교발전기금, 후원금 등을 횡령하였음(횡령) </p>	<p>대한탁구협회에서 '16. 1. 29. 문체부로부터 <input checked="" type="checkbox"/>중고등학교 탁구부 전임코치 FZ를 중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FZ가 퇴직하였다는 사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p> <p>(징계요구사유): FZ가 '10년부터 '15년까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중학교와 <input checked="" type="checkbox"/>고등학교 소속 선수 6명의 머리카를 잡고 끌고다니며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GA는 '13년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중학교 탁구선수 1명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15년 5월경 실업팀과 계약을 체결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고등학교 3학년 GB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여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Z에게 전달하였고, FZ는 이 중 1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GB의 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자 되돌려 주었으며 FZ는 '12년부터 '14년까지 선수들이 전국체전 등에 입상하여 받은 상금 466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였고, 일반인 탁구동호회와 운동을 같이 한 후 받은 후원금 2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FZ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동시에 수사외회)</p> <p>* GA는 교육부에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재단에 해임요구하였으나 <input checked="" type="checkbox"/>재단 상벌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처분하고 현재까지 근무 중</p> <p>(현 소속: FZ 확인불가)</p>
2	'15. 11. 2. (442)	대한수영연맹 (문체부)	수영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 GC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지도자('15년 1~12월)로 선발되었다는 의혹이 있음(기타)	<p>대한수영연맹에서 '16. 8. 30. 문체부로부터 GC 코치를 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p> <p>(징계요구사유): GC 코치가 고등학교에서 제적되었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대한수영연맹에 허위 학력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p> <p>(현 소속: 없음)</p>
3	'15. 11. 2. (447)	대한수영연맹 (문체부)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 GD가 '11. 12. 20. 본인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GE 선수(당시 17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 1학년)에게 성인물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징계 조치하지 않고 감독직 사퇴로만 종결하였음(성희롱)	<p>대한수영연맹에서 '16. 8. 29. 문체부로부터 GD를 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p> <p>(징계요구사유): GD가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사진을 전송한 사실, 감독직 사퇴만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현 소속: □□□교육지원청 전임지도자)</p>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및 징계요구사유 (현 소속)
4	'16. 1. 13. (476)	경상북도 체육회 (문체부)	■■시육상연합회장 GF가 ▲▲당 경산·청도 중앙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구 국민생활체육회와 경상북도육상연합회에서 발급하지 않은 상장을 위조하여 수여하였다는 의혹이 있음(기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16. 6. 7. 문체부로부터 GF 회장을 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GF는 '14년 1월부터 ■■■시육상연합회장직을 맡아오면서 같은 해 7월부터 ▲▲당 경산·청도 중앙위원장직을 함께 맡아 「국민생활체육회 윤리강령」 제12조를 위반하였으며 '14년 2월에는 전국육상연합회와 경상북도육상연합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표창패와 상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현 소속: 없음)
5	'16. 4. 7. (512)	대한공도협회 (문체부)	파주▲▲정(활터) 사투 GH는 '15년 4월 개인적인 감정으로 GI 회원에게 화살을 발사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파주시공도협회는 GH를 근거불충분으로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GI 회원을 ▲▲정에서 제명 처리한 GH에게 반발한 임원 5명을 징계하였음(기타)	대한공도협회에서 '16. 6. 2. 문체부로부터 GH를 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GH가 GI 회원에게 화살을 발사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파주시 공도협회는 GH를 징계하지 않고 GH에게 반발한 임원을 부당징계한 사실이 있음(현 소속: 없음) * '17. 2. 9. 파주▲▲정에서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한체육회 소속 공도협회 또는 지회의 징계조치가 아님
6	'16. 5. 11. (530)	대한체육회 (문체부)	경상북도 문경시 ▲▲중학교 씨름단 감독 GJ가 '16년도 증평인삼배 전국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하였으며, 상주지역 후배 지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함(승부조작)	대한체육회에서 '16. 11. 28. 문체부로부터 GJ 감독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하도록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GJ가 '16년도 증평인삼배 전국씨름대회 당시 자신의 제자인 상주 ○○초등학교 감독 GK에게 ○○초등학교 선수를 대회에 출전시키지 말라고 강요하고, ○○초등학교를 밀어주자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사실, '15년 3월경 GJ가 ○○초등학교 GK 감독, ●●초등학교 VW 감독, ▶▶고등학교 씨름부 학생 2명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현 소속: 확인불가)
7	'16. 7. 12. (582)	대한펜싱협회 (문체부)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시청 펜싱팀 감독 GL(당시 대한펜싱협회 임원 겸직)이 처벌 없이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기타)	대한펜싱협회에서 '16. 11. 7. 문체부로부터 GL을 중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GL이 사직하였다는 사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GL 감독이 '09. 12. 30. GM 선수를 영입하면서 실제 지급하지 않은 스카우트비 1,500만 원을 GM 선수가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시로부터 1,365만 원을 교부받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13. 12. 20. GN 선수를 영입하면서도 스카우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기 혐의로 '16. 5. 3.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현 소속: ▲▲시청 펜싱팀 감독)

연번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관 (신고접수기관)	신고내용(비위유형)	부당처리내용 및 징계요구사유 (현 소속)
8	'16. 10. 18. (642)	대한카누연맹 (문체부)	카누 스프린트 국가대표 지도자 GO가 국가대표팀 훈련비를 카드깡 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있음(횡령)	대한카누연맹에서 '18. 11. 1. 문체부로부터 GO가 증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대한카누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사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GO가 '16년 6~9월 강원도 화천과 충남 부여에서 식비와 숙박비를 국가대표 훈련비 카드로 결제하고 실제 사용액과의 차이가 17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선수 생활용품, 간식, 약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대한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17. 3. 27.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징계요구를 1년 이상 지체하여 '18. 11. 1. 대한카누연맹에 통보하였음(현 소속: 카누국가대표팀)
9	'16. 12. 5. (670)	안성시체육회 (문체부)	안성시태권도협회 임원 GP가 45년간 장기집권하면서 협회 임원에 자신의 아들과 지인을 임명하는 등 조직을 사유화하고, '16년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을 참가한 것처럼 속여서 예산을 유용한 정황이 있음(조직 사유화)	안성시체육회에서 '17. 4. 20. 문체부로부터 임원 GP를 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GP가 고령(72세)이고 암투병 중이며 이미 사임하였다는 사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안성시태권도협회가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16. 4. 28.~4. 29.)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 4명에 대해 단체복, 식비 등 104만 원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였으며 임원 GP는 자신의 아들을 총무로 임명하고 측근을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하여 장기간 연임해온 사실이 있음(현 소속: 없음)
10	'18. 1. 19. (758)	대한파크골프협회 (문체부)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 CB가 취임 후 '17년 12월경 특정인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이사로 앉히고 사무처장의 출근을 막는 등 갑질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조직 사유화)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18. 7. 9. 문체부로부터 임원 CB를 징계하도록 통보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사후관리 없이 방치 (징계요구사유):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위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의결된 직원 CC를 파면이 아닌 사직처리하도록 지시하고 7,377,398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현 소속: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

자료: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6]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부당 등록 명세

연번	성명	종목	징계내역			정당 등록 제한기간 ^{주)}	등록 및 활동현황			비고
			징계 당시 소속/직위	비위 유형	징계 결과		등록일 (등록단체)	등록 당시 소속/종목/직위	활동현황 (대회 참가 등)	
1	CT	축구	♡♡초 /코치	폭력	'17. 8. 21. 자격정지 1년 6개월	영구	'19. 1. 21. (대한축구협회)	♡♡초 /축구/감독	-	등록 취소
2	-	아이스 하키	-	질서 문란	'14. 2. 21. 자격정지 1년	'14. 2. 21. ~ '14. 9. 5. (징계해제)	'14. 6. 23. (대한아이스 하키협회)	-	-	-
3	-	아이스 하키	-	질서 문란	'14. 2. 21. 자격정지 1년	'14. 2. 21. ~ '15. 1. 20. (징계해제)	'14. 6. 19. (대한아이스 하키협회)	-	-	-
4	-	배구	-	질서 문란	'15. 10. 16. 자격정지 1년	'15. 8. 5. ~ '16. 8. 4.	'16. 3. 30. (대한민국 배구협회)	-	'16 천년의빛 영광배	-
5	-	력비	-	질서 문란	'17. 5. 8. 자격정지 1년 2개월	'17. 5. 8. ~ '19. 1. 30.	'18. 3. 9./ '19. 3. 13. (대한력비협회)	-	'18 대통령기 등 4개 대회	-
6	-	유도	-	질서 문란	'16. 11. 28. 자격정지 1년	'16. 11. 28. ~ '19. 1. 30.	'17. 2. 10./ '18. 3. 12. (대한유도회)	-	-	-
7	-	검도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4. 1. 14. 자격정지 6개월	'14. 1. 14. ~ '14. 7. 13.	'14. 4. 14. (대한검도회)	-	-	-
8	-	하키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7. 11. 13. 자격정지 6개월	'17. 11. 13. ~ '18. 5. 12.	'18. 3. 30. (대한하키협회)	-	-	-
9	-	력비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7. 7. 20. 자격정지 1년 6개월	'17. 7. 20. ~ '19. 1. 30.	'18. 4. 16. (대한력비협회)	-	'17 대통령기 등 2개 대회/ '18 대통령기 5개 대회	-

연번	성명	종목	징계내역			정당 등록 제한기간 ^{주)}	등록 및 활동현황			비고
			징계 당시 소속/직위	비위 유형	징계 결과		등록일 (등록단체)	등록 당시 소속/종목/직위	활동현황 (대회 참가 등)	
10	-	력비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7. 7. 20. 자격정지 1년	'17. 7. 20. ~ '19. 1. 30.	'18. 3. 7. (대한력비협회)	-	'17 문체부장관기 등 2개 대회/ '18 대통령기 등 4개 대회	-
11	-	유도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7. 3. 13. 자격정지 1년	'17. 3. 13. ~ '19. 1. 30.	'18. 2. 12./ '19. 2. 14. (대한유도회)	-	'18 전국체전	-
12	-	유도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7. 3. 13. 자격정지 1년	'17. 3. 13. ~ '19. 1. 30.	'17. 5. 10./ '19. 3. 12. (대한유도회)	-	-	-
13	-	빙상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6. 11. 24. 자격정지 1년	'16. 11. 24. ~ '19. 1. 30.	'19. 1. 10. (대한빙상 경기연맹)	-	'19 동계체전	-
14	-	레슬링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6. 9. 26. 자격정지 6개월	'16. 9. 26. ~ '17. 3. 25.	'17. 2. 13. (대한레슬링협회)	-	-	-
15	-	레슬링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6. 9. 26. 자격정지 6개월	'16. 9. 26. ~ '17. 3. 25.	'17. 2. 13.	-	-	-
16	-	레슬링	-	직권 남용 /직무 태만	'16. 9. 26. 자격정지 6개월	'16. 9. 26. ~ '17. 3. 25.	'17. 3. 21. (대한레슬링협회)	-	-	-
17	-	스키	-	품위 훼손	'17. 4. 10. 자격정지 1년	'17. 4. 10. ~ '19. 1. 30.	'19. 1. 15. (대한스키협회)	-	'19 동계체전	-
18	-	레슬링	-	기타	'18. 10. 24. 자격정지 6개월	'18. 10. 24. ~ '19. 4. 23.	'19. 2. 28. (대한레슬링협회)	-	-	-

주: 2019. 1. 13.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징계
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 등록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위 사유로 인해 징계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등록
이 제한되고 있었던 자의 경우 2019. 1. 31.부터 등록 가능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7]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선수 부당 등록 명세

연번	성명	종목	징계내역			정당 등록 제한기간	등록 및 활동현황			비고
			징계 당시 소속/직위	비위 유형	징계 결과		등록일 (등록단체)	등록 당시 소속/종목/직위	활동현황 (대회참가 등)	
1	-	배구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전문체육위원	국가대표 부당 선발	'17. 10. 28. 제명	영구	'18. 8. 13.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	'18 국내대회 (3회)/ '18 전국체전	등록 취소
2	-	양궁	경북장애인 양궁협회 /선수·지도자	성희롱	'18. 5. 25. 자격정지 30개월	영구	'18. 8. 17. '19. 1. 15. (대한장애인 아이스하키협회)	-	'19 동계체전	등록 취소
3	-	축구	대한장애인 축구협회 /지도자	대회규정 위반 경기장 이탈	'18. 1. 23. 자격정지 12개월	'18. 1. 23. ~ '22. 1. 22.	'18. 3. 22. '19. 3. 14. (대한장애인 축구협회)	-	-	등록 취소
4	CU	컬링	대한장애인 컬링협회 /선수	성추행	'15. 10. 13. 제명	영구	'16. 3. 2. '17. 3. 31. '18. 6. 25. (대한장애인 농구협회)	♣♣드림 /농구/선수	-	등록 취소
							'16. 3. 21. '17. 4. 17. (대한장애인 육상연맹)	♣♣시 장애인복지관 /육상/선수	'16 전국체전/ '17 전국체전	
5	-	탁구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선수·지도자	승부조작	'15. 8. 26. 자격정지 12개월	영구	'18. 7. 2. '18. 7. 3. '19. 2. 26.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	-	등록 취소

자료: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8]

징계양정기준 하한보다 낮게 징계처분한 현황

연번	징계처분 단체명	징계대상자			비위 내용	징계처분일	징계처분 내용	징계양정기준 하한
		성명	당시 소속	직위				
1	대한파크 골프협회	CV	전라남도 파크골프 협회	선수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2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전국대회 6개월 출전 금지	자격정지 등 3년
3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4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전국대회 6개월 출전 금지	자격정지 등 3년
5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전국대회 6개월 출전 금지	자격정지 등 3년
6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7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8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9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10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11	대한파크 골프협회	-	-	-	스코어 조작	'17. 8. 7.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12	대한복싱 협회	-	-	-	제주도민체전 승부조작	'17. 10. 3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연번	징계처분 단체명	징계대상자			비위 내용	징계처분일	징계처분 내용	징계양정기준 하한
		성명	당시 소속	직위				
13	대한복싱 협회	-	-	-	제주도민체전 승부조작	'17. 10. 31.	자격정지 1년 6개월	자격정지 등 3년
14	대한복싱 협회	-	-	-	제주도민체전 승부조작	'17. 10. 3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15	대한민국 농구협회	-	-	-	심판로비, 청탁	'17. 9. 1.	견책	자격정지 등 3년
16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6. 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17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6. 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18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6. 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19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6. 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0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6. 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1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6. 1.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2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7. 20.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3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7. 20.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4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7. 20.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5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7. 20.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6	대한민국 족구협회	-	-	-	승부조작	'18. 7. 20.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등 3년
27	광주광역시 체육회	-	-	-	동료임원폭행	'17. 1. 11.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등 1년

연번	징계처분 단체명	징계대상자			비위 내용	징계처분일	징계처분 내용	징계양정기준 하한
		성명	당시 소속	직위				
28	대한민국 농구협회	-	-	-	선수폭행	'16. 12. 16.	출전정지 3개월	자격정지 등 1년
29	대한체육회	G	대한레슬링 협회	국가대표 코치	선수폭행	'18. 9. 19.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등 1년
30	대한축구 협회	-	-	-	선수폭행	'18. 11. 26.	경고 및 사회봉사 30시간	자격정지 등 1년
31	대한축구 협회	-	-	-	선수폭행	'18. 11. 26.	경고 및 사회봉사 30시간	자격정지 등 1년
32	부산광역시 체육회	-	-	-	(성)폭력, 금품갈취	'18. 12. 19.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등 1년
33	경상남도 체육회	CH	경남복싱 협회	-	폭력, 회계부정	'16. 11. 7.	견책	자격정지 등 1년

자료: 대한체육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19]

범죄혐의 미고발 명세

연번	비위 유형	최종 징계처분단체	최종 징계처분일	이름	종목	비위 당시 소속	비위 당시 구분	비위 당시 직위
1	금품갈취, 폭력 등	대한세팍타크로협회	'18. 2. 19.	CW	세팍타크로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지도자	-
2	폭력	경기도체육회	'18. 1. 31.	-	복싱	-	지도자	코치
3	폭력	대전광역시체육회	'18. 4. 24.	-	빙상	-	지도자	-
4	폭력	대한검도회	'15. 8. 11.	-	검도	-	지도자	-
5	횡령 등	대한검도회	'17. 5. 29.	-	검도	-	임원	-
6	횡령 등	대한검도회	'17. 5. 29.	-	검도	-	임원	-
7	횡령	대한당구연맹	'16. 11. 21.	-	당구	-	임원	-
8	횡령	대한당구연맹	'17. 3. 28.	-	당구	-	임원	-
9	폭력	대한민국농구협회	'14. 2. 10.	-	농구	-	임원	-
10	폭력	대한민국농구협회	'14. 8. 19.	-	농구	-	지도자	-
11	폭력	대한민국농구협회	'16. 12. 16.	-	농구	-	선수	학생
12	폭력	대한민국배구협회	'15. 11. 11.	-	배구	-	선수	학생
13	폭력	대한민국배구협회	'15. 11. 11.	-	배구	-	선수	학생
14	폭력	대한민국배구협회	'15. 11. 11.	-	배구	-	선수	학생
15	폭력	대한복싱협회	'16. 4. 6.	-	복싱	-	심판	-
16	폭력	대한복싱협회	'16. 4. 6.	-	복싱	-	심판	기술위원
17	폭력	대한복싱협회	'16. 1. 15.	-	복싱	-	임원	-
18	폭력	대한빙상경기연맹	'15. 10. 19.	-	빙상	-	선수	선수
19	폭력	대한수영연맹	'14. 5. 24.	-	수영	-	지도자	코치
20	폭력	대한스쿼시연맹	'18. 9. 10.	-	스쿼시	-	선수	국가대표

연 번	비위 유형	최종 징계처분단체	최종 징계처분일	이름	종목	비위 당시 소속	비위 당시 구분	비위 당시 직위
21	폭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18. 12. 5.	-	야구	-	지도자	감독
22	폭력	대한역도연맹	'16. 1. 4.	-	역도	-	선수	선수
23	폭력	대한유도회	'15. 8. 7.	-	유도	-	임원	-
24	폭력	대한자전거연맹	'14. 1. 14.	-	자전거	-	지도자	지도자
25	폭력	대한체육회	'18. 9. 19.	G	레슬링	대한레슬링협회	지도자	-
26	폭력	대한카누연맹	'16. 1. 18.	-	카누	-	선수	선수
27	폭력	대한핸드볼협회	'16. 8. 4.	-	핸드볼	-	지도자	코치
28	폭력	대한핸드볼협회	'18. 1. 10.	-	핸드볼	-	지도자	코치
29	폭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5. 4. 14.	-	배드민턴	-	지도자	지도자
30	폭력	충청북도체육회	'16. 11. 9.	-	야구	-	지도자	감독
31	폭력	충청북도체육회	'17. 6. 15.	-	정구	-	지도자	코치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0]

공공기관 운동부의 비위사실 통보 명세

연번	소속단체	종목/ 직위	징계 대상자	소속단체 징계현황				체육단체 통보·징계 현황
				비위행위 내용	비위행위 발생시점	징계 의결일자	징계종류	
1	⊙⊙시설 관리공단	수영/ 지도자	DA	강습 중 아동 신체적 학대	'17년 9월	'17. 9. 29.	해임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2	-	-	-	폭력·음주 선수 관리 소홀	'18년 9월 등	'18. 11. 19.	경고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3	▣▣ 도시공사	핸드볼/ 선수	CX	후배 선수 폭행·음주 등	'18년 9월 등	'18. 11. 19.	경고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4	▣▣ 도시공사	핸드볼/ 선수	CY	후배 선수 폭행·음주 등	'18년 9월 등	'18. 11. 19.	경고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5	◆◆ 도시공사	핸드볼/ 지도자	CZ	성추행	'16년 1월	징계처분 없이 '16년 1월 사직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6	◆◆ 도시공사	핸드볼/ 지도자	CZ	코치 고용 계약금 수수 등	'15년 5월	'15. 11. 20.	경고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7	-	-	-	청렴의무 위반	'15년 5월	'15. 6. 24.	경고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8	-	-	-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10년 12월	'15. 6. 2.	건책	미통보/ 체육단체 징계 없음
9	△△(주)	축구/ 지도자	KA	선수(2명) 성추행	'17년 8월경 '18년 9월경	'18. 10. 25.	해임	미통보/ 체육단체 제명 ^{주)}
10	⊙⊙공사	레슬링/ 지도자	G	선수 폭행	'18년 2월	'19. 1. 16.	감봉 1개월	'18. 9월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처분
11	-	-	-	선수단 관리 소홀	'18년 3월	'18. 4. 27.	건책	'18. 3월 대한스키협회 건책 처분

주: KA는 2018년 10월 △△(주)에서 해임된 이후 대한축구협회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경

KA의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한축구협회는 2019년 4월에서야 KA에 대해 제명 처분함

자료: ⊙⊙시설관리공단 등 41개 공공기관 및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미통보 건에 대한 체육단체 징계 명세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직위	성명	비위유형·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징계결과 ²⁾	사직일자	
1	-	배구 감독	-	폭력 '18. 5. 16.	'18. 5. 24. 경고	-	징계내역 없음
2	-	수영 감독	-	폭력 '18. 9. 12.	'18. 10. 8. 경고	-	징계내역 없음
3	-	사격 코치	-	금품수수 '16. 9. 9.	'16. 10. 10. 정직	-	징계내역 없음
4	-	축구 감독	-	금품수수 '16. 11. 30.	'17. 8. 25. 정직	-	징계내역 없음
5	-	유도 코치	-	폭력 '18. 11. 19.	'19. 1. 4. 경고	-	징계내역 없음
6	-	검도 코치	-	폭력 '18. 7. 2.	'18. 9. 7. 주의	-	징계내역 없음
7	-	자전거 코치	-	기타 '18. 9. 4.	'18. 9. 17. 주의	-	징계내역 없음
8	-	검도 코치	-	금품수수 '18. 1. 22.	징계 없음	'19. 1. 31.	징계내역 없음
9	-	농구 코치	-	폭력 '17년	징계 없음	'18. 4. 10.	징계내역 없음
10	-	태권도 코치	-	금품수수 '16년 10월	'16. 11. 1. 정직	'16. 10. 1.	징계내역 없음
11	-	야구 감독	-	금품수수 '18년 1~2월	'18. 2. 26. 해임	'18. 2. 28.	징계내역 없음
12	-	야구 코치	-	금품수수 '18년 1~2월	'18. 2. 26. 해임	'18. 2. 28.	징계내역 없음
13	-	농구 코치	-	폭력 '18. 9. 3.	징계 없음	'18. 10. 15.	징계내역 없음
14	-	야구 감독	-	금품수수 '16. 12. 9.	'17. 8. 4. 기타	'17. 12. 31.	징계내역 없음
15	-	축구 코치	-	성비위 '17년 7~8월	'17. 11. 6. 해임	'17. 11. 6.	징계내역 없음
16	-	축구 감독	-	기타 '17. 6. 22.	'17. 11. 28. 해임	'18. 2. 28.	징계내역 없음
17	-	야구 코치	-	폭력 '16년 9월 초	'16. 11. 7. 감봉	'17. 2. 28.	징계내역 없음
18	-	탁구 코치	-	기타 '17년 연중	'18. 6. 12.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9	-	탁구 코치	-	폭력 '16. 11. 9.	'16. 11. 14. 감봉	-	징계내역 없음
20	-	검도 감독	-	폭력 '17. 11. 12.	'17. 11. 21. 감봉	-	징계내역 없음
21	-	야구 코치	-	금품수수 '17. 6. 21.	'17. 6. 27. 경고	-	징계내역 없음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직위	성명	비위유형·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징계결과 ²⁾	사직일자	
22	-	양궁 코치	-	성비위 '18. 3. 5.	징계 없음	'18. 3. 6.	징계내역 없음
23	-	검도 코치	-	성비위 '18. 3. 8.	징계 없음	'18. 3. 9.	징계내역 없음
24	-	축구 코치	-	기타 '18. 1. 22.	'18. 1. 31. 해임	'18. 1. 23.	징계내역 없음
25	-	야구 코치	-	폭력 '16. 10. 22.	'16. 11. 7. 감봉	'17. 2. 28.	징계내역 없음
26	-	야구 코치	-	폭력 '17. 7. 19.	'17. 7. 26. 견책	-	징계내역 없음
27	-	축구 코치	-	폭력 '19. 3. 21.	'19. 4. 10. 선수지도 금지	-	징계내역 없음
28	-	배구 코치	-	폭력 '19. 1. 10.	징계 없음	'19. 2. 28.	징계내역 없음
29	-	야구 코치	-	기타 '17. 3. 31.	'17. 4. 11. 해임	'17. 3. 31.	징계내역 없음
30	-	롤러 코치	-	기타 '18. 4. 5.	'19. 2. 19. 정직	-	징계내역 없음
31	-	축구 감독	-	회계부정 '17. 7. 3.	'18. 7. 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32	-	야구 감독	-	기타 '16. 11. 1.	'18. 8. 14. 견책	-	징계내역 없음
33	-	야구 감독	-	기타 '17. 11. 6.	징계 없음	'17. 11. 24.	징계내역 없음
34	-	테니스 코치	-	금품수수 '16년 12월~'17년 10월	'18. 10. 4. 견책	-	징계내역 없음
35	-	유도 코치	-	기타 '16. 10. 24.	'17. 8. 8. 경고	-	징계내역 없음
36	-	레슬링 코치	-	기타 '17. 2. 8.	'17. 4. 10. 경고	-	징계내역 없음
37	-	배구 코치	-	폭력 '18. 5. 6.	'18. 6. 18. 주의	-	징계내역 없음
38	-	배구 코치	-	폭력 '17년 9월~'18년 3월	'19. 1. 25. 경고	-	징계내역 없음
39	-	축구 감독	-	폭력 '18. 8. 14.	'18. 11. 28. 해고 이후 복직	'18. 11. 28.	징계내역 없음
40	-	축구 전임코치	-	금품수수 '17. 9. 29.	'17. 10. 31. 해임	'17. 10. 31.	징계내역 없음
41	-	야구 감독	-	금품수수 '17. 12. 19.	'18. 3. 14. 해임	'18. 3. 19.	징계내역 없음
42	-	야구 감독	-	기타 '18. 6. 12.	'18. 8. 14. 정직	-	징계내역 없음
43	-	야구 감독	-	폭력 '18. 3. 7.	'19. 2. 26. 해임	'19. 2. 26.	징계내역 없음
44	-	핸드볼 코치	-	폭력 '17. 5. 16.	'17. 5. 31. 해임	'17. 5. 31.	징계내역 없음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 직위	성명	비위유형· 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 (징계결과 ²⁾)	사직일자	
45	-	핸드볼 코치	-	폭력 '17. 9. 20.	'17. 10. 16. 해임	'17. 10. 16.	징계내역 없음
46	-	배드민턴 코치	-	금품수수 '17년 8월~'18년 5월	'18. 10. 29. 정직	-	징계내역 없음
47	-	야구 감독	-	기타 '18년 8월, 10월	'19. 1. 2. 경고	-	징계내역 없음
48	-	야구 감독	-	기타 '17. 10. 1.	'18. 12. 26. 견책	-	징계내역 없음
49	-	야구 코치	-	기타 '17. 10. 1.	'18. 12. 26. 견책	-	징계내역 없음
50	-	축구 감독	-	기타 '16. 11. 5.	'17. 4. 13. 견책	-	징계내역 없음
51	-	축구 코치	-	금품수수 '16. 11. 5.	'17. 4. 13. 견책	-	징계내역 없음
52	-	축구 감독	-	기타 '17년 전반기	'17. 7. 1. 경고	'17. 9. 30.	징계내역 없음
53	-	축구 감독	-	기타 '17. 7. 1.	'17. 7. 14. 경고	'17. 9. 30.	징계내역 없음
54	-	축구 감독	-	금품수수 '18. 3. 6.	'18. 3. 8. 해임	'18. 3. 8.	징계내역 없음
55	-	농구 코치	-	성비위 '17년 1월	'18. 9. 27. 해임	'18. 9. 30.	징계내역 없음
56	-	농구 코치	-	폭력 '17년 2월	징계 없음	'17. 6. 8.	징계내역 없음
57	-	야구 코치	-	기타 '17. 5. 25.	'17. 6. 9. 견책	-	징계내역 없음
58	-	야구 코치	-	기타 '17. 12. 19.	'18. 2. 12. 견책	-	징계내역 없음
59	-	태권도 코치	-	기타 '18년 9~11월	'19. 1. 28. 견책	-	징계내역 없음
60	-	야구 감독	-	기타 '17. 2. 8.	'17. 3. 17. 경고	-	징계내역 없음
61	-	아이스하키 코치	-	금품수수 '18. 5. 8.	'18. 5. 18. 정직	-	징계내역 없음
62	-	축구 감독	-	폭력 '17년 1월	'17. 4. 5. 감봉	-	징계내역 없음
63	-	축구 코치	-	폭력 '17년 1월	'17. 4. 5. 감봉	-	징계내역 없음
64	-	태권도 코치	-	기타 '17. 11. 20.	'17. 12. 8. 경고	-	징계내역 없음
65	-	력비 코치	-	폭력 '17. 4. 7.	'17. 4. 14. 경고	-	징계내역 없음
66	-	체조 코치	-	회계부정 '17년 3~9월	'18. 2. 20. 감봉	-	징계내역 없음
67	-	레슬링 코치	-	기타 '19년 1월	'19. 1. 29. 감봉	-	징계내역 없음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 직위	성명	비위유형· 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 (징계결과 ²⁾)	사직일자	
68	-	하키 코치	-	폭력 '18. 9. 28.	'18. 10. 4. 감봉	-	징계내역 없음
69	-	축구 코치	-	기타 '18. 1~8월	'18. 12. 4. 견책	-	징계내역 없음
70	-	축구 코치	-	기타 '18. 1~8월	'18. 12. 4. 감봉	-	징계내역 없음
71	-	축구 코치	-	기타 '18. 1~8월	'18. 12. 4. 경고	-	징계내역 없음
72	-	농구 코치	-	기타 '16. 10. 7.	'16. 10. 28. 감봉	-	징계내역 없음
73	-	야구 코치	-	회계부정 '18. 10. 19.	'18. 12. 12. 주의	-	징계내역 없음
74	-	체조 코치	-	기타 '18년 3~6월	'18. 5. 14. 견책	-	징계내역 없음
75	-	축구 감독	-	회계부정 '18. 8. 13.	'18. 9. 20. 경고	-	징계내역 없음
76	-	태권도 코치	-	기타 '17년 4월	'17. 4. 2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77	-	태권도 코치	-	기타 '17년 4월	'17. 4. 2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78	-	야구 코치	-	기타 '18. 7. 24.	'18. 8. 28. 견책	-	징계내역 없음
79	-	아이스하키 코치	-	기타 '17. 7. 6.	'17. 7. 14. 정직	-	징계내역 없음
80	-	력비 감독	-	기타 '18. 1. 20.	'18. 4. 3. 견책	-	징계내역 없음
81	-	아이스하키 코치	-	기타 '16. 12. 29.	'17. 1. 17. 정직	-	징계내역 없음
82	-	축구 감독	-	기타 '18. 4. 20.	'18. 5. 9. 견책	-	징계내역 없음
83	-	축구 코치	-	기타 '18. 4. 20.	'18. 5. 9. 견책	-	징계내역 없음
84	-	태권도 전임코치	-	회계부정 '17년 12월	징계 없음	'18. 1. 15.	징계내역 없음
85	-	야구 수석코치	-	폭력 '16년 9월	징계 없음	'16. 11. 30.	징계내역 없음
86	-	아이스하키 감독	-	폭력 '17년 상반기	'17. 6. 28. 해임	'17. 6. 28.	징계내역 없음
87	-	리듬체조 전임코치	-	기타 '18년 상반기	'19. 4. 9. 감봉	-	징계내역 없음
88	-	태권도 코치	-	폭력 '17년	'18. 4. 18. 견책	-	징계내역 없음
89	-	육상 전임코치	-	폭력 '18. 3. 27.	'18. 5. 9. 경고	-	징계내역 없음
90	-	야구 수석코치	-	기타 '17. 3. 1.~'19. 2. 28.	'19. 3. 2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 직위	성명	비위유형· 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 (징계결과 ²⁾)	사직일자	
91	-	야구 수석코치	-	기타 '17. 3. 1.~'19. 2. 28.	'19. 4. 9. 경고	-	징계내역 없음
92	-	야구 수석코치	-	기타 '18년 상반기	'18. 8. 29. 경고	-	징계내역 없음
93	-	레슬링 전임코치	-	기타 '18년 상반기	'18. 8. 30. 경고	-	징계내역 없음
94	-	야구 전임코치	-	기타 '17년 상반기	'17. 6. 21. 감봉	-	징계내역 없음
95	-	야구 코치	-	기타 '18년 8월	'18. 9. 19. 견책	-	징계내역 없음
96	-	야구 코치	-	금품수수 '18년 1월	'18년 2월 경고	-	징계내역 없음
97	-	야구 코치	-	금품수수 '18년 1월	'18년 2월 경고	-	징계내역 없음
98	-	축구 코치	-	기타 '19. 1. 7.	'19. 1. 15. 주의	-	징계내역 없음
99	-	축구 코치	-	회계부정 '18. 9. 25.	'19. 2. 26.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00	-	축구 코치	-	회계부정 '18. 9. 25.	'19. 2. 26.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01	-	아이스하키 코치	-	폭력 '18. 6. 25.	'18. 7. 12. 정직	-	징계내역 없음
102	-	축구 수석코치	-	회계부정 '17년 상반기	'17. 7. 17.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03	-	유도 코치	-	금품수수 '16. 11. 4.	'17. 1. 18. 해임	'17. 1. 18.	징계내역 없음
104	-	축구 코치	-	회계부정 '18. 7. 6.	'18. 8. 29. 견책	'18. 9. 1.	징계내역 없음
105	-	씨름 코치	-	폭력 '17. 9. 7.	'17. 9. 20.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06	-	태권도 코치	-	승부조작 '16. 7. 17.	'16. 8. 23. 해임	'16. 8. 23.	징계내역 없음
107	-	야구 감독	-	폭력 '18. 7. 16.	'18. 7. 18.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08	-	야구 감독	-	폭력 '18. 7. 9.	'18. 8. 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09	-	축구 감독	-	금품수수 '18. 10. 2.	'18. 11. 20. 견책	-	징계내역 없음
110	-	축구 감독	-	기타 '17. 10. 26.	'17. 11. 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11	-	축구 감독	-	기타 '18. 5. 1.	'18. 7. 12. 감봉	-	징계내역 없음
112	-	축구 코치	-	폭력 '18년 1월	'18. 4. 5.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13	-	야구 코치	-	폭력 '17. 1. 25.	'17. 3. 27. 감봉	-	징계내역 없음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 직위	성명	비위유형· 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 (징계결과 ²⁾)	사직일자	
114	-	배구 코치	-	폭력 '17. 6. 10.	'17. 7. 10. 해임	'17. 7. 10.	징계내역 없음
115	-	축구 코치	-	폭력 '18. 2. 8.	'18. 12. 26. 정직	'19. 2. 28.	징계내역 없음
116	-	유도 코치	-	성비위 '17. 7. 2.	'17. 9. 22. 해임	'17. 9. 22.	징계내역 없음
117	-	농구 코치	-	기타 '18. 1. 31.	'18. 2. 12.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18	-	농구 코치	-	폭력 '18. 6. 25.	'18. 6. 28.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19	-	야구 운동부지도자	-	폭력 '16년 9월	징계 없음	'16. 10. 5.	징계내역 없음
120	-	태권도 운동부지도자	-	폭력 '16. 9. 26.	징계 없음	'16. 10. 13.	징계내역 없음
121	-	태권도 사감부장	-	폭력 '18. 6. 13.	'18. 6. 14. 해임	'18. 6. 14.	징계내역 없음
122	-	야구 방과후강사	-	폭력 '18년 1월	'18. 3. 6. 경고	미상	징계내역 없음
123	-	유도 운동부지도자	-	폭력 '16. 12. 5.	'16. 12. 25.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24	-	수영 운동부지도자	-	폭력 '16. 12. 13.	미상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25	-	수영 운동부지도자	-	폭력 '17년 4월	'17. 10. 10.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26	-	야구 방과후강사	-	폭력 '18년 3월~6월	'18. 7. 20.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27	-	농구 코치	-	금품수수 '17. 6. 5.	'17. 7. 13. 해임	'17. 8. 13.	징계내역 없음
128	-	배드민턴 코치	-	기타 '17년 2월	'17. 10. 19.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29	-	배드민턴 코치	-	금품수수 '17년 9월	'19. 2. 25.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30	-	태권도 코치	-	회계부정 '18년 1월	'18. 11. 7.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31	-	수영 코치	-	기타 '18년 3월~10월	'18. 10. 31. 기타	-	징계내역 없음
132	-	수영 코치	-	기타 '18년 3월~11월	'18. 11. 30. 기타	-	징계내역 없음
133	-	배드민턴 코치	-	기타 '18년 3월~11월	'18. 11. 30. 기타	-	징계내역 없음
134	-	태권도 코치	-	폭력 '18. 2. 1.	'18. 2. 19. 견책	-	징계내역 없음
135	-	배드민턴 코치	-	금품수수 '17. 5. 24.	징계 없음	'18. 1. 12.	징계내역 없음
136	-	태권도 코치	-	폭력 '17년 10월	징계 없음	'17. 10. 31.	징계내역 없음

연번	학교 징계 및 사직 현황						체육단체 징계 현황 ¹⁾
	시·도 및 학교명	종목·직위	성명	비위유형·비위발생일자	징계의결일자·징계결과 ²⁾	사직일자	
137	-	축구 코치	-	기타 '17. 2. 11.	'17. 3. 1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38	-	축구 코치	-	기타 '17. 2. 11.	'17. 3. 16. 주의	-	징계내역 없음
139	-	축구 코치	-	기타 '17. 2. 11.	'17. 3. 16.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40	-	다이빙 코치	-	금품수수 '17년 10~12월	징계 없음	'18. 2. 28.	징계내역 없음
141	-	배구 감독	-	폭력 '18년 8~9월	징계 없음	'18. 9. 30.	징계내역 없음
142	-	유도 코치	-	폭력 '18. 5. 24.	'18. 6. 7. 해임	'18. 6. 30.	징계내역 없음
143	-	레슬링 코치	-	성비위 '18. 11. 19.	'18. 11. 28. 해임	'18. 11. 30.	징계내역 없음
144	-	씨름 코치	-	폭력 '17. 8. 2.	'17. 8. 8. 경고	-	징계내역 없음
145	-	농구 코치	-	기타 '17. 12. 4.	징계 없음	'19. 5. 30.	징계내역 있음
146	-	럭비 코치	-	기타 '18. 8. 14.	'19. 1. 8. 감봉	-	징계내역 있음
147	-	복싱 코치	-	폭력 '17년 2월	'17. 12. 27. 경고	'18. 1. 31.	징계내역 있음
148	-	야구 감독	-	금품수수 '17. 1. 11.	'18. 7. 19. 감봉	-	징계내역 있음
149	-	야구 코치	-	금품수수 '17. 1. 11.	'18. 7. 19. 감봉	-	징계내역 있음
150	-	태권도 코치	-	폭력 '17. 7. 8.	'17. 11. 19. 해임	'17. 11. 19.	징계내역 있음
151	-	씨름 감독	-	폭력 '17. 7. 6.	'17. 7. 11. 해임	'17. 7. 11.	징계내역 있음
152	-	야구 코치	-	폭력 '16. 9. 22.	'16. 9. 29. 해임	'16. 9. 29.	징계내역 있음

주: 1. '14년부터 '18년까지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내역과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내역을 기준으로 징계 여부 점검
2. 징계결과 “징계내역 없음”으로 기재된 내역은 학교에서 징계처분하지 않고 의원면직 등 사직처리한 내역임
자료: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2]

학교운동부의 비위지도자 등록·활동 명세

연번	징계현황(학교)				등록현황(대한체육회)		
	성명	소속/ 종목/직위	비위 유형	징계일자 (사직일자)	등록일자	등록팀/ 종목/직위	활동현황 (대회 참가 등)
1	-	-	금품 수수 /해임	'18. 3. 8. ('18. 3. 8.)	'18. 5. 30. '19. 3. 15.	- -	-
2	-	-	폭행 /해임	'17. 10. 16. ('17. 10. 16.)	'18. 2. 28. '19. 5. 21.	- -	-
3	-	-	금품 수수 /해임	'17. 10. 31. ('17. 10. 31.)	'19. 2. 26.	-	-
4	-	-	폭행 /징계 없음	- ('18. 10. 15.)	'19. 3. 15.	-	'19 연맹회장기 등 3개 대회
5	DC	■■고/ 농구/코치	금품 수수 /해임	'17. 7. 13. ('17. 8. 13.)	'18. 3. 20. '19. 3. 7.	●●고 /농구/코치	'18 협회장기 등 2개 대회, '19 협회장기 등 2개 대회, '20 연맹회장기
6	DB	○○고/ 배구/코치	폭행 /해임	'17. 7. 10. ('17. 7. 10.)	'18. 3. 2.	☆☆ 고 /배구/코치	'18 춘계중고배구 연맹전 등 3개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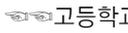
연번	징계현황(학교)				등록현황(대한체육회)		
	성명	소속/ 종목/직위	비위 유형	징계일자 (사직일자)	등록일자	등록팀/ 종목/직위	활동현황 (대회 참가 등)
7	-	-	폭행 /징계 없음	('17. 6. 8.)	'18. 8. 27. '19. 3. 22.	-	'18 전국남녀종별 선수권 등 2개 대회 '19 춘계전국남녀 연맹전 등 3개 대회
8	-	-	폭행 /징계 없음	('16. 10. 5.)	'17. 7. 26.	-	'17 봉황대기 '18 황금사자기 등 3개 대회, '19 고교야구 주말리그
					'18. 3. 7.	-	
					'19. 3. 21.	-	
9	-	-	폭행 /해임	'17. 6. 28. ('17. 6. 28.)	'17. 9. 20. '18. 3. 28.	-	-
10	-	-	폭행 /징계 없음	- ('18. 4. 10.)	'19. 4. 2.	-	'19 협회장배대회
11	-	-	폭행 /징계 없음	- ('17. 10. 31.)	'18. 2. 22.	-	'18 대통령기대회 등 3개 대회

자료: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사실 부당 처리 명세

연번	비위 행위자	비위 유형	비위사실 통보·접수 내역	부당 처리 내용	비고
1	▲▲중 력비 코치 DD	성추행	(통보) '18. 5. 17. 충청북도교육청 (접수) '18. 5. 21. 충청북도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체육회는 '18. 5. 4. 언론보도 및 '18. 5. 21. 충청북도교육청의 통보로 DD의 비위사실을 인지하여 충청북도력비협회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충청북도력비협회가 '19.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 * 충청북도력비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간 일정조율이 어렵다는 사유로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2	▲▲중 양궁 코치 QH	성추행	(통보) '17. 10. 16.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접수) '17. 10. 16. 대한양궁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양궁협회는 '17. 10. 16.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통보로 QH의 비위사실을 인지하여 경기도양궁협회에 징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양궁협회가 '19년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 * 경기도양궁협회는 '17. 11월 QH가 수감 중('17년 5~12월)이었고, 그 이후에는 QH가 양궁 관련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3	▲▲중 태권도 코치 QI	폭력	(통보) '18. 1. 15. 광주광역시교육청 (접수) '18. 1. 15. 대한태권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태권도협회는 학교 등이 통보한 비위사실의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19년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4	▲▲중 야구 감독 QJ	금품 수수	(통보) '17. 8. 2. 평택교육지원청 통보 (접수) '17. 8. 2.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QJ, QK의 비위행위가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로 직접 접수되지 않았고,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리상황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19년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5	▲▲중 야구 감독 QK				

연번	비위 행위자	비위 유형	비위사실 통보·접수 내역	부당 처리 내용	비고
6	 축구 감독 QL	금품 수수	(통보) '18. 2. 1. 광주광역시교육청 (접수) '18. 2. 1. 대한축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축구협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발신 문서를 접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19년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7	 체고 수영 감독 QM	금품 수수	(통보) '18. 8. 6. 광주광역시교육청 (접수) '18. 8. 7. 대한수영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수영연맹은 '18년 8월 당시 QM이 해당 비위로 인해 광주광역시수영연맹 이사직을 사퇴하였고, 대한수영연맹이 관리 단체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QM이 지도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19년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8	 태권도 코치 QN	금품 수수	(통보) '18. 6. 15.  고등학교 (접수) '18. 6. 15. 경기도태권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태권도협회는 '18년 6월 당시 대한체육회 감사 수감 등으로 업무가 과중했고, 업무인력(7명)도 많지 않다는 사유로 '19.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9	 여고 정구 코치 QO	성추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한정구협회에 QO의 비위사실을 통보하던 과정에서 통보·접수가 누락되어 '19년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 	통보·접수 누락
10	 중 농구 코치 QP	금품 수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 5월  중학교가 울산광역시체육회에 QP의 비위사실을 통보하던 과정에서 통보·접수가 누락되어 '19. 5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 	통보·접수 누락

자료: 대한체육회와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4]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의 징계결정서 미통보 명세

연번	회원단체명 (직위)	징계 대상자	회원단체 등 징계현황			소속단체 (직위)	소속단체 통보·징계 현황
			비위행위 내용	징계 의결일자	징계종류		
1	서울시특별시 유도회 (임원)	DE	선수 성추행·폭행	'16. 11. 18.	임원 해임, 출전정지 3개월	▶▶ 대학교 (훈련처장, 교수)	미통보/ 징계 없음
2	-	-	친인척 채용	'16. 9. 9.	건책	-	미통보/ 의원면직

자료: 대한체육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5]

체육단체 간 지도자·임원 부당 등록·선임 명세

연번 ¹⁾	성명	징계 당시 소속/직위	비위 유형	징계결과 (의결기관)	정당 등록 제한기간 ²⁾	등록(선임)현황 (등록단체)	활동현황	비고
1	DH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전임지도자	폭행, 폭언	'16. 12. 4. 제명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영구	'18. 5. 24. '19. 4. 16.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등록 (대한수영연맹)	'19년 5월 현재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로 재직 중 (대회 참가내역 확인 불가)	등록 취소
2	QR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	국가 대표 선발 위법	'17. 10 .28. 제명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영구	'18. 3. 5. 고 배구부 감독 등록 (대한민국배구협회)	'18년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등에 고 배구부 감독으로 참가	등록 취소
3	QS	군청/ 유도 심판	직무 태만	'17. 3. 13. 자격정지 1년 (대한유도회)	'17. 3. 13. ~ '21. 3. 12.	'18. 4. 30. 강원도장애인 유도협회 임원 선임 (대한장애인유도협회)	'19년 5월 현재까지 강원도장애인 유도협회 임원으로 재직 중	선임 취소
4	DI	도청/ 컬링 코치	성추행	'14. 4. 9. 제명 (대한컬링 경기연맹)	영구	DI는 장애인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고 '16. 11. 4.부터 '17. 11. 24.까지 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컬링팀 코치로 활동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여 등록취소 대상이 아님

주: 1. 연번 1, 2는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징계를 받은 후 대한체육회 등에서 등록(선임)된 사례이고, 연번 3, 4는 대한 체육회 등에서 징계를 받은 후 장애인체육회에서 등록(선임)된 사례임

2. 다른 체육단체에서 지도자 등록 및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

자료: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6]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현황

연번	징계 연도	비위 내용	종목	성명	징계 결과	자격증 보유 여부	비고
1	2014	금품관련	농구	-	자격정지 6개월	○	
2	2014	폭력	농구	-	자격정지 5년	○	
3	2014	폭력, 성추행	당구	-	무기한 자격정지	○	
4	2014	금품관련	핸드볼	-	자격정지 1년	○	
5	2014	폭력	야구	-	자격정지 1년	○	
6	2014	폭력	루지	-	자격정지 1년	○	
7	2014	성추행	산악	-	자격정지 5년	○	
8	2014	성추행	산악	-	제명	○	
9	2014	금품관련, 성추행	컬링	DI	제명	○	
10	2014	금품관련, 성추행	컬링	-	5년 자격정지	○	
11	2014	폭력, 성폭행	빙상(스피드)	-	제명	○	
12	2014	폭력	테니스	-	근신 3개월	○	
13	2014	폭력	태권도	-	자격정지 5년	○	
14	2014	성희롱	축구	-	경고	○	
15	2014	성희롱	축구	-	경고	○	
16	2014	성희롱	축구	-	경고	○	
17	2014	성희롱	축구	-	경고	○	
18	2014	성희롱	야구	-	자격정지 5년	○	
19	2014	금품관련	축구	-	자격정지 6개월	○	
20	2014	폭력	수영	-	자격정지 3년	○	

연번	징계 연도	비위 내용	종목	성명	징계 결과	자격증 보유 여부	비고
21	2014	폭력	자전거	-	자격정지 2년	○	
22	2014	승부조작/편파판정	씨름	-	제명	○	
23	2015	금품관련	농구	-	자격정지 2년	○	
24	2015	금품관련	농구	-	자격정지 1년	○	
25	2015	금품관련	농구	-	자격정지 1년	○	
26	2015	폭력	배드민턴	-	자격정지 6개월	○	
27	2015	폭력	야구	DJ	자격정지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28	2015	폭력	검도	-	자격정지 6년	○	
29	2015	금품관련	축구	-	경고	○	
30	2015	금품관련	축구	-	경고	○	
31	2015	폭력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32	2015	입시비리	축구	-	제명	○	
33	2015	입시비리	축구	-	제명	○	
34	2015	폭력, 성추행	축구	-	제명	○	
35	2015	성추행	축구	-	제명	○	
36	2015	폭력	수영	-	자격정지 10개월	○	
37	2015	폭력, 성추행, 성희롱	수영	-	자격정지 6개월	○	
38	2016	폭력	우슈	-	자격정지 6개월	○	
39	2016	폭력	야구	-	자격정지 2년	○	
40	2016	폭력	핸드볼	-	건책	○	
41	2016	금품관련	펜싱	-	자격정지 1년	○	
42	2016	폭력	복싱	-	해임	○	

연번	징계 연도	비위 내용	종목	성명	징계 결과	자격증 보유 여부	비고
43	2016	폭력, 성추행	다이빙	-	제명	○	
44	2016	폭력	배드민턴	-	자격정지 1년 6개월	○	
45	2016	폭력	배드민턴	-	자격정지 1년	○	
46	2016	성추행	빙상(쇼트트랙)	U	자격정지 3년	○	
47	2016	입시비리	태권도	-	자격정지 2년	○	
48	2016	입시비리	태권도	-	제명	○	
49	2016	금품관련	축구	-	자격정지 5년	○	
50	2016	금품관련	축구	-	영구자격정지	○	
51	2016	폭력	축구	-	제명	○	
52	2016	금품관련	축구	-	경고	○	
53	2016	폭력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54	2016	금품관련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55	2016	금품관련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56	2016	금품관련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57	2016	금품관련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58	2017	성폭행	볼링	DG	제명	○	
59	2017	폭력	야구	-	출전정지 1년	○	
60	2017	폭력	정구	-	자격정지 5년	○	
61	2017	폭력	아이스하키	-	출전정지 3개월	○	
62	2017	승부조작/편파판정	복싱	-	견책	○	
63	2017	금품관련	수중핀수영	-	견책	○	
64	2017	폭력	야구	-	무기한 자격정지	○	

연번	징계 연도	비위 내용	종목	성명	징계 결과	자격증 보유 여부	비고
65	2017	폭력	야구	-	자격정지 10년	○	
66	2017	폭력	야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67	2017	성폭행	테니스	-	제명	○	
68	2017	폭력	복싱	-	자격정지 1년	○	
69	2017	폭력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70	2017	폭력	축구	CT	자격정지 1년 6개월	○	
71	2017	폭력	축구	-	자격정지 3년	○	
72	2018	폭력	씨름	-	제명	○	
73	2018	폭력	아이스하키	-	자격정지 1년	○	
74	2018	폭력	아이스하키	-	자격정지 1년	○	
75	2018	폭력	수영	-	자격정지 1개월	○	
76	2018	승부조작/편파판정	족구	-	자격정지 1년	○	
77	2018	승부조작/편파판정	족구	-	자격정지 1년	○	
78	2018	폭력	빙상	-	자격정지 3년	○	
79	2018	폭력	핸드볼	-	제명	○	
80	2018	폭력	핸드볼	-	출전정지 1년	○	
81	2018	성추행	배구	I	제명	○	
82	2018	폭력	야구	-	무기한 자격정지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3	2018	폭력	야구	-	자격정지 3년	○	
84	2018	금품관련	야구	-	자격정지 3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85	2018	금품관련	야구	-	건책	○	

연번	징계 연도	비위 내용	종목	성명	징계 결과	자격증 보유 여부	비고
86	2018	금품관련	야구	-	견책	○	
87	2018	폭력, 성희롱	세팍타크로	-	자격정지 7년	○	
88	2018	성추행	검도	-	제명	○	
89	2018	폭력	태권도	-	자격정지 1년	○	
90	2018	폭력	태권도	-	자격정지 1년	○	
91	2018	폭력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92	2018	폭력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93	2018	폭력	축구	-	자격정지 1년 6개월	○	
94	2018	폭력	축구	-	자격정지 3년	○	
95	2018	승부조작/편파판정	축구	-	제명	○	징역 6개월
96	2018	성폭행	축구	-	제명	○	
97	2018	폭력	레슬링	G	자격정지 6개월	○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7]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근무 현황

연번	종목	성명	비위내용	징계 결과	징계 의결일	근무지(기간)
1	야구	DJ	폭력	자격정지 6개월 (징역 1년 6개월)	'15. 4. 9.	☒☒중학교('13. 12. 11.~'14. 5. 20.) ◀◀고등학교('16. 4. 1.~'16. 10. 1.) ◀◀고등학교('19. 1. 1.~'19년 5월 현재)
2	농구	-	금품 관련	자격정지 1년	'15. 5. 4.	-
3	농구	-	금품 관련	자격정지 1년	'15. 5. 4.	-
4	우슈	-	폭력	자격정지 6개월	'16. 6. 1.	-
5	핸드볼	-	폭력	견책	'16. 8. 4.	-
6	수영	-	폭력 등	자격정지 1개월	'18. 12. 19.	-
7	컬링	DI	성추행 등	제명	'14. 4. 9.	☒☒도체육회('12. 6. 29.~'14. 3. 29.) 대한컬링경기연맹('13. 5. 1.~'14. 4. 10.) ♪♪국제컬링장('15. 11. 11.~'16. 6. 10.) ☉☉장애인체육회('16. 11. 14.~'17. 11. 25.) ♫♫시설공단 컬링센터('18. 3. 2.~'19년 5월 현재)
8	축구	-	성희롱	경고	'14. 7. 8.	-
9	축구	-	성희롱	경고	'14. 7. 8.	-
10	축구	-	성희롱	경고	'14. 7. 8.	-
11	축구	-	금품 관련	경고	'15. 12. 14.	-
12	축구	-	금품 관련	경고	'15. 12. 14.	-
13	축구	CT	폭력	자격정지 1년 6개월	'17. 8. 21.	♡♡초등학교('17. 3. 1.~'19년 5월 현재)
14	축구	-	폭력	자격정지 1년 6개월	'18. 9. 6.	-
15	레슬링	G	폭력	자격정지 6개월	'18. 9. 19.	△△공사('94. 2. 1.~'19년 5월 현재)

주: 1.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중 비위행위 이후에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임

2. 근무지 및 근무기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취득·상실일자 기준

자료: 대한체육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8]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

연번	성명 (종목)	체육연금 지급사유(지급액)	체육연금 수령자격 상실 사유	부당 지급 기간 및 금액
1	DK (사격)	'17년 하계 장애인 올림픽대회 은메달 등 (월 1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12. 20. 장애인 유사성행위로 대전고등법원 (2심)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19년 1월~'19년 4월 (4개월) 400만 원 ('19. 6. 24. 환수 완료)
2	DO (빙상)	'17년 동계 올림픽대회 금메달 등 (월 1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확인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기간 중 DO가 '17. 11. 9.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춘천지방방법원 강릉지원(2심)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을 DO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통화일자: '19. 2. 26.)하였으나, - 그 이후부터 '19. 5월 현재까지 DO와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수령자격 상실 여부를 확정하지 못함 * DO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화 수신을 거부 	'17년 11월~'19년 2월 (16개월) 1,600만 원 (추정)
3	DP (야구)	'17년 하계 올림픽대회 동메달 등 (월 52.5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확인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감사기간 중 '19. 4. 22. DP로부터 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19. 5. 13. 및 5. 24. 전화통화 하였으나, - 그 이후부터 '19년 5월 현재까지 DP와 연락이 두절*되어 연금수령자격 상실 여부를 확정하지 못함 * DP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화 수신을 거부 	미확인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9]

체육연금 지급정지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례

연번	성명 (종목)	체육연금 지급사유(지급액)	체육연금 지급정지 사유	부당 지급 기간 및 금액
1	DQ (배드민턴)	'16년 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 등 (월 45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10. 18. 폭행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16. 10월~'18. 9월 (24개월) 1,080만 원
2	G (레슬링)	'18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등 (월 6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9. 19. 폭행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 	'18. 9월~'19. 2월 (6개월) 360만 원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0]

골프대회 경기위원수당 등 횡령 명세

(단위: 원)

경기위원수당 등			DT가 직접 돌려받은 금액		DY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	
지급일자	지급사유(대회명)	재원	수령자 이름 ¹⁾	수령금액	수령자 이름	수령금액
'13. 5. 2.	'13년 강원도골프협회장배	강원랜드 등 20,590,000	DW	200,000		
13. 8. 5.	'13년 이보미프로배	자부담 등 1,800,000	UQ	100,000		
			DW	300,000		
'14. 1. 14.	전국체전 감독·코치 포상금	강원도체육회 1,500,000	DT	1,500,000 ²⁾		
'14. 5. 2.	'14년 강원도골프협회장배	강원랜드 등 20,490,000	UQ	200,000		
'14. 6. 25.	'14년 강원도지사배	강원도체육회 10,000,000			DZ	100,000
						120,000 (참가비 환급)
'14. 7. 15.	'14년 춘천MBC배	자부담 등 2,000,000	DW	200,000	DZ	200,000
			UQ	200,000	EA	200,000
					UR	200,000
'15. 4. 24.	'15년 강원도골프협회장배	강원랜드 등 15,620,000	DT	240,000 ³⁾	DZ	200,000
			DW	200,000		
'15. 6. 8.	'15년 강원도민체전	강원도체육회 4,844,000	DW	212,000	DZ	212,000
			DV	212,000		
			DX	400,000	EA	212,000
			UT	400,000		
			US	212,000	UR	212,000
'15. 6. 19.	'15년 춘천MBC배	자부담 등 1,600,000	DW	200,000		
'15. 9. 16.	'15년 강원도지사배	강원도체육회 10,000,000 자부담 50,000	DW	200,000		
			US	200,000		

경기위원수당 등			DT가 직접 돌려받은 금액		DY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	
지급일자	지급사유(대회명)	재원	수령자 이름 ¹⁾	수령금액	수령자 이름	수령금액
'15. 10. 12.	'15년 전국체전	강원도체육회 14,900,000	DW	425,000	DZ	425,000
			DV	305,000	UU	225,000
			DX	305,000	EA	305,000
			UT	305,000	UR	305,000
			US	305,000		
'16. 4. 5.	'16년 강원도소년체전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9,693,500	DW	240,000	EA	240,000
			US	240,000		
'16. 4. 29.	'16년 강원도골프협회장배	강원랜드 등 15,610,000	DW	200,000		
			US	200,000		
'16. 5. 18.	'16년 전국소년체전	강원도체육회 4,863,000	DW	193,000	UV	53,000
			DV	193,000	UX	53,000
			DX	193,000	DZ	193,000
			UT	193,000	EA	193,000
			US	193,000	UR	193,000
			US	193,000	UW	53,000
'16. 6. 7.	'16년 강원도민체전	강원도체육회 4,984,000	DW	210,000	DZ	210,000
			DV	60,000		
			DX	210,000	EA	210,000
			UT	400,000	UR	210,000
			US	210,000		
'16. 6. 22.	KB금융배 예선전	자부담 800,000	DW	100,000		
'16. 11. 3.	'16년 강원도지사배	강원도체육회 10,000,000	DW	200,000		
			US	200,000		

경기위원수당 등			DT가 직접 돌려받은 금액		DY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	
지급일자	지급사유(대회명)	재원	수령자 이름 ¹⁾	수령금액	수령자 이름	수령금액
'17. 4. 17.	'17년 강원도소년체전	강원도교육청 2,940,000	DW	100,000	DZ	100,000
'17. 5. 10.	'17년 강원도민체전	강원도체육회 5,510,000	DW	190,000	DZ	190,000
			DV	190,000		
			DX	190,000	EA	190,000
'17. 9. 15.	'17년 강원도지사배	강원도체육회 10,000,000	DW	300,000	UV	100,000
					DZ	300,000
합계액			-	11,226,000	-	5,404,000
재원별	강원도체육회		-	8,306,000	-	4,264,000
	강원도교육청			580,000		340,000
	기타			2,340,000		800,000

주: 1.

이름	관계	이름	관계	이름	관계
DV	DT의 아내	DZ	DY의 아들	UV	경기위원
DW	DT의 아들	EA	DY의 지인	UT	DT의 처남
DX	DW의 친구	UR	DY의 지인	US	DT의 지인
UQ	DT의 지인	UU	경기위원	UX	경기위원

2. DY 수령분(1,500,000원)을 DT가 편취하였음

3. 경기위원수당을 중복(2회) 수령하였음

자료: 강원도체육회 등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1]

대한수영연맹 등 3개 단체의 2017~2019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단체명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1~4월)			
		소계	인건비	행정 보조비	경기력 향상비	소계	인건비	행정 보조비	경기력 향상비	소계	인건비	행정 보조비	경기력 향상비
합계	2,739	1,001	533	108	360	1,270	717	108	445	468	202	48	218
대한 수영 연맹	1,027	411	195	36	180	439	263	36	140	177	86	18	73
대한 승마 협회	778	205	169	36	-	403	227	36	140	170	41	12	117
대한 요트 협회	934	385	169	36	180	428	227	36	165	121	75	18	28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IV. 개별통보사항

명세: 별첨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한 업무 처리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조 치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내 용

1.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는 (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나 임원 등이 다른 체육단체의 지도자 등으로 복귀해 활동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 1. 15.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수립·발표하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관련 규정과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여 체육단체간 징계정보 등을 공유·활용하도록 하였다.²³⁹⁾

그러나 위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의 취지와는 달리, 문체부는 2017년 8월 대한컬링경기연맹(이하 “컬링연맹”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²⁴⁰⁾를 수행하면서 2014. 4. 9. 성추행으로 컬링연맹에서 제명된 도청 컬링팀 코치 DI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시장애인체육회의 휠체어 컬링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239)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다른 체육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체육지도자·임원 등의 등록 및 선임제한 근거를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 등에 반영하여 문체부가 마련한 대책을 일부 이행하였으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지 않는 등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었음

240) 2017년 8월경 컬링연맹의 대표선수 훈련 부실 지원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7. 8. 18.부터 같은 해 9. 1.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함

(이하 “DI 사건”이라 한다)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 해 10. 19.에는 대한체육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정감사”라 한다)에서 ‘2017년 2월 미성년 선수에 대한 성폭행으로 대한볼링협회에서 제명된 ▼▼ 고등학교 볼링팀 감독 DG가 ■■시 장애인볼링협회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DG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취소·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하 “DG 사건”이라 한다), 그 외 과거 5년간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된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209건 또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2018. 6. 29. 위 DG에 대해서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의 지도자 자격증 정지처분을 한 채, 2018년 말까지 위 인권센터에 신고된 209건 등 비위 체육지도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격증 취소·정지업무를 하지 않거나 (성)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체육지도자의 징계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9. 1. 8.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바로 다음날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징계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또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

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²⁴¹⁾으로 하므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이러한 성실의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성)폭력 등 비위지도자에 대한 징계 정보 공유·활용업무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체부 ▷실 실장 UY는 2017. 9. 4.부터 2019. 1. 31.까지 ▽국 국장의 직위에서 체육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등 ▽국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비위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업무 처리 부적정

UY는 2017. 10. 19. 국정감사에서 DG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 209건의 적정처리 여부도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를 직접 들었고 체육계의 특성상 DG와 유사한 비위지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이러한 비위지도자에 대한 자격증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게 되었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포츠센터 및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된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

24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인하면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처분이 필요한 비위지도자를 알 수 있었다.²⁴²⁾

그런데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담당할 <과 UZ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성) 폭력 관련 209건에 대해 행정처분 필요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DG에 대해서만²⁴³⁾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자격증 정지 2개월²⁴⁴⁾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2018년 1월경(날짜 모름) UY에게 보고를 하였다.

따라서 UY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의 처리현황을 확인하도록 하여 직무상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확인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소·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러나 UY는 UZ로부터 DG만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보고받으면서 위 미심 처리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²⁴⁵⁾ 그대로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9. 4. 18.~5. 30.)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징계처분한 지도자 현황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이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가 필요한 비위지도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성)폭력,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 직무상 부정·비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

242) UY는 체육계의 특성상 DG 건과 유사한 사례는 다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

243) 과장 VA는 산하기관 국정감사이므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국정감사 회의록도 출력하여 보지 않아 처리 미심 사건 209건의 존재를 몰랐으며, 국정감사 종료 후에 담당자 UZ로부터 DG 사건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한편, UZ는 국정감사 종료 후 <과에서 지적사항을 모아 전달해 주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244)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증 업무를 담당할 UZ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자격증 취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DG 건의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하여 DG에 대해 고발 등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자격증 취소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또한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DG가 회피하는 등으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못해 2018. 1. 19. 대체 절차로 관보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게재하는 등 실제 행정처분은 UZ의 후임자와 과장이 2018. 6. 29. 처분함

245) 담당자 UZ와 과장 VA는 국장 UY가 DG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검토 등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함. 한편, UZ는 209건의 존재를 알았다면 자격증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지 전체를 확인하여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함

을 받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4명) 또는 자격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97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97명 중 2014년 12월 폭력으로 징역형(1년 6개월)을 받은 야구 코치 DJ가 자격증 취소 없이 ◀◀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2016년 채용되어 2019년 5월 현재까지도 근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표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근무 현황”과 같이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 비위 체육지도자 15명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학교운동부나 공공기관 등에 2019년 5월 현재까지 근무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 공유 방안 미이행

UY는 2017. 11. 7. 컬링연맹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하면서 지도자 등록 및 징계정보 확인·검증체계 미비 등으로 DI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UY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체육단체 간 비위지도자의 징계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DG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들어 DI와 DG 사건 등을 통해 비위지도자에 대한 징계정보가 체육단체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징계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문체부가 주도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²⁴⁶⁾도 알고 있었다.

한편,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징계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한 ◇과 VB는 대한체육회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비위지도자의 징계정보를 체육단체 간에 공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2018년 8월경(날짜 모름) UY에게

246) 국정감사 회의록에는 징계정보 공유와 관련된 지침 마련 요구 및 보고에 대해 대한체육회장 VZ가 답변하였으나, 징계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협의한 담당자 VB는 문체부가 마련해야 할 일이라고 진술함

그대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UY는 비위지도자 등의 징계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체육단체 간 비위지도자 등의 징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러나 UY는 VB로부터 대한체육회의 징계정보 공유 불가 의견을 보고받으면서 비위지도자의 징계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개인정보 이용동의서²⁴⁷)를 제출받거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검토·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은 채²⁴⁸) 그대로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후 다른 체육단체에서 활동 중인 지도자 등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 12. 4. 대한장애인수영연맹에서 폭행, 폭언으로 제명된 DH가 2018. 5. 24. 대한수영연맹에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로 등록한 후 지도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등 2019년 5월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간에 징계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별표 2] “체육단체 간 지도자·임원 부당 등록·선임 명세”와 같이 비위지도자 등 4명이 체육단체를 옮겨 복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자 주장 및 검토결과

247)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규정」 제30조, 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2조 등에도 지도자 등은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 이들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감사기간 중 담당자 VB는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확보한 후 징계이력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확인한 결과 당사자로부터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48) UY는 기억나지 않지만 ◇과에 재검토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자 VB와 과장 VC(2019. 9. 2. 의원면직)는 UY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함

1. 비위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업무 처리 관련

UY는 비위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에 대해 국장으로서 일일이 지시할 수 없으며 <과에서 알아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국정감사에서 직접 출석하여 미심 처리 사항 209건을 인지하였으므로 국정감사 직후 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DG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 대한체육회의 징계대장만 확인하면 자격증 제재 대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과에 추가 확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UY는 2020. 1. 3. 소명서를 통해 ∇국 국장 부임(2017. 9. 4.) 후 현안만 파악한 채 국정감사에 배석하여 DG 사건에 대해서만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정감사 회의록 전체 내용을 보면 DG에 대한 징계와 지도자협회장 자격유지 부분만 감사 등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9건의 미심처리 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사 및 대책 등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UY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 공유 방안 관련

한편, UY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징계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것에 대해 ◇과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 담당자와 과장은 UY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검토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아 UY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UY는 소명서 등을 통해 징계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로 체육단체가 징계정보를 입력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징계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2019. 7. 1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으므로 개정법률안²⁴⁹⁾이 발효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위지도자에 대한 징계정보 공유는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²⁵⁰⁾한데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UY는 징계정보 공유 방안 마련 및 비위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등의 ▽국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비위지도자 등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재업무와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UY에 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오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사람의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249) 위 개정법률안은 2019년 1월 J 선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 비난이 고조되자 다수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의원입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되어 2020. 1.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한편 개정 법률에 신설된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단체 선수, 지도자 등의 징계정보를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징계정보를 체육단체 등에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함

250) 문체부가 2013년 1월 발표한 "스포츠폭력 근절대책"에도 체육단체간 징계정보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전확보가 명시됨

[별표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의 근무 현황

연번	종목	성명	비위내용	징계 결과	징계 의결일	근무지(기간)
1	야구	DJ	폭력	자격정지 6개월 (징역 1년 6개월)	'15. 4. 9.	☒☒중학교('13. 12. 11.~'14. 5. 20.) ◀◀고등학교('16. 4. 1.~'16. 10. 1.) ◀◀고등학교('19. 1. 1.~'19년 5월 현재)
2	농구	-	금품 관련	자격정지 1년	'15. 5. 4.	-
3	농구	-	금품 관련	자격정지 1년	'15. 5. 4.	-
4	우슈	-	폭력	자격정지 6개월	'16. 6. 1.	-
5	핸드볼	-	폭력	견책	'16. 8. 4.	-
6	수영	-	폭력 등	자격정지 1개월	'18. 12. 19.	
7	컬링	DI	성추행 등	제명	'14. 4. 9.	☒☒도체육회('12. 6. 29.~'14. 3. 29.) 대한컬링경기연맹('13. 5. 1.~'14. 4. 10.) ♪♪국제컬링장('15. 11. 11.~'16. 6. 10.) ☉☉장애인체육회('16. 11. 14.~'17. 11. 25.) ♫♫시설공단 컬링센터('18. 3. 2.~'19년 5월 현재)
8	축구	-	성희롱	경고	'14. 7. 8.	-
9	축구	-	성희롱	경고	'14. 7. 8.	-
10	축구	-	성희롱	경고	'14. 7. 8.	-
11	축구	-	금품 관련	경고	'15. 12. 14.	-
12	축구	-	금품 관련	경고	'15. 12. 14.	-
13	축구	CT	폭력	자격정지 1년 6개월	'17. 8. 21.	♡♡초등학교('17. 3. 1.~'19년 5월 현재)
14	축구	-	폭력	자격정지 1년 6개월	'18. 9. 6.	-
15	레슬링	G	폭력	자격정지 6개월	'18. 9. 19.	△△공사('94. 2. 1.~'19년 5월 현재)

주: 1. 자격증 취소·정지 대상자 중 비위행위 이후에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임

2. 근무지 및 근무기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취득·상실일자 기준

자료: 대한체육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체육단체 간 지도자·임원 부당 등록·선임 명세

연번 ¹⁾	성명	징계 당시 소속/직위	비위 유형	징계결과 (의결기관)	정당 등록 제한기간 ²⁾	등록(선임)현황 (등록단체)	활동현황
1	DH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전임지도자	폭행 폭언	'16. 12. 4. 제명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영구	'18. 5. 24. '19. 4. 16.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등록 (대한수영연맹)	'19년 5월 현재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로 재직 중 (대회 참가내역 확인 불가)
2	QR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	국가 대표 선발 위법	'17. 10 .28. 제명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영구	'18. 3. 5. ■■■■고 배구부 감독 등록 (대한민국배구협회)	'18년 전국남녀 중고배구대회 등에 ■■■■고 배구부 감독으로 참가
3	QS	■■■■군청/ 유도 심판	직무 태만	'17. 3. 13. 자격정지 1년 (대한유도회)	'17. 3. 13. ~ '21. 3. 12.	'18. 4. 30. 강원도장애인 유도협회 임원 선임 (대한장애인유도협회)	'19년 5월 현재까지 강원도장애인 유도협회 임원으로 재직 중
4	DI	■■■■도청/ 컬링 코치	성추행	'14. 4. 9. 제명 (대한컬링 경기연맹)	영구	DI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지 않고 '16. 11. 4.부터 '17. 11. 24.까지 ○○시장장애인체육회 휠체어컬링팀 코치로 활동	

주: 1. 연번 1, 2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징계를 받은 후 대한체육회 등에서 등록(선임)된 사례이고, 연번 3, 4는 대한체육회 등에서 징계를 받은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등록(선임)된 사례임

2. 다른 체육단체에서 지도자 등록 및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

자료: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계약직 직원 부당 채용

소 관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조 치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내 용

1.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는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2014년 2월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 4대악²⁵¹⁾ 관련 신고사항을 접수 및 조사·처리하기 위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²⁵²⁾(이하 “신고센터”라 한다, 현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4. 1. 신고센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DR²⁵³⁾을 직접 채용(계약기간: 2014. 4. 1.~ 12. 31., 보수: 월 300만 원)하였다.

그리고 문체부는 2015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센터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DR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계속 근무²⁵⁴⁾하게 하였다.

251)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252)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올림픽 공원 안에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가 2014년 5월 경찰 등이 포함된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으로 확대·변경한 후 경찰 등의 파견이 종료된 2015년 6월부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그 후 2017년 6월부터는 문체부 직원은 없고, 파견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으로만 2019년 5월 현재까지 운영중임

253) 2002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문체부 ◇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 12월 문체부에서 퇴직함

254) 2018. 10. 15.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문체부 훈령, 이하 “문체부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채용권자²⁵⁵⁾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 기준 등을 7일 이상 공고²⁵⁶⁾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²⁵⁷⁾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직직원 시행세칙」 제5조, 「운영직직원 시행세칙」 제5조 및 제8조 등에 따르면 연봉 계약직 직원은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채용예정 인원, 업무 내용, 응시 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험시행일 전 1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고, 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고센터를 총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위 규정들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 국장²⁵⁸⁾ DS는 2014. 3. 1.부터 2015. 3. 22.까지 문체부 ▽국 국장의 직위에서 신고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약직 직원 채용 등 ▽국 업무

255) 문체부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부의 각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권자로 규정됨

256)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생략 가능함

257)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는 생략 가능함

258) 2020. 1. 1.부터 공로연수 중임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위반

신고센터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찰청 등 다수 기관의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고, 운영주체(문체부) 및 책임자(체육정책과장)와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문체부는 신고센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S는 ① 신고센터가 단기간 운영된 후 폐지될 임시조직이며, ② 구 체육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꼼꼼한 성격의 DR이 ◇과 과장 등을 역임한 체육 행정 전문가로서 책임자로 판단된다는 사유 등으로 2014년 3월(날짜 모름) DR에게 신고센터를 관리해 달라고 직접 연락해 수락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DS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 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²⁵⁹⁾ 이와 같은 사유로 DR을 신고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과 과장에게 지시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 ◇과는 문체부 관리규정상의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2014. 4. 1. DR을 신고센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었다.

나. 연봉 계약직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

문체부는 2014년 말(날짜 모름) 예산 사정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이 종료(2014. 12. 31.)된 DR을 2015. 1. 8. 퇴직처리(기간제 근로자 임면 보고)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DR을 신고센터에 계속 근무하도록²⁶⁰⁾ 하였다.

259) DS는 문체부 관리규정상 공고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면서 계약직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260) DR은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서 연락을 받고 신고센터에 계속 근무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

한편, 신고센터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날짜 모름) DS는 ◇과 VD에게 업무 연속성 등을 사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DR을 2015. 1. 1.부터 소급 채용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VD는 ◇과 신고센터 업무담당 VE와 신고센터 수견직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VF를 통해 DS의 지시사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달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담당 VG는 ① DR의 연령(1948년생으로 당시 67세)이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규정²⁶¹⁾의 채용상한 연령(58세)을 초과하고, ②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한 채 2015년 1월부터 소급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면서 ◇과 VE에게 전자우편으로 관련 규정을 송부²⁶²⁾하였다.

그런데 DS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거부 의사를 VD로부터 보고받은 후에도 VD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DR을 채용하게 하라고 계속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부당한 요구는 VE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부당한 채용요구가 반복 중이던 2015. 2. 24. 「계약직 직원 시행세칙」 제5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지원업무 부문의 기간제 연봉 계약직 채용상한 연령(58세)을 ‘한시적으로 필요한 지원업무’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²⁶³⁾되어 DR의 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도·감독권과 사업승인권 등을 가지고 있는 ◇과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DR을 채용하기로 결정²⁶⁴⁾하였다.

술함

261) 「계약직직원 시행세칙」과 「운영직직원 시행세칙」

262) VE는 공단의 인사담당자로부터 관련 규정을 받아서 VD에게 보고했으며, VD가 과장 VH와 국장 DS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함

263) 국가대표 선수 등이 훈련, 경기 중에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유공자 보상업무에 경험이 많은 국가보훈처 근무경력자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였으나 모두 58세를 초과하여 개정함

264) 공단 채용 담당자 VG와 당시 인사팀장 VI는 문체부의 DR 채용 지시 사항을 전무이사까지 보고하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DR의 소급 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고센터 사업 승인 공문에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VE에게 요청하여 2015. 3. 31. “계속 사업으로 사업승인 전 집행 건에 대해 소급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공문(◇과-1205)을 접수한 후, 2015. 4. 29. 모든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DR²⁶⁵⁾과 연봉 계약직 근로계약(연봉 3,871만 원)을 체결하였고 4개월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고센터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의 자율성을 침해받았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DS는 DR의 채용과 관련하여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오래되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문체부의 직접 채용 당시 채용관련 절차를 생략하도록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과 과장 VH는 신고센터의 총괄 관리를 위해 국장 DS가 DR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락을 받았으며, 계약직 직원 채용권자는 국장이기 때문에 과에서 임의로 채용 절차의 생략을 결정할 수 없으며 국장에게 반드시 보고되었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S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DS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DR의 채용을 지시한 사람이 과장 VH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VH는 자신이 2014년 말부터 국장과의 갈등으로 ◇과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없었으므로 국장이 지시자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였고, VI는 문체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당시 67세인 DR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265) DR은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다가 2018. 10. 15. 의원면직하였으며 2015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연평균 4,022만 원의 연봉을 수령함

그리고 VD도 당시 DS와 VH 간에 갈등이 있어 과장이 종종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으며, ◇과의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에게 보고되었고 국장의 지시 없이 과장 등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S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등 인사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을 지시한 DS의 행위는 징계 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